

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대한축구협회 -

2024. 11.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I. 감사 개요	1
II. 감사 결과	1
1. 총괄	1
2. 세부 감사 결과	10
①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문책, 통보]	10
②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주의, 제도상 개선, 통보]	32
③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문책, 주의, 경고, 통보]	38
④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문책]	64
⑤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문책, 주의, 통보]	75
⑥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부적정 [문책, 시정, 제도상 개선, 통보]	86
⑦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부적정 [문책, 주의]	99
⑧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103
⑨ 직원 복무관리 등 개선 필요 [주의, 통보]	106
※ [기타] 현지조치사항	110
III. 처분요구 목록	112
IV. 개별처분요구사항 목록	113

I

감사 개요

□ 감사 배경

-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 관련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최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면서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제도 개선 등을 위한 감사 실시

□ 감사 개요

- (감사기간) 2024. 7. 24. ~ 8. 30.

* (예비조사) 2024. 7. 29. ~ 8. 2. / (실지감사) 2024. 8. 12. ~ 8. 30.

- (감사반) 감사담당관, 체육정책과장 외 10명

- (감사방법) 실지감사

- (감사중점)

-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축구인 사면 관련 사항
-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축구 지도자 자격 관리·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
- 계약·기부금·개인정보보호·복무 등 관련 사항

II

감사 결과

1

총괄

이번 감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10개 사안에서 총 27건의 위법·부당 사항(시정 2, 문책 6, 주의·경고 9, 제도상 개선 2, 통보 7, 현지조치 1)이 확인되어, 시정·문책·주의·경고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통보

(단위: 건, 명, 백만 원)

합계			시정	문책 (인원)	주의·경고 (인원)	제도상개선	통보 (금액)	현지조치 (금액)
건수	금액	인원						
27	5,653	19	2	6 (16명)	9 (3명)	2	7 (5,650백만 원)	1 (3백만 원)

①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2차/최종)을 권한 없는 회장이 진행하면서 면접 과정이 불투명했으며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
-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하였으며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사결의를 거치는 등 이사회 형해화
- 감독 선임 관련 논란이 발생되자 ▲허위 반박자료나 보도설명자료 배포

☞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 운영 관련 직무를 대만히 한 관련자 징계 요구(문책)

[관련자]	대한축구협회	A*	자격정지 이상
	대한축구협회	B**	자격정지 이상
	대한축구협회	C	자격정지 이상
	대한축구협회	D***	정직 이상

* ①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④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조치 요구

** ①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⑤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조치 요구

*** ①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②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⑤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조치 요구

☞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은 권한 없는 자의 불공정·불투명한 추천으로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 강구(통보)

②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 현행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43명의 선임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U-18 이상)' 및 '기술발전위원회(U-17 이하)'와 같은 공식 추천위원회에서 공식 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또한 이사회 의사결정 없이 기술본부 및 기술총괄이사, 전강위, 감독 등 권한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하는 등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

- 현행 연령별 국가대표 지도자 43명 중 피트니스 코치 4명이 필수 자격증인 'AFC피트니스Lv.1'이 없음에도 선임되어 활동하는 등 「지도자 교육규정」 위반
- ☞ 앞으로 국가대표 지도자 추천 관련 공식자료를 작성·보관 하고,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과 다르게 '지도자 추천 및 선임'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지도자 교육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분야 자격증이 없는 자를 지도자로 선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주의)
- ☞ 이사회 선임 절차 없이 선임된 지도자 중 임기가 남은 지도자에 대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도록 시정 조치 요구(시정)
- ☞ 임기가 남은 자격증 미보유 지도자에 대해 「지도자 교육규정」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통보)
- 현행 지도자 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규정과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이 별도로 없어 '국가대표 지도자 추천 및 선임 업무'의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
- ☞ 「정관」 제51조 및 제52조에 근거한 '기술발전위원회'와 '국가대표전력 강화위원회'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 마련 요구(제도상 개선)

③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 (차입금 업무 처리) 「정관」 제69조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외부 금융기관과 615억 원 한도의 공공시설일반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775백만 원의 대출금을 실행하여 축구종합센터 공사비 선금으로 집행
- ☞ 「정관」 제69조 제2항과 다르게 차입금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징계 요구(문책)

[관련자]	대한축구협회	D*	정직 이상
	대한축구협회	E	정직 이상

* ①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②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⑤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조치 요구

-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제61조와 다르게 대한 축구협회의 차입 승인 요청 관련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게 주의 및 경고 조치(주의·경고)

[관련자]	문화체육관광부	F	주의
	국립한글박물관	G*	경고

* ③-1 차입금 업무 처리 부적정, ③-2 보조금 업무 처리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조치 요구

- (보조금 업무 처리)

-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에 축구협회 사무공간은 제외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였으나 내부 임원회의를 통해 사무공간을 배치하는 것으로 임의 결정하고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음에도 '2023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보조금(56억 원) 신청 시 사무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조금 허위 신청
- '2022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보조금(21억 원)을 관급자재(전광판, 조명등, 지붕막)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선금으로 전액 지급하였으나, 해당 관급자재 설치에 골조공사 완료 이후 가능하여 사업기간 내 집행할 수 없음에도 지급하고 정산 완료 처리

- ☞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신청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하고, 보조금 집행을 소홀히 하여 국고가 낭비되는 등의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련 업무 철저(주의)
- ☞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선금 지급하여 국고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관련자 징계 요구(문책)

[관련자]	대한축구협회	H	정직 이상
-------	--------	---	-------

-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선금 지급하여 국고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관련자 징계 요구(문책)

[관련자]	대한축구협회	I	감봉 이상
-------	--------	---	-------

- ☞ 보조금을 집행·관리함에 있어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및 경고 조치(주의·경고)

[관련자]	문화체육관광부	J	주의
	국립한글박물관	G*	경고

* ③-1 차입금 업무 처리 부적정, ③-2 보조금 업무 처리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조치 요구

- ☞ 축구협회가 국고보조금을 교부신청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교부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교부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방안 강구(통보)

- (펀딩 캠페인 업무 처리)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 확보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100억 원을 모집목표액으로 건립기금 펀딩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 작성·등록 등 절차 미이행

☞ 기부금품 모집 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절차를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 철저(주의)

- ④ (축구인 기습 사면) 상위 규정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징계 사면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야 했고,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게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사면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었음에도 상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 상위 규정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 운영 관련 직무를 대만히 한 관련자 징계 요구(문책)

[관련자]	대한축구협회	A*	자격정지 이상
	대한축구협회	K	정직 이상

* ①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④축구인 사면 업무처리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조치 요구

- ⑤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상위 규정인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업무수행 경비(실비) 또는 자문계약 체결 시 자문실적 등에 근거한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21년 1월~'24년 8월까지 부회장, 분과위원장 등 비상근 임원 34명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급여성 고정 보수 총 2,846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원 보수규정」상 연간 자문료 한도액(1억 원)을 초과한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자문계약서 등과 다르게 계약기간 종료 이후 또는 직무정지 처분 이후 자문료 총 49.8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비상근 임원 보수 업무처리 부적정

-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정관」에 따른 비상근 임원 무보수 원칙을 준수하여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임원 보수규정」 상 연간 자문료 한도를 준수하며, 자문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비상근 임원의 보수 관련 업무 철저(주의)
- ☞ 상위 규정 및 「정관」을 위반하여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하고, 「임원 보수규정」과 다르게 비상근 임원과 연간 자문료 한도를 초과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과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고 비상근 임원 보수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징계 요구(문책)

[관련자] 대한축구협회 B* 자격정지 이상

* ①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⑤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조치 요구

- ☞ 상위 규정 및 「정관」을 위반하여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하고, 「임원 보수규정」과 다르게 비상근 임원과 연간 자문료 한도를 초과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자문계약서 등과 다르게 자문계약 종료 이후 및 직무정지 처분 이후 비상근 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과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고 비상근 임원 보수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징계 요구(문책)

[관련자]	대한축구협회	D [*]	정직 이상
	대한축구협회	L	경고 이상
	대한축구협회	M	감봉 이상

* ①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②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⑤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조치 요구

- ☞ 상위 규정 및 「정관」을 위반하여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하고, 자문계약서 등과 다르게 자문계약 기간 종료 이후 또는 직무 정지 처분 이후 자문료와 주거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규정」 및 「정관」을 위반하고 비상근 임원 보수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징계 요구(문책)

[관련자] 대한축구협회 N 경고 이상

- ☞ 자문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직무정지 처분 이후 비상근 임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자문료 등 총 49.8백만 원을 환수하는 방안 마련(통보)

⑥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 'P급 지도자 자격증 강습회' 운영과 관련하여, 「AFC 코칭규정」 및 「지도자 교육규정」을 위반하여 ▲2022년 6명에게 부적정하게 자격증 발급(O), ▲2022년 부적정하게 자체 세칙 개정(O), ▲2023년 2명에게 부적정하게 재강습 기회 부여(O, P), ▲2024년 점수산정 오류로 3명의 수강생 합격자 선정 부적정 처리(Q)

☞ 「AFC 코칭규정」 제12조 및 「지도자 교육규정」 제21조를 위반하여 P급 강습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관련자 징계 요구(문책)

[관련자]	대한축구협회	O	정직 이상
	대한축구협회	P	경고 이상
	대한축구협회	Q	경고 이상

- '2023년 P급 지도자 자격증 강습회'에서 「지도자 교육규정」 및 「AFC 코칭규정」을 위반하여, 31.6%의 결석이 있는 수강생 2명(이 중 1명은 실기시험 점수 70점 미만으로 불합격 대상)에게 부적정하게 '재강습' 대상 처리

☞ 「AFC 코칭규정」 제12조 및 「지도자 교육규정」 제21조를 위반하여 재시험 기회를 받은 [redacted]을 불합격 처리하고, [redacted]은 AFC에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 후 답변을 받아 시정 조치 요구(시정)

-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위반하여, '2024년 P급 강습회' 수강생 선정 시 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관련자 채점 오류로 입과 합격자로 선정된 18명 중 3명의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뀜

☞ 「P급 수강생 선정 세칙」 제3조를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선정된 [redacted], [redacted], [redacted]을 불합격 처리하고 [redacted], [redacted], [redacted]을 합격 처리하는 것으로 시정 조치 요구(통보(시정완료))

☞ 강습회 관련 평가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데이터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차검증 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통보)

- 상대적으로 지도자 경력이 짧은 젊은 지도자 배출을 늘리기 위해 2022년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개정하면서, 수강 신청 기본요건 중 '지도자 경력 조건' 및 '결격사유 결정 방식'을 상위법 및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변경 개정함

☞ 「국민체육진흥법」 및 「AFC 코칭규정」의 필수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조항을 「지도자 교육규정」 및 각급 수강생 선정 세칙에 필수로 포함하고, 모든 세칙을 규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과 세칙 개정 요구(제도상 개선)

⑦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축구협회는 소속 직원에게 재단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재단 운영을 관리하고 있고, 재단 「정관」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재단은 「정관」과 다르게 일반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사회 심의·의결 등 지급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축구협회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정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재단 운영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이 자체 「정관」과 다르게 일반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사회 심의·의결 및 지급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에 대한 관리 업무 철저(주의)

☞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징계 요구(문책)

[관련자]	대한축구협회	R	경고 이상
	대한축구협회	S	경고 이상

⑧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 축구협회는 징계 정보 등 170여만 건(6개 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회장(대표자) 또는 임원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보유·점검하고, 수탁업체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처리 실태를 점검, 교육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직원 신분인 전산 업무 담당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운영하였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을 일부만 보관하고 있었으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실태 점검, 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변경하고,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지침과 다르게 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주의)

⑨ (직원 복무관리 등) 축구협회는 ▲「복무규정」과 다르게 국내·외 출장 시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매주 수요일 1시간 조기퇴근 하는 ‘워라벨데이’를 운영

하면서 조기퇴근에 따른 연차 차감 또는 다른 요일 추가 근무(1시간) 등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복무규정」 등에 따른 근무시간(1주 40시간) 미준수(임금 변동 없이 1주 39시간 근무 가능), ▲ 본부장의 국내·외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보다 과다하게 정하고 있는 등 직원 복무 관리 등 개선 필요

- ☞ 직원이 국내·외 출장을 가는 경우 사전에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복무관리 철저(주의)
- ☞ 직원이 워라벨데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차에서 1시간을 차감하는 등 「복무규정」에 따른 1주 근무시간(40시간)을 준수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본부장의 여비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개선 방안 마련(통보)

2 세부 감사 결과

1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① 업무 개요

- 축구협회는 파울루 벤투 감독¹⁾의 뒤를 이을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해 2023. 1. 4. V²⁾(이하 “V”)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이하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표 1]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23. 2. 28. 위르겐 클린스만³⁾(이하 “클린스만”)을 선임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발표

[표 1]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일시	주요 내용
2023. 1. 4.	• 축구협회, V 선임 전력강화위원장 선임 발표
2023. 1. 12.	• V 위원장, 감독 후보군 61명 작성→ 23명으로 압축
2023. 1. 18.	• 축구협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개최→ V 위원장 공식 선임 • 후보자 접촉 에이전트 선임→ 감독 후보자 23여 명 접촉 시작
2023. 1. 19.	•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위촉(총 7명 ^{주1)})
2023. 1. 25.	•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회의 - 감독 선임 기준 및 절차 논의 - 감독 선임 과정(후보자 추천 및 인터뷰 등)에 대한 권한을 V 위원장에게 위임
2023. 1. 26.	• 감독 후보자 5명으로 압축 및 온라인 인터뷰 일정 협의
2023. 1. 30. ~ 2. 1.	• 1차 온라인 면접 ^{주2)} (V 위원장, Q 국가대표운영팀장) * (후보자) [REDACTED]
2023. 2. 7.	• V 위원장, A 회장에게 1차 온라인 면접 결과* 보고 * (1순위) 클린스만- (2순위) [REDACTED]- (3순위) [REDACTED]- (4순위) [REDACTED]- (5순위) [REDACTED]
2023. 2. 8. ~ 2. 9.	• 2차 온라인 면접(A, D) * (1, 2순위 후보자) 클린스만, [REDACTED]
2023. 2. 15. ~ 2. 24.	• 축구협회-클린스만 후보자와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 체결(2. 24.)
2023. 2. 27.	• 제2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 클린스만 감독 선임 경과 보고
2023. 2. 28.	• V 위원장, 클린스만 감독 선임 발표
2023. 3. 2. ~ 3. 8.(미국)	• V 위원장, 클린스만 감독과 대면 면담·협의* * 코칭스태프 및 국가대표팀 일정 등 협의, 비자 발급 지원

주1: (위원장) V, (위원) [REDACTED]

주2: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정에서는 ‘면접’(직접 만나서 인품이나 언행 따위를 평가하는 시험/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표현을,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에서는 ‘면담’(서로 만나서 이야기함/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감독 후보자 사전 인터뷰 질문지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답변 내용을 정성 평가 후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측면에서 ‘면접’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므로 동 보고서상에서는 ‘면접’이라는 단어로 통일함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1) 2018. 8. 22. ~ 2022. 12. 6.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재임

2) 2018. 5월부터 현재까지 축구협회 전임 지도자 강사로서, 지도자 교육, 유소년 육성, 기술발전 관련 업무 등을 수행 중임

3) 2023. 3. 1. ~ 2024. 2. 16.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재임

- 클린스만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고 약 1년이 지난 2024. 2. 16., 축구협회는 2024 아시안컵 성적 부진 및 선수단 관리 문제로 클린스만을 국가대표팀 감독에서 경질
- 축구협회는 2024. 2. 20. W 축구협회 대회위원장을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표 2]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24. 7. 8. 홍명보 울산HD 감독을 신임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발표

[표 2]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일시	주요 내용
2024. 2. 20.	• 축구협회, W 신임 전력강화위원장 선임 및 전력강화위원 구성 발표(총 11명 ^{주1)})
2024. 2. 21. ~ 4. 2	• 제1차 ~ 제5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 감독 선임 기준·방법, 일정, 국내 감독 vs 외국인 감독 등 관련 논의 - 감독 후보자 풀(Pool) 구성(97명) 및 압축(11명^{주2)}), 면접 질문항목 검토·논의 - 3월 월드컵 예선 임시 감독(황선홍) 결정
2024. 4. 11. ~ 4. 14.	• 후보자 5명 온라인 면접(W 위원장, [REDACTED] 위원, 기술본부장) * (후보자) [REDACTED]
2024. 4. 18. ~ 4. 21.(영국, 포르투갈, 튀르키예, 카타르)	• 후보자 4명 대면 면접(W 위원장, [REDACTED] 위원, [REDACTED] 매니저) * (후보자) X, [REDACTED], [REDACTED], Y
2024. 4. 30.	• W 위원장, A에게 대면 면접 결과(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 브리핑*) 보고 * 남자 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 : 2인 요약(X, Y) • 제6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 대면 면접 결과 공유, 1~4순위* 후보자 선정 및 축구협회에 계약 협상 요청 * (1순위) X- (2순위) Y- (3순위) [REDACTED] - (4순위) [REDACTED] ** 1, 2순위까지 협상이 안될 경우 다른 대안 검토
2024. 4. 30. ~ 5. 17.	• 축구협회(경영본부장)-1, 2순위 후보자(X, Y)와 계약 조건 협상, 협상 결렬 ^{주3)}
2024. 5. 20. ~ 6. 21.	• 제7차 ~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 감독 후보자 추천 원점에서 재논의, 6월 월드컵 예선 임시 감독(김도훈) 결정 - 감독 후보자 17명^{주4)} 재선정, 경력·영상자료 등 확인·토론 후 추천 우선순위 결정 * (공동 1순위) Z, 홍명보, (공동 2순위) AA, Y - 감독 후보자 면접 및 최종 추천 권한을 W 위원장에게 위임
2024. 6. 25.	• 후보자 2명 온라인 면접(W 위원장, C, AB 기술본부장) * (후보자) Z, AA
2024. 6. 27.	• W 위원장, A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추천 최종 후보자 3명* 보고 * (1순위) 홍명보, (2순위) Z, (3순위) AA
2024. 6. 28.	• W 위원장, 축구협회에 구두로 사의 표명
2024. 6. 30.	• 전력강화위원회 임시 온라인 회의(C, 위원 5명 ^{주5)} , 기술본부장) - C가 최종 3명의 감독 후보자와 대면 면접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전력강화위원회에 공유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으로 동의
2024. 7. 3. ~ 7. 4.(스페인, 독일)	• 외국인 후보자 2명 대면 면접 및 계약 협상·조율(C, AB 기술본부장, AC 변호사, AD 매니저) * (후보자) AA, Z

일시	주요 내용
2024. 7. 5.	• 홍명보 감독 대면 면접(C)
2024. 7. 6.	• 홍명보 감독, C에게 감독직 수락 의사 전달 • C, B에게 홍명보 감독 수락 사실 전달
2024. 7. 6. ~ 7. 7.	• 축구협회(행정지원팀)-홍명보 감독과 계약 조건 협상, 계약서 작성
2024. 7. 7.	• C, 온라인 임시 회의에 참여한 전력강화위원 5명과 통화* * 최종 감독 결정을 C 이사 본인이 하겠다는 것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받고자 통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언론에 공지
2024. 7. 8.	• C,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 정식 발표
2024. 7. 10. ~ 7. 12.	• ‘남자 국가대표 감독 선임(안)’ 이사회 서면결의 ^{주6)}
2024. 7. 13.	• 홍명보 감독 정식 선임 및 계약 체결(7. 15.)

주1: (위원장) W, (위원) [REDACTED]

주2: (국내) [REDACTED], (국외) [REDACTED]

주3: (X) 국내 거주 및 세금 등 문제로 감독직 포기함(5. 10. X, 축구협회에 이메일로 포기 의사 전달), (Y) 현 이라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이라크 협회와 계약 종료 전 협상 어려움

주4: (국내) [REDACTED], (국외) Y, [REDACTED], AA, [REDACTED]

주5: [REDACTED] 위원

주6: 재직 이사 26명 중 23명 참가, 21명 찬성, 1명 반대, 1명 이사회 정식 회부 요청으로 최종 의결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②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축구협회 「정관」 제26조(임원의 직무)에 따르면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음
- 「정관」 제30조(선임임원의 사임 및 해임)에 따르면 이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 「정관」 제43조(의결사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협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의 승인, 긴급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중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음
 - 「정관」 제49조(구성과 조직)에 따르면 공정위원회를 제외한 각 분과위원회⁴⁾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사무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고, 협회 사업수행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으며,
 -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및 7인 이상의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당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음
 - 「정관」 제52조(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제1항에 따르면 전력강화위원회는 남녀 국가대표와 U18세 이상 연령별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제2항에 따르면 지도자의 선임과 해임, 재계약 관련 업무 등의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음
-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감독, 코치 등의 선임) 제1항에 따르면 각급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⁵⁾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⁶⁾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5항에 따르면 지도자 선발은 공개선발 또는 우수지도자의 확보를 위해 특별선발 할 수 있으며,⁷⁾ 제6항에 따르면 선발과정 및 결과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축구협회 「직제규정」 제5조(상근임원)에 따르면 상근임원(부회장, 전무이사 등 직책과 무관하게 협회 행정을 총괄하는 자)은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비롯하여 협회 행정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음

4) 대회위원회, 기술발전위원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심판위원회, 의무위원회, 국제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윤리위원회(정관 제49조)

5)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은 세척·지침 등으로 별도 규정된 사항은 아니며, 전력강화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확인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V 위원장 당시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은 ‘전문성(축구지식), 경험(성과), 동기부여(목표 의식), 팀워크(KFA 사업에 통합적인 접근), 환경적 요소(기타 여건)’ 등 5가지로 되어 있으며, W 위원장 당시에는 ‘감독 역량(전술적, 게임 플랜 등), 육성(취약 포지션, 유망선수), 명분(성과, 실득), 다양한 경험(지도자, 선수 등), 소통 능력(선수, 협회 등), 리더십(선수단 성향 맞춤), 코칭스태프(전술, 관리, 최적의 결정, 성적을 낼 능력’ 등 8가지임

6) 기술발전위원회는 축구 기술발전 및 교육을 목적으로 선수와 지도자의 양성, U17세 이하 연령별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치함(정관 제51조)

7) 축구협회는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통한 지도자 공개선발도 일부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특별선발 방식으로 지도자를 선임함

③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클린스만 감독 선임의 경우〉

① 전력강화위원회 무력화

- 축구협회와 V 전력강화위원장은 [표 3]과 같이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⁸⁾ 에이전트⁹⁾를 선임하여 후보자 접촉을 진행하는 등 처음부터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한 채 선임 절차 추진
- 또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감독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¹⁰⁾을 정해놓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

[표 3]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 운영 경과

일시	주요 내용
2023. 1. 4.	• 축구협회, V 신임 전력강화위원장 선임 발표
2023. 1. 12.	• V 위원장, 감독 후보군 61명 작성→ 23명으로 압축
2023. 1. 18.	• 후보자 접촉 에이전트 선임→ 감독 후보자 23여 명 접촉 시작
2023. 1. 19.	•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위촉(총 7명)
2023. 1. 25.	•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회의 - 감독 선임 기준 및 절차 논의 - 감독 선임 과정(후보자 추천 및 인터뷰 등)에 대한 권한을 V 위원장에게 위임
2023. 1. 26. ~ 2. 9.	• 1차 온라인 면접(후보자 5명), 2차 온라인 면접(후보자 2명) 진행
2023. 2. 15. ~ 2. 24.	• 축구협회-클린스만 후보자와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 체결(2. 24.)
2023. 2. 27.	• 제2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 클린스만 감독 선임 경과 보고
2023. 2. 28.	• V 위원장, 클린스만 감독 선임 발표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Q 국가대표운영팀장은 감독 선임 관련 권한을 V 위원장에게 위임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¹¹⁾

8) Q 팀장은 전력강화위원회 구성 전에 이미 전력강화위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할 것이라는 방침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전에 V 위원장이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함

9) D는 2023. 1. 18. KAM Event Ltd.에 위임장을 보내 감독 후보자 접촉, 미팅 일정 조율, 계약 조건 협상 지원 등의 업무를 맡김

10) Q 팀장은 감독선임 과정 전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방침은 이미 축구협회 내부에서 세워져 있었고 (회의 시작 전에 ■■■ 기술본부장, V 위원장과 본인이 모여서 방침을 정함), 본인은 위원장과 본부장의 말씀을 보완하여 회의를 진행한 것이지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함

11) Q 국가대표운영팀장 :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V 위원장과 저희 대한축구협회 사무국에 선임에 대한 위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2023년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 Q 팀장이 본인의 업무 권한을 벗어나 위치에 맞지 않은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며,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미 감독 선임 관련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절차를 진행하기로 짜여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함

- 또한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결과¹²⁾ 감독 선임의 전체적인 과정을 V 위원장에게 위임하되, 필수적인 정보는 위원회에 반드시 공유 및 점검토록 하였으나, 위원들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였으며,¹³⁾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¹⁴⁾

②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2차(최종) 면접을 진행

- A는 [표 4]와 같이 2023. 2. 7. V 위원장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5명의 온라인 면접 결과를 보고 받고, 1, 2순위 감독 후보자를 직접 미팅하겠다고 하면서,¹⁵⁾ 2023. 2. 8. ~ 2. 9. 회장 본인이 2차 온라인 면접을 진행¹⁶⁾¹⁷⁾

[표 4] 감독 후보자 온라인 면접 과정

일시	주요 내용
2023. 1. 26.	• 감독 후보자 5명으로 압축 및 온라인 인터뷰 일정 협의
2023. 1. 30. ~ 2. 1.	• 1차 온라인 면접(V 위원장, Q 국가대표운영팀장) * (후보자) 클린스만, (후보자)
2023. 2. 7.	• V 위원장, A에게 1차 온라인 면접 결과* 보고 * (1순위) 클린스만-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2023. 2. 8. ~ 2. 9.	• 2차 온라인 면접(A, D) * (1~2순위 후보자) 클린스만, (후보자)
2023. 2. 15. ~ 2. 24.	• 축구협회-클린스만 후보자와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 체결(2. 24.)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할 2차 온라인 면접의 결과가 V 위원장이

12) 2023년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중 주요내용(간사가 회의내용을 요약정리) 발췌

주요 내용
·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음으로 전체적인 과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되 적절한 정보 공유는 필수 → 선임 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전체 과정을 모두 공유할 수 없지만, 필수적인 부분 등은 공유할 것
· 일부 과정들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들의 양해 당부 및 위원장 전권에 대한 이해 필요 → 특수성을 인정하며 필수적인 정보는 위원회 반드시 공유 및 점검 필요

- 13) Q 국가대표운영팀장과 클린스만은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이후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필수적인 정보를 전력강화위원들에게 공유하거나 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함
- 14)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감독 선임 전체 권한을 위임한다면, 전력강화위원들의 역할은 무엇이 남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역할이 없을 것 같다”라고 답변함
전력강화위원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과정에서 항상 배제되어 있고, 현재 남자A 대표팀 관련 감독에 대한 문제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애초에 남자A 대표팀 감독을 뽑는데 너무 안일하게 접근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함(제4차 전력강화위원회, 2023. 8. 28.)
- 15) Q 팀장은 2차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1차 온라인 면접 결과를 회장님께 보고드렸을 때 회장님께서 1, 2순위를 직접 미팅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함
- 16) D는 회장님이 1, 2순위 감독 후보자의 인성이나 감독 의지, 가족 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직접 대면(온라인)하여 면접을 진행하고자 하셨으며, 감독 후보자들에게 한국 거주 문제, 가족 사항, 한국팀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각각 약 30분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함
- 17) (A 진술) V 위원장이 1차 때 클린스만을 강력히 추천했는데, 클린스만이 워낙 유명한 분이래 협상 과정에서 연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등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음. 1, 2순위 감독 후보자가 한국 정서에 맞을까, 어떻게 일할 것인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음. 1, 2순위를 정한 것이 잘 추천했는지 기관장으로서 확인하는 과정이었음

진행한 1차 온라인 면접결과의 순위와 동일하다고 하여,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할 최종 면접을 회장 본인이 진행하고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내정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

③ 최종 면접 과정 불투명

-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선발을 위해 감독 후보자 면접 등 관련 자료는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여 하나,¹⁸⁾ 1차 온라인 면접¹⁹⁾ 때와는 달리 회장이 진행한 2차 온라인 면접 관련 자료는 남아있지 않아, 면접 내용과 최종 평가 결과를 알 수 없음

④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 국가대표팀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각급 대표팀의 지도자 선임 시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실무자가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²⁰⁾ 등으로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

⑤ 허위 반박자료 배포

- 축구협회는 2024. 5. 5. ‘MK스포츠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보도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반박자료를 배포하면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V 위원장이 복수의 후보자를 상대로 1, 2차 화상면접을 진행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반박자료 작성·배포²¹⁾

- A도 2024. 2. 16.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 때도 61명에서 23명으로 좁혀지다가 최종적으로 V 위원장이 5명을

18) 선발과정 및 결과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까지 공개할 수 있음(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제6항)

19) 감사자료에 따르면 V 위원장과 Q 팀장은 2023. 1. 30. [REDACTED], 1. 31. 클린스만과 [REDACTED], 2. 1. [REDACTED]와 1차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고, 관련 인터뷰 회의록 및 면접 결과자료(선수 경력, 지도자 경력, 특기사항, 인터뷰 결과)를 작성함

20) (D 진술) 이전까지 각급 대표팀 감독 등을 선임할 때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임. 다만, 지금까지 각급 대표팀 감독을 공식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선임해본 적이 없고, 이사회를 대표하는 회장의 보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규정에 대한 별다른 인식 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A 진술) (문)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임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 당시 실무자가 알려 주지 않아서 잘 몰랐음. 잘 모르고 누락된 부분이지 의도를 갖고 누락한 건 아닌 것 같음

21) 2024. 5. 5. 축구협회 반박 보도자료 발췌

◇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2023년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에는 V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와 후보자를 줄여나가고, 복수의 후보자를 상대로 1, 2차 화상면접을 진행했으며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는 협회에 전달되고 회장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V 위원장이 5명의 후보를 인터뷰했고, 우선 순위 1, 2번 2명을 2차 면접을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으로 결정된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회장 본인이 2차 면접을 진행했음에도 V 위원장이 2차 면접을 진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발언²²⁾을 함

〈홍명보 감독 선임의 경우〉

①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C가 최종 감독 추천

○ C²³⁾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축구협회의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 총괄이사(상근직)로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A 및 B로부터 감독 선임 관련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²⁴⁾로 [표 5]와 같이 최종 감독 후보자 3명과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감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보고하는 등 감독 추천 과정에 관여함

- 축구협회는 2024. 7. 22.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24. 6. 30. 온라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C가 위원들로부터 최종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면담→협상→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를 위임받았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²⁵⁾

22) A은 V 위원장이 2차 면접을 진행했다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 2차례 면담을 진행했다는 설명이었고, 누가 면접을 진행했는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함

23) C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축구협회 지도자 전임강사로 근무하고 있고, 2023. 1. 18. 축구협회 이사(임원)로 취임하여 기술발전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축구협회 조직 개편 후 2024. 4. 15.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 총괄이사(임원이 아닌 상근직)직도 겸직하고 있음. 다만, 홍명보 감독 추천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위촉되지는 않음

24) (C 진술) B가 저에게 “5개월 동안 감독 선임이 안 되고, 위원회 내부적으로 자꾸 유출이 되고,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하기에 시간도 촉박하고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도 다 끝났으니 C가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저에게 지시하였고 저는 그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임. 규정상 감독 추천이나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규정을 검토해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조직 내에서 부회장이 총괄이사인 제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시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국 축구를 위해서 빨리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음. B로부터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면담 후 우선순위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제가 회장님께 문자로 “저보고 3명의 최종 후보를 면담하라고 해서 가야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니 회장님이 “최종 후보 3명을 선임권 없이 검토하세요. KFA C 총괄이사의 판단을 믿습니다”라고 문자로 회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자로 회장님이 저에게 감독 선임 업무를 맡겨 주셨다고 판단하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 같음

(B 진술) (문) 귀하는 C에게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도 끝났으니 C가 이 일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답) 네. C가 이 일을 이어 나갈 최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이 일을 맡아 주시라고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미션은 3명으로 압축된 후보자를 직접 대면 면담하고 홍명보 감독도 꼭 만나보시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잘 검토하셔서 협회에 우선순위 보고를 해달라고 했음

(A 진술) 추천 이후 계약협상은 협회에서 할 일이고 그건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C에게 위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음. 이미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추천을 했고, 그 이후는 협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함

25) (C 진술) 보도설명자료가 잘못되었음. 당시 제가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보도설명자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거나 내용과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은 없었음. 보도설명자료는 B와 홍보실장이 알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저는 감독

- 2024. 6. 30. 온라인 회의에서 C는 최종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진행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면접 후 위원들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전력강화위원들과 감독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²⁶⁾하였으나 이후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지키지 못함²⁷⁾²⁸⁾
- C는 2024. 6. 30.에는 위원들로부터 감독 결정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으나 2024. 7. 7.에는 위원들에게 전화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미 권한 없이 감독 결정을 한 이후 도의적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것²⁹⁾으로 확인되며, 일부 위원은 통화 내용은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닌 '통보'였다고 밝힘
- 한편 축구협회는 2024. 7. 22.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C가 3명의 최종 감독 후보자들과 계약 협상까지 모두 수행하고 감독을 내정한 것으로 주장하나, 감사 결과 C는 연봉 및 계약 조건 등의 협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동 협상은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³⁰⁾³¹⁾

후보자 3명에 대한 면담을 하고 위원들에게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시 6. 30. 온라인 회의에서는 감독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었음

26) 2024. 6. 30. 온라인 전력강화위원회 영상회의록 내용 발췌

(C 발언)

- 화요일에 Z, AA 대면면담하러 가겠음. 이후 홍명보 감독 만난 후 최종 순위를 매겨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릴 예정
- 나는 내가 인터뷰하고 순위를 매겨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할 의무가 있음. 최종 보고를 위원님들에게 하겠음
- 여러분들과 마무리를 짓는게 맞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 제가 화요일에 인터뷰하고 돌아오면 언론에서는 알 것이고, 위원회와 소통을 가졌냐고 물어볼 것이고...숨기는 건 말이 안되고,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서...
- 2명의 인터뷰와 홍명보 감독을 만난 후 최종 보고 후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겠음. 제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분들과 마무리를 하고자 함

- 27) (C 진술) 7월 7일에 위원분들에게 전화하여 “지금 시간도 촉박하고 내부 정보가 유출되니 최종 후보 3명에 대한 최종 결정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드렸고 모두들 동의해 주셨음. 제가 7월 7일에 위원들에게 전화를 드린 이유는 제가 6. 30.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인터뷰 결과를 위원들에게 보고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마음에 걸려 제가 최종 결정을 해도 되겠냐는 동의를 받고자 전화를 한 것이었음. 전화 통화 이후 바로 내정 발표를 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다는 사실을 별도로 위원들에게 얘기하지는 못했음
- 28) 축구협회는 7월 7일 14시에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언론에 공지하였는데, C는 13시 10분경부터 13시 24분경까지 [REDACTED] 위원 등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통화 시간은 평균 약 1분 46초임
- 29) (C 진술) 제가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보고한다는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마음으로 7월 7일에 다시 전화를 드려 최종 결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임
- 30) (C 진술) Z, AA과의 계약 협상은 행정지원팀 AC 변호사가 했고, 연봉 협상 자리에 제가 참여하지도 않았음. 연봉에 대해서는 저는 권한도 없었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홍명보 감독과 대면 면담을 할 때도 저는 연봉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홍명보 감독도 연봉이나 처우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로 다음 날 아침에 감독직을 수락하였음
- 31) (행정지원팀 AC 변호사) C는 Z, AA과 인터뷰 한 후에 감독들과 자리를 떴으며, 통상 계약 협상은 감독들과 직접 하지 않고 에이전트와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C는 참석하지 않음. 홍명보 감독의 경우에는 M 행정지원팀 장으로부터 연봉 등 계약 내용을 전해 듣고 계약서를 준비하였음
(M 행정지원팀장) 통상적으로 국내 감독 계약은 행정지원팀에서 진행하는데, 홍명보 감독의 경우는 당시 D와 B에게 보고하면서 제가 계약 협상을 진행했음
(B 진술) M 행정지원팀장이 회장님께 보고드리면서 연봉 등 협상 및 계약을 진행했고, 저도 그 내용을 함께 공유받았음

[표 5] C, 최종 감독 후보자 결정 과정

일시	주요 내용
2024. 6. 28.	• W 위원장, 축구협회에 구두로 사의 표명
2024. 6. 30.	• 전력강화위원회 임시 온라인 회의 ³²⁾ (C, [REDACTED])
2024. 7. 3. ~ 7. 4.(스페인, 독일)	• 외국인 후보자 2명 대면 면접 및 계약 협상·조율(C, 기술본부장, AC 변호사, AD 매니저) * (후보자) AA, Z
2024. 7. 5.	• 홍명보 감독 대면 면접(C)
2024. 7. 6.	• 홍명보 감독, C에게 감독직 수락 의사 전달 • C, B에게 홍명보 감독 수락 사실 전달 및 1~3순위 보고(1순위: 홍명보, 2순위: AA, 3순위: Z)
2024. 7. 6. ~ 7. 7.	• 축구협회(행정지원팀)-홍명보 감독과 계약 조건 협상, 계약서 작성
2024. 7. 7.	• C, 온라인 임시회의에 참여한 전력강화위원 5명과 통화* * 최종 감독 결정을 C 본인이 하겠다는 것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받고자 통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언론에 공지
2024. 7. 8.	• C,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 정식 발표

주: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회의 구성 요건 검토 결과, 「정관」 상에는 분과위원회 구성 요건(7인 이상)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위원들의 명확한 사임 시점(온라인 회의 이전 인지, 이후 인지 여부)에 대해 축구협회 관계자들의 답변 및 진술이 상이한 상황으로, 온라인 회의 진행 당시 분과위원회 구성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②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의 불투명·불공정성

-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선발을 위해 감독 후보자 면접 등 관련 자료는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여야 하나, [표 6]과 같이 홍명보 감독 면접은 7명(X, Y, [REDACTED], AA, Z)의 외국인 감독 후보자와의 대면·비대면 면접³²⁾ 때와는 달리, 참관인 없이 C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면접 자료도 별도로 남기지 않는 등 실제 면접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
- 이에 대해 C는 홍명보 감독과 면담 시 외국인 감독들에게 한 인터뷰 질문지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였고, 당시 메모로 남겨 놓았으나 메모를 따로 보관하지는 않았으며, 면담 후 메모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면접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음³³⁾

32) 외국인 감독 후보자와의 비대면 면접 과정은 영상자료로 남아있으며, 대면 면접 시 사전에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고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됨

33) 축구협회는 AA, Z, 홍명보 감독의 대면 면접 자료(인터뷰 질문에 대한 답변)가 외부로 노출될 경우 협회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나아가 차기 감독 선임과정에서 유능한 감독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사 및 사생활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감독들의 답변 내용은 공란 처리하여 감사자료로 제출

- 또한 W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과는 대면·비대면 면접을 진행하거나 면접 요청도 하지 않은 채,³⁴⁾ 2024. 6. 27. 회장에게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되며,
- C는 홍명보 감독을 만나기 위해 자택 근처에서 약 4~5시간 동안 기다리고,³⁵⁾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³⁶⁾하는 등 외국인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할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임

[표 6] 외국인 감독 후보자 vs 홍명보 감독 면접 상황

구 분	감독 후보자	비대면 면접			대면 면접		
		일시/장소	참석자	관련 자료	일시/장소	참석자	관련 자료
1차	X (1순위)	2024.4.11./ 축구협회 3층	W 위원장, ■ ■■■■■■■■ ■■■■■■■■ 위원, 기술본부장	영상 회의록, 인터뷰 질문지 및 답변 자료	2024.4.18./ 런던	W 위원장, ■ ■■■■■■■■ 위원, AD 매니저	인터뷰 질문지 및 답변·평가 자료
	Y (2순위)				2024.4.21./ 카타르 도하		
	■■■■■■■■ ■■■■■■■■ (3순위)	2024.4.12./ 축구협회 3층			— ^{주1)}	—	
	■■■■■■■■ (4순위)	2024.4.14./ 축구협회 3층			2024.4.19./ 리스본	W 위원장, ■ ■■■■■■■■ 위원, AD 매니저	인터뷰 질문지 및 답변·평가 자료
					2024.4.20./ 이스탄불		
2차	AA (2순위)	2024.6.25./ 축구협회 3층	W 위원장, C, 기술본부장	영상 회의록, 인터뷰 질문지 및 답변 자료	2024.7.3./ 마드리드	C, 본부장, AC 변호사, AD 매니저	인터뷰 질문지 및 답변 자료 (답변 공란 처리)
	Z (3순위)				2024.7.4./ 프랑크푸르트		
	홍명보 (1순위)	—	—	—	2024.7.5./ 자택 근처 카페 ^{주2)}	C	메모

주1: ■■■■■■는 당시 세네갈 출장 일정으로 대면 면접 불가

주2: 홍명보 감독의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커피숍/빵집)에서 면담 진행(C 진술)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③ 이사회 선임 권한 형해화

-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을 포함한 각급 대표팀의 지도자 선임 시 이사회 선임 절차를 지속적으로 누락 해 오다가, 2024. 2. 27. 황선홍 임시 감독 선임 시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권한 없이 임시

34) (W 위원장 진술) 당시 홍명보 감독에게는 면담 요청을 하지 않았고, 다만 개인적으로 다른 일로 전화 통화를 한번 한 기억은 있음

35) (C 진술) 제가 귀국해서 홍명보 감독에게 문자를 보내 집 앞에서 만나 뵙고자 했는데 홍 감독님이 경기 끝나고 오시면서 10시 반쯤 연락이 와서 기다렸음. 제가 6~7시쯤 홍명보 감독 자택 근처 커피숍에서 업무를 보면서 기다렸음

36) C는 2024. 7. 8.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브리핑에서 “7월 5일 금요일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홍명보 감독님 집 앞에서 밤 11시경에 만났다. 홍명보 감독님에게 몇 차례 한국 축구의 철학과 게임 모델을 연결해서 A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연속성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달라는 부탁을 몇 차례나 드렸다”라고 발언하였는데, 이에 대해 C는 “홍명보 감독과 면담 후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판단하고 면담 마지막 부분에서 감독직을 맡아주실 것을 고려해 달라고 얘기하였는데, 부탁이라는 표현보다는 요청이 맞는 표현 같고, 부탁이라고 표현한 것은 본인의 불찰인 것 같다”라고 진술함

감독을 선임했다는 비판이 일자,

- 2024. 5. 28. 제3차 이사회에서 '추인사항'으로 '월드컵 2차 예선(3월, 6월) 국가대표팀 임시 감독(황선홍, 김도훈) 및 코칭스태프 선임' 건을 상정하여 추진받으면서, 통상 감독 선임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선임·발표되고 절차상 이사회를 통해 추진한다고 안내³⁷⁾

○ 그런데 홍명보 감독 선임 시에는 2024. 7. 8. C가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2024. 7. 10. ~ 7. 12. 이사회에서 서면결의를 통해 '남자 국가대표 감독 선임(안)'을 승인한 후 2024. 7. 13.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하였는데,

-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이고, 그 역할은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여러 후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³⁸⁾이라며,
- 기존 2024. 5. 28. 이사회에서 밝혔던 입장(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선임·발표 후 이사회 추진)을 변경하는 등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정을 다르게 해석·적용

○ 이사회는 축구협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한 감독을 선임³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축구협회에서 감독을 이미 내정·발표한 이후 이사회를 거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을 형해화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되는데, 실제 이사회의 서면결의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⁴⁰⁾한 것으로 확인

④ 허위 보도설명자료 배포

-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절차와 과정 등에 대한 비판이 일자 2024. 7. 22. 보도설명자료 2건('국가대표팀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37) (M 행정지원팀장) "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보면 국가대표 감독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통상 감독의 선임에 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선임이 되고 바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절차상 이사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음"(제3차 이사회 회의록)

38) 2024. 7. 22. 축구협회 보도설명자료(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관련 Q&A), '전력강화위원장 사의 표명 후 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최종면담, 협상 등을 이어받은 것에 대한 규정상 설명' 중 관련 내용 언급

39) '선임'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 가운데서 어떤 직무나 임무를 맡을 사람을 골라냄'임

40) (■■■■ 이사 서면결의 의견) 선임 감독 선임에 반대 의견은 없음. 단 축구협회 사외이사로서 진행과정에 단 하나의 정보나 설명도 못받은 상태로 부정적인 언론보도만 접하면서 단순 요식행위에 가부판정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을 표함

(■■■■ 부회장 서면결의 의견) 차기 국내감독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했으면 좋겠음

‘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Q&A’)을 작성·배포하였는데,⁴¹⁾⁴²⁾ 감사 결과 [표 7]과 같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됨⁴³⁾

- 특히 2024. 6. 30.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거나 C가 ‘면담→협상→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 권한을 위원들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실제 C가 아닌 M 행정지원팀장이 계약 협상을 진행
- 또한 홍명보 감독이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최다 추천을 받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감사 결과 Z 감독과 공동 1위였던 것으로 확인

[표 7] 축구협회 보도설명자료 오류

보도설명자료 내용	감사 결과
비상상황(전력강화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퇴 등)을 대비한 규정이 미비했음	- 정관 제49조에 따르면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및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사임 시 부위원장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에도, 축구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 시 부위원장을 위촉하지 않음^{주1)} - 또한 정관 제30조에 따르면 이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임서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W 위원장은 6. 28.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7. 16.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사임일을 6. 28.자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확인
제5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97명 중 1차 후보 11명(외국인 6명, 한국인 5명 선정)	후보 11명(외국인 7명, 한국인 4명 선정)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이 선호 후보자를 복수 추천, 이 결과 토대로 후보자를 4명으로 압축(4명 중 홍명보 감독 최다 추천)^{주2)주3)}	4명 중 홍명보 감독과 외국인 감독(Z)이 공동으로 최다 추천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W 위원장 사의 표명에 따른 후속 방안 논의 1안)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안 2안) 최종 후보 3인에 대한 후속 절차(면담→협상→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를 C가 이어받아 진행하는 안 - 위 두가지 방안 중 2안으로 진행할 것을 참석 위원 전원 동의 - 참석 위원 전원은 C에게 감독 추천과 관련한 절차의 진행을 위임하는데 동의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1안)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으며,^{주4)} C에게 ‘면담→협상→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음^{주5)주6)}

주1: 클린스만 및 홍명보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축구협회 관계자(D, Q 팀장, ■■■ 매니저 등)들은 모두 사유를 잘 모르겠다고 답변함

41) (B 진술) 감독 선임 관련 여러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가 보도설명자료 작성·배포를 지시했음

42) A는 1차 문답에서는 사전에 보도설명자료를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감사 과정에서 보도설명자료 배포 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사전에 보고받은 것이 확인되자 2차 문답에서는 보도설명자료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함

43) A는 보도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아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며, 이를 작성한 실무 담당자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함

- 주2: (홍보실장 진술) 보도설명자료 초안은 '공동 1위'였고 홍명보 감독이 Z 감독과 함께 최다 득표를 받은 후보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후 최종 검토·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이에 최다 득표로 수정되었음
- 주3: (B 진술) 간단하고 임팩트 있게 보도자료를 작성하고자 '공동' 글자를 빼도 무방하다고 제가 판단하여 빼자고 있음. 다만, '공동' 글자를 뺐다고 하여 심각한 오류나 조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음
- 주4: (B 진술)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안(보도설명자료상 1안)은 협회 내부 TF에서 결정된 안이었고, 30일 온라인 회의에서 논의한 적은 없음. 그러나 보도설명자료를 왜곡한 적은 없고 설명의 편의상 '전력강화위원과 온라인 회의'에 1안, 2안 내용을 포함하여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한 것임
- 주5: (진술) 저도 보도설명자료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음. 6월 30일 온라인 회의 당시에 1, 2안을 구분하여 논의하거나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었음. 당시 온라인 회의에서 C가 감독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었음
- 주6: (B 진술) 전력강화위원회는 추천 권한만 있을 뿐, 협상이나 내정 권한은 없는데 C가 그 권한을 전력강화위원들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건 보도설명자료가 잘못되었음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④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 결과

○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관련하여,

- ▲ 내부방침으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하거나 배제하지 않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은 회의록 축약 및 편집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정리된 것이며, ▲ 회장이 감독 후보자 최종 면접을 진행하거나 후보자를 평가하지 않았고, 직무 범위 내에서 진행된 의견 청취 자리였기 때문에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 반박자료나 회장의 기자회견 발언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발표나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다소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게 표현된 것일 뿐,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한편, 규정 그대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존재한다는 의견 제시

○ 또한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 ▲ C는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하는 감독 추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기술총괄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이며, ▲ 홍명보 감독의 면접 상황에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고, ▲ 이사회 서면결의에 절차적 문제점이 없고, 이사회의 권한이 침해된 부분도 없으며, ▲ 보도설명자료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부 오류나 불충분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지 않으나 사실과 진실을 외부에 밝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왜곡이나 축소의 의도도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

- 그러나 축구협회의 위와 같은 의견은 감사 과정에서 이미 검토된 내용이거나, 축구협회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근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축구협회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히, 축구협회는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따라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해야 하는 감독 추천행위를 C가 하게 된 근거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차례 주장을 번복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는 [별표 2] 'C의 권한 없는 행위 관련 축구협회 주장 및 검토 결과'와 같음
 - (1차) 당초에는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2024. 6. 30. 전력강화위원과 온라인 회의를 통해 참석위원 5명 전원이 C에게 최종 후보 3인에 대한 후속 절차 (면담→협상→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진행을 위임하는데 동의하였고, 2024. 7. 7. C가 온라인 회의에 참가했던 전력강화위원 5명과 통화하여 '최종 후보 3인 면담→감독 내정→이사회 추천' 등의 권한을 C에게 위임했던 당시 합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
 -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C가 전력강화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우선순위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자,
 - (2차) 축구협회는 답변서를 통해 입장을 번복하여, 감독 선임에 있어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W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되었고, 전권을 위임받은 W 위원장이 2024. 6. 28.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면서 협회에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은 협회가 대신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협회는 해당 역할을 진행할 책임자인 C에게 해당 업무를 이어받아 진행할 것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C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없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
 - 또한 2024. 6. 30. 온라인 회의는 그 회의의 성격이나 절차 측면에서 어떠한 권한 부여를 결정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니고, 그 회의를 감독 후보자 추천의

후속 절차에 있어 면접 진행 권한과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및 사실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

- 그런데 W 위원장은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협회가 대신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없고,⁴⁴⁾ 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 추천(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지 협상 권한은 애초부터 없으며,⁴⁵⁾ 설사 W 위원장이 본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협회에 재위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전력강화위원회에서 W 위원장에게 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움
- (3차) 축구협회는 2024. 10. 2.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중간 발표에 대한 협회 입장문'을 통해 또다시 입장을 번복하여, C는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하는 감독 추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기술 총괄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이며, 「정관」 제47조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는 사태를 수습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책임자로 C를 지명하였다고 주장
- 그런데 C는 감독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면접·평가 후 우선순위(1순위: 홍명보, 2순위: AA, 3순위: Z)를 정하여 보고자료 작성 후 B에게 보고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하는 감독 추천행위를 한 것이며,
- 축구협회에서는 W 위원장이 추천한 우선순위대로 대면 협상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C가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해 대면 면접을 진행한 후 감독 후보자 추천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1순위는 동일, 2, 3순위는 변동)하여 협회에 보고한 것임
- 따라서 C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권한 없이 대신 한 것이고, 계약 협상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C가 전력강화위원회 기능 종료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44) (W 위원장 진술)

(문) 6월 28일 오전 당시 사의 표명 상황에 대해 진술하여 주시기 바람
(답) 회장 보고 후 그 다음날 M 팀장에게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사임하겠다고 했고, 당시 M 팀장에게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 당시 M 팀장에게 이후 감독 선임에 대한 후속조치는 협회에서 말아서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 아니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45) (W 위원장) 협회에서 정관상 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 후보자 추천만 할 수 있고 협상 테이블에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협상 진행 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함

5 조치할 사항

-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2차/최종)을 회장이 직접 진행하면서 면접 과정이 불투명했으며,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하고,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하였으며,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사결의를 거치는 등 이사회 형해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자 ▲허위 반박자료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행위 등은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감독, 코치 등의 선임) 위반 및 단체 운영과 관련한 직무태만 행위로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25조(징계 기준) 및 「인사 규정」 제50조(징계 심의), 제51조(징계의 대상) 등에 따라 관련자 징계 조치
-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이 권한 없는 자의 불공정·불투명한 추천으로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대한축구협회장은

①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를 위반하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 운영 등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를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 제25조 및 「인사규정」 제50조, 제51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문책)

[관련자]	대한축구협회	A*	자격정지 이상
	대한축구협회	B**	자격정지 이상
	대한축구협회	C	자격정지 이상
	대한축구협회	D***	정직 이상

* 1.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4.축구인 사면 업무처리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조치 요구

** 1.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5.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조치 요구

*** 1.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2.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5.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조치 요구

②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은 권한 없는 자의 불공정·불투명한 추천으로 이루어진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축구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1]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운영 및 감독 선임 등 관련 경과

일시	주요 내용
2024. 2. 20.	• 축구협회, W 신임 전력강화위원장 선임 및 전력강화위원 구성 발표(총 11명) * (위원장) W, (위원) [REDACTED]
2024. 2. 21.	•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9명 참석) - 국내 감독 vs 외국인 감독, 정식 감독 vs 임시 감독에 대한 논의 - 감독 선임 기준* 논의 * 감독 역량(전술적, 게임플랜 등), 육성(취약 포지션, 유망선수), 명분(성과, 설득), 다양한 경험(지도자, 선수 등), 소통 능력(선수, 협회 등), 리더십(선수단 성향 맞춤), 코칭스태프(전술, 관리, 최적의 결정), 성적을 낼 능력 등
2024. 2. 24.	• 제2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10명 참석) - 임시 감독* 체제 후 정식 감독 선임 논의 : 충분한 감독 풀(Pool)을 두고, 기술 철학에 맞는 축구적·전술적으로 경쟁력·설득력 있는 감독 선임을 장기적으로 접근 * 위원들 복수 추천을 통해 (1순위) [REDACTED] - (2순위) [REDACTED] - (3순위) [REDACTED] 추천
2024. 2. 27.	• 제3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9명 참석) - 3월 월드컵 예선 임시 감독 황선홍 감독으로 결정 - 정식 감독 선임 관련 논의 : 국내 감독 vs 외국인 감독, 기준, 방식, 일정 등
2024. 3. 12.	• 제4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10명 참석) - 국내 감독, 외국인 감독 구분 없이 감독 후보자 명단(97명) 공유 및 토론 - 1차 후보군 압축은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
2024. 3. 20.	• 전력강화위원회 소위원회 회의(6명 참석) - 감독 후보자 명단 검토 및 1차 후보군*(11명) 압축·결정, 면접 질문항목 검토 * (국내) 홍명보, [REDACTED], (국외) [REDACTED], Y, X, [REDACTED]
2024. 4. 2.	• 제5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9명 참석) - 소위원회 결과(후보자 11명) 공유, 감독 후보자 면접 질문항목 주요확인 사항 (평가 포인트 등) 논의 -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콜린 벨) 재계약 여부 논의 - 남자 U-20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후보자 8명([REDACTED]) 추천 및 추가 추천 요청
2024. 4. 11. ~ 4. 14.	• 후보자 5명 온라인 면접(W 위원장, [REDACTED] 위원, 기술본부장) * (후보자) Y, X, [REDACTED]
2024. 4. 18. ~ 4. 21.(영국, 포르투갈, 튀르키예, 카타르)	• 후보자 4명 대면 면접(W 위원장, [REDACTED] 위원, AD 매니저) * (후보자) X, [REDACTED], Y ** [REDACTED]는 당시 세네갈 출장 일정으로 대면 면접 불가
2024. 4. 30.	• W 위원장, A에게 대면 면접 결과(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 브리핑*) 보고 * 남자 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 : 2인 요약(X, Y) • 제6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10명 참석) - 대면 면접 결과 공유, 1~4순위* 후보자 선정 및 축구협회에 계약 협상 요청 * (1순위) X- (2순위) Y- (3순위) [REDACTED] - (4순위) [REDACTED] ** 1, 2순위까지 협상이 안될 경우 다른 대안 검토 - 남자 U-20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후보군(총 9명), 주요대회 일정 등 공유
2024. 4. 30. ~ 5. 10.	• 축구협회(경영본부)-X 1순위 후보자와 계약 조건 협상, 협상 결렬 * 국내 거주 및 세금 등 문제로 감독직 포기(5. 10. X, 축구협회에 이메일로 포기 의사 전달)
2024. 5. 6. ~ 5. 12.	• 전력강화위원회 소위원회 회의(5명 참석) - 남자 U-20 대표팀 감독 선임 최종 후보군 결정(총 15명) 및 감독 의향이 있는 최종 3명([REDACTED] 감독) 인터뷰 진행·평가

[별표 2] C의 권한 없는 행위 관련 축구협회 주장 및 검토 결과

구분	축구협회 주장	검토 결과
“감사 지적사항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4. 9. 27.)	• 감독선임에 있어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W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 - 전권을 위임받은 W 위원장이 2024. 6. 28.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면서 협회에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협회가 대신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청 - 협회는 해당 역할을 진행할 적임자인 C에게 해당 업무를 이어받아 진행할 것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C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없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부당 • 또한 2024. 6. 30. 온라인 회의는 그 회의의 성격이나 절차 측면에서 어떠한 권한 부여를 결정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니고, 그 회의를 감독 후보자 추천의 후속 절차에 있어 면접 진행 권한과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및 사실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W 위원장은 2024. 6. 28. 사의를 표명하면서 협회에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협회가 대신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 - 설사 W 위원장이 본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협회에 재위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전력강화위원회에서 W 위원장에게 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2024. 6. 30. 온라인 회의 관련, 전력강화위원회 구성 요건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검토 결과, 「정관」상에는 분과위원회 구성 요건(7인 이상)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없음 - W 위원장은 6. 28.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아 온라인 회의 당시 사임 상태가 아니었으며, - 위원들은 위원장과 달리 사임서 제출 의무가 없어 구두로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원들의 명확한 사임 시점에 대해 축구협회 관계자들의 답변 및 진술이 상이한 상황으로, 온라인 회의 진행 당시 분과위원회 구성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 위원 5명이 참석하였다고 하여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 또한, 2024. 6. 30. 온라인 임시회의도 다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력강화위원회 운영 부서(기술본부)에서 소집하여 기술본부장과 위원회 간사 참여하에 진행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중간 발표에 대한 협회 입장” (2024. 10. 2.)	• C는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하는 감독 추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기술총괄 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임 - 6월 21일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관에 따라 감독 후보 추천한 것으로 금번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종료된 것 •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6조에는 ‘협회가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7조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음 - W 위원장이 6월 28일 돌연 사퇴한데	• C는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하는 감독 추천 행위를 한 것임 - 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평가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협회에 추천→ 최종적인 후보들이 정해지면 협상 및 최종 계약 조율은 협회 행정파트에서 진행하는데,^{주1)} - C는 감독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면접 평가^{주2)} 후 우선순위(1순위: 홍명보, 2순위: AA, 3순위: Z)를 정하여 보고 자료 작성 후 B에게 보고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하는 감독 추천 행위를 함 - 이후 협회(행정지원팀장)가 1순위 홍명보 감독 후보자와 계약 협상

구분	축구협회 주장	검토 결과
	<u>따라 협회는 협회장과 관계 직원들이 모여 여러 대안을 상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책임자로 C를 지명</u>	• 또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결과, 최종 감독 후보자(3명)를 추천하고 마무리된 것이 아님 - 동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각자 감독 후보자를 3명씩 복수로 추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후, 다수 추천된 감독 후보자(5명)에 대한 최종 추천 권한을 W 위원장에게 위임한 것임 - W 위원장은 5명의 감독 후보자 중 3명에 대해 우선순위(1순위: 홍명보, 2순위: Z, 3순위: AA)를 정하여 A에게 보고하였으나, 감독 후보자들에 대한 <u>대면 면접을 요청받고 사임하였으므로, 대면 면접을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W 위원장이 최종 감독 후보자 추천 행위를 마무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u> • 한편, 축구협회는 1·2차 해명에서 C가 전력강화위원들 또는 W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감독 후보자 추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다가, 모두 거짓 해명임이 드러나자, 정관에 따라 긴급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회장이 사태 수습을 위해 C를 지명했다고 하는 등 진술 번복 - 또한 정관 제47조(긴급처리)는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u>이사회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고, 차기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가,</u> - <u>회장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면 서까지 이사회 보고·승인 전에 긴급 업무를 처리하라는 의미는 아님</u> - 따라서 회장이 권한 없는 C에게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해야 할 감독 추천 행위를 지시한 것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부적정한 행위로, 정관 제47조에 따라 긴급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주1: “감독선임 과정에서 최종적인 후보들이 정해지고 나면 그들과 협상 및 최종계약을 조율하는 과정 역시 중요함. 협상과 계약은 업무성격상 협회 행정파트가 맡아 감독 측 대리인(에이전트, 변호사) 및 협회 측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계약사항을 조율하는 실무를 진행해 계약을 마무리함”(2024. 7. 22. 축구협회 보도설명자료)

주2: C는 스페인과 독일에서 AA, Z를 대상으로 대면 면접함. 이후 계약 협상·조율은 행정지원팀 소속 변호사가 에이전트와 진행하였으며, 계약 협상 자리에 C는 참여하지 않음

자료: 대한축구협회 답변서 및 입장문에 대한 검토 결과 재구성

① 업무 개요

- 축구협회는 남자(성인, U-23, U-20, U-17, 유니버시아드) 및 여자(성인, U-20, U-17, U-14, 유니버시아드) 연령별 국가대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팀 운영을 위해 감독, 코치(필드, 골키퍼(GK), 피지컬) 등의 지도자를 선임하여 활동하게 하고 있음
 - 2024년 8월 현재 국가대표 10개 팀 43명(전담 15명, 전임 18명, 파트타임 10명 / 48개 역할⁴⁶⁾)의 지도자가 선임되어 활동 중이며, 지도자는 일정 기간 특정 팀만을 전담으로 맡아 지도하는 '전담지도자'와 탄력적으로 시기와 팀을 달리 하여 지도하는 '전임지도자'로 나누어짐
- 축구협회는 국내에서 축구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운영하고 있으며, 동호인, 초·중·고등부, 성인, K리그, 대표팀 등에서 지도하기 위해 축구협회가 정한 '최소 자격 기준'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②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각급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이하 "전강위")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이하 "기발위")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도자 교육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지도자라 함은 협회가 발급하는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라 지도자가 협회에 등록된 팀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등록 규정에 의거하여 [표 8]과 같이 지도 대상별 최소 자격 기준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대표 피지컬 코치에 선임되기 위해서는 'AFC피트니스Lv.1' 자격증을 필수로 소지한 지도자로 제한하고 있음

46) [표 8] 5명은 전임지도자로 2개 팀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음

[표 8] 「지도자 교육규정」 별표3. 연령 및 성별 지도자 최소 자격증 기준

구 분			감독	코치	GK코치	피지컬 코치
동호인(8세이하포함)			KFA D	KFA D	없음	없음
초등, U-12전문			AFC C	KFA D	GK Lv. 1	KFA피트니스
중/고등, U-18전문			AFC B	AFC C	GK Lv. 1	KFA피트니스
대학,성인 전문축구팀			AFC A	AFC B	GK Lv. 2	AFC피트니스Lv.1
K리그1, 2			AFC P	AFC A	GK Lv. 3	AFC피트니스Lv.1
국가대표	남자 18세	여자 20세	AFC A	AFC A	GK Lv. 2	AFC피트니스Lv.1
	남자 20세/23세/성인	여자 성인	AFC P	AFC A	GK Lv. 3	AFC피트니스Lv.1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절차 부적정

- 현행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 지도자 선임 관련하여 ‘전강위(U-18 이상)’와 ‘기발위(U-17 이하)’ 등 공식 추천위원회의 ‘지도자 추천’ 과정의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규정을 준수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 ▲추천 기준 및 결과 ▲의사결정 방법 및 위원 등을 담은 공식 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였어야 하나 43명 지도자 추천 시 별도 공문 및 문서 없이 축구협회에 추천 결과를 전달하여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
- 축구협회는 「정관」 제51조 및 제52조를 근거로 ‘전강위’와 ‘기발위’의 운영 목적과 기능을 정하고 있으면서도, 각 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알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서가 별도로 없어서 ▲후보자 및 최종 추천자 선정 절차, ▲의사결정 방법 등이 지도자 추천 시마다 기준 없이 다르게 운영되는 등 업무 일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 또한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에 근거하여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라 ‘전강위’와 ‘기발위’에서 지도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축구협회는 명문화된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지도자 추천 관련 공정성 논란이 항상 있을 수 있는 실정임
- 그리고 지도자 추천 후 ‘이사회 선임’ 과정의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43명 중 [표 9]의 1번을⁴⁷⁾ 제외한 42명은 이사의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축구

협회의 기술본부 및 기술총괄이사, 전강위,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함으로써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함

[표 9] 현행 국가대표 지도자 선임 과정

번호	연령구분	역할	이름	계약종류	추천 과정		선임 결정 과정
					의견제시	추천 주체	
1	남자A	■	■	전담		전강위(■) 추천	2024년 제4차 이사회(7.11.~7.12)
2	남자A	■	■	전담	감독	전강위(■) 추천	기술총괄이사(C) 및 감독 결정
3	남자A	■	■	전담	감독	전강위(■) 추천	기술총괄이사(C) 및 감독 결정
4	남자A	■	■	전담	감독	전강위(■) 추천	기술총괄이사(C) 및 감독 결정
5	남자A	■	■	전담	감독	전강위(■) 추천	기술총괄이사(C) 및 감독 결정
6	남자A	■	■	전담	감독	전강위(■) 추천	기술총괄이사(C) 및 감독 결정
7	남자A	■	■	전임	감독	전강위(■) 추천	기술총괄이사(C) 및 감독 결정
8	남자A	■	■	전임	감독	전강위(■) 추천	기술총괄이사(C) 및 감독 결정
9	남자A	■	■	전임	감독	전강위(■) 추천	기술총괄이사(C) 및 감독 결정
10	남자U-23	■	■	전담		전강위(■) 추천	전강위 결정
11	남자U-23	■	■	전담	감독	전강위(■) 추천	전강위 결정
12	남자U-23	■	■	전담	감독	전강위(■) 추천	전강위 결정
13	남자U-23	■	■	전담	감독	전강위(■) 추천	전강위 결정
14	남자U-23	■	■	전담	감독	전강위(■) 추천	전강위 결정
15	남자U-20	■	■	전담		전강위(■) 추천	전강위 결정
16	남자U-20	■	■	전담	감독	전강위(■) 추천	감독 결정(전강위에서 권한 위임)
17	남자U-20	■	■	전임	감독	전강위(■) 추천	기술본부 결정
18	남자U-20	■	■	파트타임	감독 협회피지컬파트	전강위(■) 추천	전강위 결정
19	남자U-20	■	■	전임	감독	전강위(■) 추천	기술본부 결정
20	남자U-17	■	■	전임		기발위(C) 추천	기술본부 결정
21	남자U-17	■	■	전임		기발위(C) 추천	기술본부 결정
22	남자U-17	■	■	전임		기발위(C) 추천	기술본부 결정
23	남자U-17	■	■	전임		기발위(C) 추천	기술본부 결정
24	남자U-17	■	■	전임(중복)		기발위(C) 추천	기술본부 결정
25	남자U-17	■	■	파트타임		협회 피지컬 파트 추천	기술본부 결정
26	남자U-17	■	■	전임(중복)		기발위(C) 추천	기술본부 결정
27	남자유니 버시아드	■	■	파트타임	한국대학 축구연맹	전강위(■) 추천	전강위 결정
28	남자유니 버시아드	■	■	파트타임	감독	전강위(■) 추천	전강위 결정
29	남자유니 버시아드	■	■	파트타임	감독	전강위(■) 추천	전강위 결정
30	여자A	■	■	전담		전강위(■) 추천	전강위 결정
31	여자A	■	■	파트타임	감독	전강위(■) 추천	전강위 결정
32	여자A	■	■	전담	■ 감독	전강위(■) 추천	전강위 결정
33	여자A	■	■	전임(중복)	감독	전강위(■) 추천	기술본부 결정
34	여자U-20	■	■	전임	여자축구 어드바이저 (■) 추천	전강위(■) 추천	전강위 결정
35	여자U-20	■	■	전임	감독	전강위(■) 추천	기술본부 결정
36	여자U-20	■	■	파트타임		협회 피지컬 파트 추천	기술본부 결정
37	여자U-20	■	■	전임	감독	전강위(■) 추천	기술본부 결정
38	여자U-17	■	■	전임		기발위(C) 추천	기술본부 결정
39	여자U-17	■	■	전임		기발위(C) 추천	기술본부 결정
40	여자U-17	■	■	파트타임		감독 추천	기술본부 결정

47) 홍명보의 선임 과정의 공정성은 논외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은 2024년 제4차 이사회(2024. 7. 11.~7. 12.)에서 서면 의결함

4 관계기관 등 의견

- (추천 및 선임 절차 부적정) 향후 축구협회에서는 국가대표 지도자 추천 위원회(전강위, 기발위)로부터 추천 근거와 사유, 대상자 등을 문서로 작성하게 하여 전달받을 예정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지도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절차준수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자격증 미보유자 선임) 국가대표팀 피지컬 코치 선임 시 계약의 형태(전담, 전임, 파트타임, 외국인 등)와 상관없이 「지도자 교육규정」에 부합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선임하기 위해, 먼저 실무를 담당하는 기술본부에서 지원자들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본부에서도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제도 개선) 「정관」에서 정한 ‘전강위’ 및 ‘기발위’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지도자 추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과 관련해서는, 2024년에 발표한 ‘한국축구 기술철학’에 따라 한국 축구의 고유성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세계적 트렌드 또한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명문화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선발기준, 지원 방법, 자격 검증 방법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5 조치할 사항

- (추천 및 선임 절차 부적정) 국가대표 지도자 추천 시 위원회의 공식적인 절차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였으며, 이사회의 선임 절차 없이 권한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한 것은 「축구국가 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주의” 조치 필요
- 이사회 선임 절차 없이 최종 선임된 국가대표 지도자 중 임기가 남은 지도자에 대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도록 “시정” 조치 필요
- (자격증 미보유자 선임) ‘AFC피트니스Lv.1’ 자격증 없는 자를 국가대표 피지컬 코치에 선임한 것은 「지도자 교육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4명 중 임기가

남은 지도자에 대해 「지도자 교육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 필요 **“통보”**

- **(제도 개선)** 특정 개인이 지도자 선임 권한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 추천 및 선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 「정관」에서 정한 ‘전강위’와 ‘기발위’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목적 및 기능, ▲권한 및 책임, ▲위원구성 및 의사결정 방법, ▲의사결정 공정성 유지(회의록 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각각의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규정하고 있으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 또한 마련하도록 **“개선”** 조치 필요

대한축구협회장은

- ① 앞으로 지도자 추천 관련 공식자료를 작성·보관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감독, 코치 등의 선임)를 위반하여 권한 없는 자가 지도자 추천 및 선임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또한 「지도자 교육규정」 제4조(지도대상별 최소자격기준)를 위반하여 해당 분야 자격증이 없는 자를 지도자로 선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② 이사회 선임 절차 없이 선임된 국가대표 지도자에 대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도록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③ 임기가 남은 자격증 미보유 지도자에 대해 「지도자 교육규정」 제4조(지도대상별 최소자격기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④ 「정관」 제51조 및 제52조에 근거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가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도자 추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상 개선)**

① 사업 개요

- 축구협회는 축구대표팀의 경쟁력 강화 및 축구인재 양성, 스포츠 가치 확산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 천안시와 함께 [표 11]과 같이 전문 축구훈련시설 및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갖춘 총 451,693㎡ 규모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이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11]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개요

구 분	대한축구협회	충청북도 천안시
사업위치	충청북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원	
사업기간	2018년~2025년	
사업방식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대한축구협회와 천안시가 분담하여 건립 추진	
사업규모	115,255㎡ (34,926평)	336,438㎡ (101,950평)
사업비 (2024년 8월 기준)	1,549억 원	1,894억 원
주요시설	<전문 축구훈련시설> - 미니스타디움(1,500석 규모) - 국제 규격 실내축구장 - 축구장 7면(천연 3면, 하이브리드 2면, 인조 2면) - 퍼포먼스센터(선수 재활·체력 훈련 지원) - 객실(82개실), 사무공간 등	<생활체육시설> - 야외체육시설(축구장 4면, 풋살장 4면, 족구장 2면, 테니스장 5면, 그라운드 골프장 등) - 실내체육관(수영장 6레인, 다목적체육관 등) - 축구역사박물관 등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② 사업 추진경과

- 축구협회는 [표 12]와 같이 2021년 5월 축구종합센터 건립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22년 7월 건립 부지 매입 및 2023년 9월 건축허가를 거쳐 2024년 2월 전체 시설 조성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5년 5월 공사 준공 및 축구종합센터 개관 예정임

[표 12]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주요 추진경과

추진시기	추진주체	추진내용
2018년 6월	축구협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칭)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2018년 10월	축구협회	축구종합센터 건립 부지 선정 공모 절차 실시

추진시기	추진주체	추진내용
2019년 5월	축구협회	축구종합센터 건립 부지로 천안시 최종 선정
2020년 7월	축구협회	축구종합센터 디자인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 및 설계 추진
2021년 5월	축구협회	축구협회 축구종합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2022년 4월	천 안 시	실외 체육시설 조성 공사 착공
2022년 7월	축구협회,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부지 매입 계약 체결
2023년 9월	천 안 시	축구종합센터 건축허가 완료
2023년 9월	축구협회	실시설계 완료 및 축구장 7면 조성 공사 착공
2024년 1월	축구협회	축구종합센터 시공사(△△) 선정
2024년 2월	축구협회	주요 건축물 포함 전체 시설 조성 공사 착공
2025년 5월	축구협회	축구종합센터 조성 공사 준공 및 개관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③ 사업비 세부내역

- 축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축구종합센터의 전문 축구훈련시설 건립 사업비 (이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비”)는 2024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총 1,549억 원이며, [표 13]과 같이 용도별로는 공사비 1,303억 원과 토지비 246억 원, 재원별로는 자체 적립금, 금융기관 차입금, 펀딩 모금액 등 축구협회의 자체예산 1182.5억 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및 천안시 보조금, FIFA U-20 대회 잉여금 등 외부지원금 366.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3]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비 세부내역(2024년 8월 감사일 기준)

(단위: 억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용도별	공사비		1,303	설계·감리비 포함
	토지비		246	2022년부터 10년 분납
	합계		1,549	
재원별	자체 예산	자체 적립금	420	
		축구회관 매각수익	200	
		펀딩 모금액	3.5	2023년 3월~2024년 1월 모금 추진
		금융기관 차입금	559	
		소계	1182.5	
	외부 지원금	문체부 보조금	137	미니스타디움 77, 숙소동 60
		천안시 보조금	110	실내축구장 110
		FIFA U-20 대회 잉여금	39.5	
		FIFA 포워드 지원금	80	
		소계	366.5	
	합계		1,549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1 사건 개요

- 축구종합센터 건립 공사비는 기본설계 수립 이후 시설물 조성 규모 확대, 착공 이후 확인된 지반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설계 변경,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사유로⁴⁸⁾ [표 14]와 같이 2021년 5월 536억 원에서 2024년 8월 감사일 현재 1,303억 원으로 증가함
- 이에 축구협회는 부족한 공사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4. 2. 22. 후원사이자 주거래은행인 ☆☆과 총 615억 원 한도의 공공시설일반자금대출(무담보 신용대출, 5.316% 변동금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24. 2. 29. 775백만 원의 대출금을 실행하여 축구종합센터 종합건축 시공사인 △△에 공사비 선금 명목으로 전액 지급함

[표 14]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비 변동내역 및 조달방안

(단위: 억 원)

구 분		2021년 5월 (2021년도 제2차 이사회 보고자료 기준)	2022년 1월 (2022년도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자료 기준)	2024년 1월 (2024년도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자료 기준)	2024년 8월 (감사일 현재 축구협회 제출자료 기준)
사업비	합계	766	982	1,541	1,549
	공사비	536	772	1,311	1,303
	토지비	233	210	230	246
축구협회 사업비 조달방안 ^{주1)}		- 자체예산 569 * 세부내역 확인불가	- 자체예산 674 * 세부내역 확인불가	- 자체예산 1225 · 자체 적립금 240 · 축구회관 매각수익 250 · 펀딩 모금액 20 · 차입금 615 · 공사비 절감 100	- 자체예산 1182.5 · 자체 적립금 420 · 축구회관 매각수익 200 · 펀딩 모금액 3.5 · 차입금 559
		- 외부지원금 197 · 천안시 보조금 110 · FIFA U-20 대회양여금 51 · FIFA 포워드 지원금 36	- 외부지원금 308 · 문체부 보조금 111 (미니스타디움 111 ^{주2)}) · 천안시 보조금 110 · FIFA U-20 대회양여금 51 · FIFA 포워드 지원금 36	- 외부지원금 316 · 문체부 보조금 77 (미니스타디움 77) · 천안시 보조금 110 · FIFA U-20 대회양여금 49 · FIFA 포워드 지원금 80	- 외부지원금 366.5 · 문체부 보조금 137 (미니스타디움 77, 숙소동 60) · 천안시 보조금 110 · FIFA U-20 대회양여금 39.5 · FIFA 포워드 지원금 80

주1: 축구협회는 사업비 조달방안 세부 구성 및 규모는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 변동과 항목별 실제 자금 조달 상황 등에 따라 변동하였고,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함

주2: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 문체부 보조금의 경우 2021년도 국회를 통해 최초 111억 원(3년간 30% 정률 지원)이 반영되었다가 최종적으로 77억 원(2년간 정액 지원)이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축구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2022년 1월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2년 12월 총사업비 등록 과정에서 인지하게 됨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48) 축구협회는 그 외에도 2023년 9월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실질 공사비가 산출된 바, 실시설계 이전에 산출된 공사비는 추정치에 불과하여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다고 답변함

②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축구협회 「정관」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축구협회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및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축구협회는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체부의 소관 부서인 체육정책과의 승인⁴⁹⁾을 받은 후 차입 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실행하는 등 「정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한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 제18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공문서⁵⁰⁾를 접수하고 그 접수 및 배부 경로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⁵¹⁾, 같은 규정 제6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인사발령,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 인계 시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하도록 되어 있음⁵²⁾

③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이번 감사 시 축구협회의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 업무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축구협회는 문체부 체육정책과의 승인 없이 [표 15]와 같이 2024. 2. 22. ☆☆과 총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24. 2. 23 차입금 통장⁵³⁾을 개설하였으며, 2024. 2. 29. 775백만 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됨
- 축구협회는 차입 추진과 관련하여 2023. 12. 19. 이사회 의결 및 2024. 1. 31.

49)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회원종목단체의 정관변경 허가, 관리·감독 일반사항 등은 체육정책과장 전결사항임

50)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행정업무규정 제3조 제1호)

51) 행정기관이 부여한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문서도 동일하게 접수·처리하여야 함(행정업무규정 제18조 제6항)

52)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함(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53) (계좌번호) ■■■■■■■■■■ / (예금주)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총회 의결을 거친 후 2024. 2. 16.과 2024. 2. 21. 문체부 체육정책과 업무 담당자에게 차입 승인 요청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2회 발송한 뒤⁵⁴⁾ 문체부로 부터 해당 공문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2024. 2. 22. ☆☆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2024. 2. 23. 차입금 통장을 개설함

- 더욱이 축구협회는 대관(對官)업무 담당자가 2024. 2. 28. 문체부를 방문하여 체육정책과 업무 담당자와 차입 승인을 요청하는 면담을 실시하면서도 대출 계약이 기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면담 결과 체육 정책과 업무 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인 차입계획(공사비 증가 내역 등 차입 필요 사유, 차입 이후 구체적인 상환계획 등)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면담 다음 날인 2024. 2. 29. ☆☆으로부터 775백만 원의 대출금을 실행함⁵⁵⁾

[표 15] 대한축구협회 차입금 업무 처리 경과

일자	주체	내용	비고
2023년 8~10월	전략기획팀	축구종합센터 건립비 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 필요성 내부 검토·보고	(보 고 자) E (보고받은자) D, B, A
2023. 12. 19.	전략기획팀	2023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 차입 추진 안건 보고·원안 의결	
2024. 1. 31.	전략기획팀	2024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차입 추진 안건 보고·원안 의결	
2024. 2. 13.	전략기획팀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승인 요청의 건’ 문서 기안·결재	(문서번호) 전략기획팀-2024-공문-0106 (수 신 처) 문체부 체육정책과 (관 련 자) 기안 U/(검토) E/(전결) D
2024. 2. 16.	전략기획팀	문체부 담당자에게 차입 승인 요청 공문 전자우편 발송 → <u>문체부 담당자 미회신</u>	(발 신 자) 축구협회 U (수 신 자) 문체부 체육정책과 J(당시 기준)
2024. 2. 21.	전략기획팀	문체부 담당자에게 차입 승인 요청 공문 전자우편 재발송 → <u>문체부 담당자 미회신</u>	(발 신 자) 축구협회 U (수 신 자) 문체부 체육정책과 G(당시 기준)

54) 축구협회는 2024. 2. 16.(금) 당시 문체부 체육정책과의 업무 담당 J에게 차입 승인 추진 요청 공문을 포함한 전자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J는 2024. 2. 16.(금) 전일 연가를 실시하였고 2024. 2. 19.(월)자 인사발령으로 부서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전자우편을 미확인함(J는 이번 감사기간 중인 2024. 8. 1. 해당 전자우편의 수신 여부를 최초 인지함). 이에 축구협회는 2024. 2. 20.(화)까지 해당 전자우편의 수신상태가 ‘미확인’이고 J의 사무실 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2024. 2. 21.(수) 당시 업무 담당 G에게 해당 공문을 포함한 전자 우편을 다시 발송함

55) 축구협회는 2024. 2. 29. 실제 대출금을 실행·집행하기 위하여 2024. 2. 26. △△에 공사비 선금 잔여분인 775백만 원을 ☆☆ 차입금으로 2024. 2. 29. 집행 처리한다는 내용의 내부 지급기안(문서번호: 322(천안NFC건립추진단)-20240127)을 완료하고, 2024. 2. 27. 법인 인감 직인을 날인한 차입신청서를 ☆☆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일자	주체	내용	비고
2024. 2. 22.	전략기획팀	☆☆과 '공공시설일반자금대출' 계약 체결	여신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등 관련 서류에 A 서명
2024. 2. 23.	행정지원팀	☆☆ 차입금 통장 개설	
2024. 2. 26.	천안NFC 건립추진단	'축구종합센터 신축공사(△△) 선금금 잔여분(자체-차입금) 지급' 문서 기안·결재	(문서번호) 322(천안NFC건립추진단)-20240127 (문서내용) 공사 선금 잔여분인 775백만 원을 ☆☆ 차입금으로 2024. 2. 29. 집행 처리 (관 련 자) (기안) T(검토)H/(협조)M, D/(전결) B
2024. 2. 27.	천안NFC 건립추진단	☆☆에 법인 인감 직인을 날인한 차입신청서 제출	차입신청서상 신청금액 등 각종 작성항목은 미작성
2024. 2. 28.	전략기획팀	문체부 담당자와 차입 승인 요청 관련 면담 실시 → <u>문체부 담당자 서류 보완 요청</u>	(면 담 자) 축구협회 U, 문체부 체육정책과 F·G(당시 기준) 축구협회는 면담 이후 문체부 담당자의 서류 보완 요청에 대해 미확신
2024. 2. 29.	전략기획팀 행정지원팀	☆☆으로부터 대출금 775백만 원 실행	775백만 원을 차입금 통장으로 송금받아 △△에 공사비 선금으로 전액 당일 지급
2024. 2. 29.(기안) 2024. 3. 4.(결재)	행정지원팀	'축구종합센터 신축공사 관련 ☆☆ 대출(차입금) 금액 수입 인식의 건' 문서 기안·결재	(문서번호) 291(행정지원팀)-20240941 (문서내용) ☆☆ 대출금 775백만 원 수입 조치 (관 련 자) (기안) ■■■/(검토) ■■■, M, D/(전결) B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한편, 문체부 체육정책과는 축구협회가 업무 담당자의 전자우편(공직자통합 메일)으로 2024. 2. 16.과 2024. 2. 21. 2회 발송한 차입 승인 요청 공문을 부서 문서등록대장에 비전자문서로 등록하는 등 접수 조치를 하지 않고,⁵⁶⁾ 2024. 2. 28. 축구협회와 관련 면담을 실시한 업무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은 각각 2024. 3. 11.자 업무분장 조정과 2024. 4. 29.자 인사발령으로 담당하던 업무를 후임 사무관과 주무관에게 인계하면서 축구협회의 차입 승인 요청과 관련된 사항을 누락하는 등 행정업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56) 2024년 8월 감사일 현재 문체부 체육정책과의 축구협회 관련 업무 담당자는 2024. 7. 19. 축구협회가 제출한 국회 요구자료(최근 3년간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축구협회가 보고한 내용 일체/■■■ 의원)에 축구협회가 문체부에 차입 추진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2024. 2. 13.자 공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관련 경위를 파악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당일 해당 공문을 부서 문서등록대장에 비전자문서로 등록하는 등 접수 조치를 함

④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① 축구협회 E 경우

- E는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 업무를 전담하며 ☆☆과의 대출 계약을 진행하고, 유관 부서(행정지원팀, 천안NFC건립추진단)와 업무 협조를 통해 대출금 실행 및 집행 업무를 추진함
- E는 2024. 1. 31. 총회 개최 전 축구협회가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및 총회 의결과 함께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⁵⁷⁾ 그에 따라 2024. 1. 31. 총회 의결 이후 문체부로부터 차입 추진 승인을 받기 위해 전략기획팀의 대관업무 담당자인 U에게 문체부에 차입 추진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 작성·발송 및 문체부 담당자와의 면담 실시 등 업무를 지시함
 - 따라서 E는 문체부로부터 차입 추진 승인을 받은 후 문체부가 승인한 차입 규모 등에 따라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실행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차입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음
- 그런데 E는 문체부가 축구협회의 차입 추진을 승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2024. 2. 22. ☆☆과 총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지원팀으로 하여금 2024. 2. 23 차입금 통장을 개설하고 2024. 2. 29. 775백만 원의 대출금을 실행하여 집행하게 하는 등 차입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
 - E는 문체부 업무 담당자로부터 2024. 2. 16.과 2024. 2. 21.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차입 추진 승인 요청 공문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실제 대출금을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2024. 2. 22. ☆☆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지원팀에 차입금 통장 개설을 요청함
 - 더욱이 E는 2024. 2. 28. 차입 추진 승인 요청과 관련하여 문체부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한 U로부터 당시 문체부 체육정책과 F가 상세 공사비 산출

57)

██
██
██
██

내역, 차입금 상환 계획 등 축구협회의 차입 규모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해당 추가 자료에 대한 회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⁵⁸⁾ 문체부가 차입 추진을 승인하였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⁵⁹⁾ 2024. 2. 29. ☆☆으로부터 775백만 원의 대출금을 실행하고 행정지원팀에 해당 대출금을 △△에 공사비 선금 명목으로 집행하도록 요청함

② 축구협회 D의 경우

○ D는 2023년 5월경부터 2024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전략기획팀, 행정지원팀 등 경영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⁶⁰⁾

- D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 추진과 관련하여 E로부터 차입의 필요성 및 추진 상황 전반을 보고받고, 2024. 2. 13. 문체부에 차입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결권자로서 결재하였으며, 2024. 2. 26. 대출금 775백만 원을 실행하여 △△에 공사비 선금 명목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협조자로서 결재하고, 2024. 3. 4. 대출금 775백만 원을 수입 조치하는 내용의 공문을 검토자로서 결재함

58) [Redacted]

59) [Redacted]

60) D는 1997년 축구협회에 입사하여 주로 대표팀 및 국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3년 3월까지의 사무총장으로서 축구협회 업무 전반을 총괄한 이력이 있음

○ 축구협회가 이미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축구종합센터의 건립비가 부족하여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체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615억 원 규모의 차입을 추진하는 것은 그 긴급성과 중요성이 모두 높은 업무에 해당하며, D는 2024. 2. 13. 문체부로 발송하는 차입 추진 승인 요청 관련 공문을 결재하면서 축구협회가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따라서 D는 기관의 자금 차입 및 집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본부장으로서 문체부의 차입 추진 승인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업무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차입 추진 승인 없이 대출금을 실행·집행하는 등 「정관」에 반하는 업무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하급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를 인지하였을 때는 관련 경위를 파악하여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책임이 있음

○ 그런데 D는 축구협회가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체부의 차입 승인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채 2024. 2. 26. 대출금 775백만 원을 실행하여 2024. 2. 29. 공사비 선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협조자로서 결재하는⁶¹⁾ 등 경영본부장으로서 자금 차입 및 집행 관련 총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더욱이 D는 2024. 2. 29. E로부터 문체부가 축구협회의 차입 추진에 대해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도 E가 문체부의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하급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감독 업무를 태만히 함⁶²⁾

③ 문체부 당시 업무 담당 G의 경우

○ G는 2021. 10. 25.부터 2024. 4. 28.까지 문체부 체육정책과에서 근무하며 축구협회 등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관리·지원 업무를 담당

61) [REDACTED]

62)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G는 2024. 2. 21. 축구협회 측 U가 발송한 차입 추진 승인 요청 공문이 첨부된 전자우편을 2024. 2. 28. 확인하고도⁶³⁾ 2024. 4. 29.자 인사발령으로 부서를 이동할 때까지 해당 공문을 접수하지 않고⁶⁴⁾, 축구협회의 차입 추진 승인 요청에 대해 문체부의 입장을 회신한 바가 없는 등 관련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후임자에게 축구협회의 차입 추진 승인 요청과 관련된 업무 추진 경과 등을 미인계⁶⁵⁾

④ 문체부 당시 업무 담당 F의 경우

- F는 2024. 2. 22.부터 2024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문체부 체육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4. 2. 22.부터 2024. 3. 10.까지 축구협회 등 회원종목 단체 관리·지원 업무를 담당
- F는 2024. 2. 28. 축구협회 측 U와의 면담 실시 등으로 축구협회가 문체부에 차입 추진 승인 요청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지하고도⁶⁶⁾ 2024. 3. 11.자 업무분장 조정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할 때까지 해당 공문을 접수하지 않고⁶⁷⁾, 축구협회의 차입 추진 승인 요청에 대해 문체부의 입장을 회신한 바가 없는 등 관련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후임자에게 축구협회의 차입 추진 승인 요청과 관련된 업무 추진경과 등을 미인계⁶⁸⁾

63) [REDACTED]
[REDACTED]

64)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65) [REDACTED]
[REDACTED]

66) [REDACTED]
[REDACTED]
[REDACTED]

67) [REDACTED]
[REDACTED]

68) [REDACTED]
[REDACTED]
[REDACTED]

5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 (축구협회)

- 차입 관련 문체부 승인을 받기 위한 업무 진행에 있어 축구협회 업무 담당자의 오인(誤認)과 유관 부서(전략기획팀, 천안NFC건립추진단) 간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쉽게 생각함
- 축구협회는 2024. 9. 3.부로 지난 2월 실행하였던 775백만 원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고 ☆☆☆과의 해당 615억 원 한도의 차입 계약을 완제(完濟) 조치하였으며, 추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다만, 2024. 2. 28. 차입 승인 요청 관련 면담 시 문체부가 축구협회의 ‘금년 2월 내 소액(775백만 원) 차입 실행 요청’에 대해 명확한 거부의를 밝히지 않는 등 차입금 승인 신청 과정에서 축구협회와 문체부 간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음
- (검토결과) 2024. 2. 28. 차입 승인 요청 관련 면담에 참석한 축구협회 측 U와 문체부 측 F의 일치되는 진술에 따라 해당 면담 시 F는 관련 내용 파악을 위해 U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을 뿐 어떤 형태로든 축구협회의 차입 승인 여부를 이야기한 바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축구협회와 문체부 간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면담 시 축구협회의 ‘금년 2월 내 소액(775백만 원) 차입 실행 요청’이 논의되었는지 여부도 양측 참석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함⁶⁹⁾

- (E) 문체부 업무 담당자와 차입 승인 관련 면담을 하였던 U로부터 “문체부 측 F에게 2월 안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 축구협회의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F가 “알겠다”라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문체부가 축구협회의 2월 대출 실행을 승인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하였을 뿐, 「정관」의 규정을 고의로 어기거나 문체부의 승인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 의도는 아니었음. 다만, 문체부가 요청한 추가 자료를 천안NFC건립추진단에서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문체부에 직접 2월 대출 실행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는 않았음

69) 축구협회 측 U는 문체부 측 F에게 ☆☆☆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2월 안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축구협회의 상황을 설명하였다고 하나, F는 U로부터 2월 내 대출 실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 등 양측의 진술이 상반됨(상세내용은 각주 59번 참조)

- (D) 문체부의 차입금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2024. 2. 26. 축구종합센터 공사비 선금을 차입금(775백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관련 공문을 협조 결재하였던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며, 2024. 2. 29. E의 보고를 통해 문체부가 차입금을 승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E가 문체부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하기에 「정관」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음
- (G) 축구협회가 2024. 2. 21.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차입금 승인 요청 문서가 부서 문서등록대장에 비전자문서로 등록하여야 하는 등 접수 조치가 필요한 공문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였고, 2024. 4. 29.자 인사발령 당시 함께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관이 전임 사무관(F)으로부터 인계를 받아 축구협회의 차입 추진 승인 요청 관련 사항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외 다른 업무들을 챙기느라 인계사항에서 누락하였음
- (F)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 남짓이었고, 직접 비전자문서 접수 업무를 해보지 않아 비전자 형태의 외부 공문을 부서 문서등록대장에 접수하여야 하는지 몰랐고, 워낙 짧은 기간(2024. 2. 22.~2024. 3. 10.) 동안 축구협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관계로 2024. 3. 11.자 업무분장 조정 당시 업무인계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기도 하였고 함께 업무를 담당하던 주무관(G)이 계속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던 상황이라 축구협회의 차입 추진 승인 요청 관련 사항을 후임자에게 따로 인계하지 않았음

6 조치할 사항

- 축구협회 D와 E가 주무부처장관의 승인 없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실행·집행한 행위는 「정관」 제6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자체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른 징계 대상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정 제50조(징계 심의)에 따라 징계 조치
- 당시 문체부 체육정책과 업무 담당 G와 F가 축구협회에서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차입 승인 요청 공문을 접수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 시 관련 사항을 누락하는 등 행정업무규정 제18조와 제61조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의 조치

☞ **대한축구협회장은** 「정관」 제69조 제2항과 다르게 차입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인사규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문책)**

[관련자]	대한축구협회	D*	정직 이상
	대한축구협회	E	정직 이상

* 1.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2.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5.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조치 요구

☞ **운영지원과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제61조와 다르게 대한축구협회의 차입 승인 요청 관련 업무를 처리한 F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국립한글박물관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제61조와 다르게 대한축구협회의 차입 승인 요청 관련 업무를 처리한 G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 3-1.차입금 업무 처리 부적정, 3-2.보조금 업무 처리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조치 요구

3-2 건립비 보조금 업무 처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 축구협회는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549억 원(공사비 1,303억 원)을 투입하여 [표 16]과 같이 문체부, 천안시 등에서 366.5억 원의 지원금과 자체예산 1,182.5억 원을 들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국고보조금(국민체육진흥기금) 77억 원(2022년 21억 원, 2023년 56억 원)을 지원 받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사업을 추진⁷⁰⁾

[표 16] 축구종합센터 건립 계획

구분	합계	축구종합센터(대한축구협회 공사분)				
		미니 스타디움	인도어 스타디움	숙소동	축구장	기타시설, 토지비 등
연면적	32,937㎡	13,154㎡	10,066㎡	8,541㎡	-	1,176㎡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지하 1층 지상 3층	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1층 지상 4층	-	지상 1층
주용도	축구종합센터	축구장·관람석 선수지원시설	실내 축구장	선수 숙소	잔디구장 5면	잔디관리시설, 장비창고 등
총사업비	1,549억 원	416억 원	193억 원	379억 원	194억 원	367억 원
재원	자체	1,182.5억 원	339억 원	83억 원	319억 원	154.5억 원
	지원	366.5억 원	77억 원	110억 원	60억 원	39.5억 원
			문체부 보조금	천안시 보조금	문체부 보조금	FIFA U-20 잉여금

주: 해당 지원금은 축구종합센터 전체 건립지원을 위한 지원금임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급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70) 문체부 체육정책과(중앙관서의 장)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보조사업을 대한체육회(보조사업자)에 교부하였고, 대한체육회는 이를 대한축구협회(간접보조사업자)에 재교부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의 경우 제재부가금 부가율은 500%임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 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⁷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문체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에 따르면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나,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음

③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① 거짓으로 보조금 신청

- (2021년 7월)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의 지원을 받기 위해 문체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내에 사무실, 회의실 등 사무공간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종목단체의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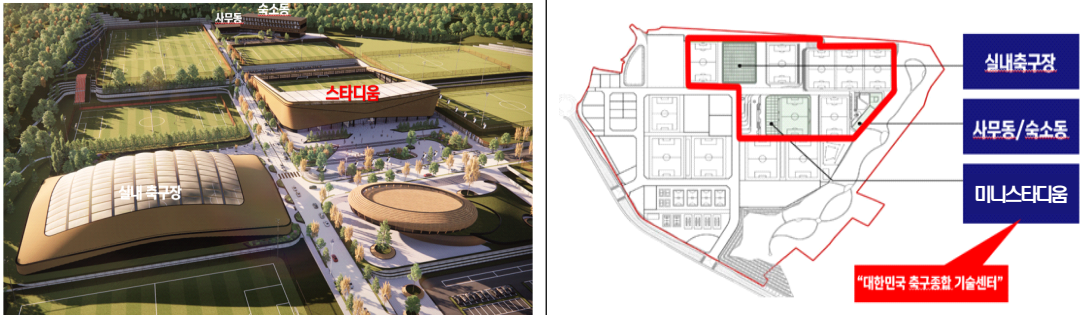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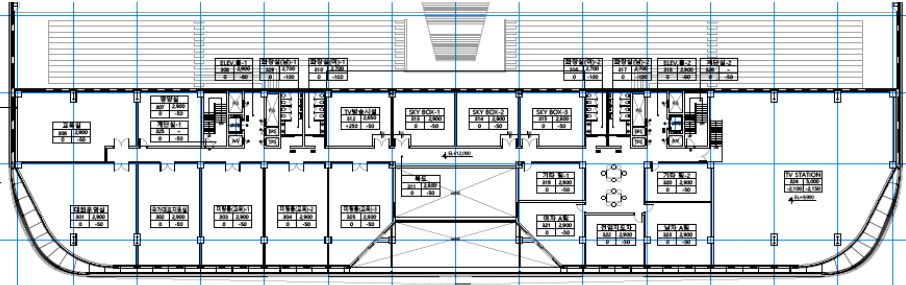
71)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6081)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공간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어 형평성 문제 등으로 미니스타디움에는 축구협회의 사무공간을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⁷²⁾

○ (2022년 5월)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예산이 국회를 통해 반영된 후 축구협회는 예산집행을 위한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도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으로 협의⁷³⁾

○ (2022년 12월) 축구협회는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문체부 및 기재부와 협의한 내용대로 미니스타디움에는 지도자 및 축구선수를 위한 용도의 공간만을 배치하고, 사무공간은 미니스타디움이 아닌 축구종합센터 내 별도 시설(사무동)에 조성하는 것으로 [표 17]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22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보조금을 신청

[표 17] '2022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명	2022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기간	2022년 12월 ~ 2023년 3월	
사업규모	부지 면적 5,635㎡ / 건축연면적 8,764㎡	
시설용도	영상분석, 스포츠 의료(재활, 예방), 퍼포먼스센터, 교육공간(강당, 미팅), 디지털 스포츠 체험 공간 등	
총사업비	370억 원(공사비 351, 부대비 19)	
소요예산	2,100백만원(사업단계에 따른 공사비)	
시설규모	미니스타디움(축구종합기술센터, 경기장), 실내축구장(실내 돐구장), 숙소동-사무동(숙소 및 사무동)	
배치도		
미니스타디움 3층 평면도	공간프로그램 : TV STATION, 교육실 등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72) 대한축구협회와 문체부 간 축구종합센터 건립지원 협의 미팅(2021. 7. 27.)에 참여했던 축구협회 H(문답)과 J(확인서)는 축구협회 사무공간 배치는 안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고 일치된 내용으로 답변

73) 축구협회 천안NFC건립추진단 T 매니저 및 H의 확인서 내용

- (2023년 3월) 축구협회는 미니스타디움에는 사무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보조사업 교부신청 내용과는 다르게, 축구종합센터 사무동을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삭제하고 사무동에 계획했던 사무공간을 미니스타디움에 배치하기로 축구협회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⁷⁴⁾
- (2023년 9월) 축구협회는 설계를 진행하여 미니스타디움 3층에 축구협회 회장실, 사무총장실, 임원실, 사무실 등 사무공간(1,409.96㎡)⁷⁵⁾을 배치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⁷⁶⁾ 승인받음
- (2023년 12월) 축구협회는 미니스타디움에 축구협회의 사무공간을 배치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2023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배치내용을 누락하여 [표 18]과 같이 연면적, 용도 등은 건축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고 사무동 유무와 미니스타디움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규모 및 도면은 작성하지 않는 등 실제 추진하는 사업계획과 다른 거짓⁷⁷⁾ 내용으로 보조금 56억 원을 신청⁷⁸⁾, 보조사업자(대한체육회)는 교부신청 내용대로 승인하고 보조금 교부⁷⁹⁾

[표 18] '2023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보조금 신청 내용

구분	실제 공사추진 내용(건축허가서)	보조금 신청 내용(사업계획서)
사업기간	-	2023년 10월 ~ 2024년 4월
사업규모	건축연면적 15,668.3㎡	부지 면적 5,635㎡ / 건축연면적 8,764㎡
시설용도	경기운영실, 선수관리실, 샤워 및 락커룸, 회장실, 임원실 등 사무실(1,409.96㎡) ⁷⁵⁾	영상분석, 스포츠 의료(재활, 예방), 퍼포먼스센터, 교육공간(강당, 미팅), 디지털 스포츠 체험 공간 등
총사업비	-	416억 원(공사비 397, 부대비 19)
축구종합센터 시설규모	아웃도어스타디움, 인도어스타디움, 선수숙소, 지원 시설, 장비창고, 지하저수조	미작성

74) 축구협회 H는 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축구협회 임원회의(2023. 3. 7.)에서 사무공간을 미니스타디움으로 이전하는 것을 직접 보고하였고, 임원들간 논의 끝에 회장이 최종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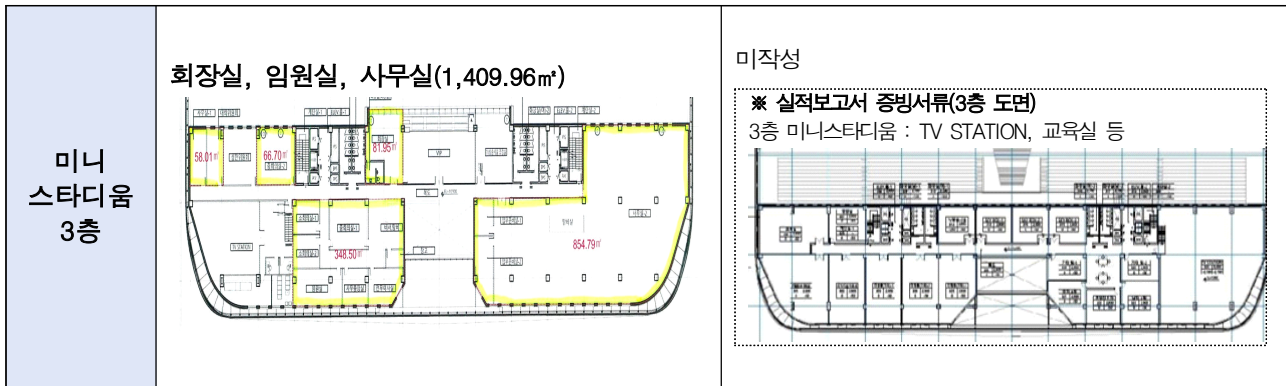
75) 축구협회는 천안시와 축구종합센터 준공(2024년 5월 예정) 후 6개월 이내 주사무소를 축구종합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협약(2019년 8월)하였고, 축구종합센터 건립공사 내용에는 센터 내 사무소 공간은 미니스타디움이 유일하고, 서울시 소재 축구협회 사무공간(전용면적 1,352㎡)의 규모와 조성되는 사무공간의 크기가 유사한 것을 보았을 때 미니스타디움 사무공간은 축구협회 전용 사무공간으로 볼 수 있음

76) 건축허가서(2023. 9. 4.)에 따르면 천안 미니스타디움은 연면적 15,668.3㎡로 당초 사업계획 연면적(8,764㎡)보다 6,904.3㎡(미니스타디움 3층에 축구협회 사무공간 1,409.96㎡ 포함) 증가됨

77) 천안 미니스타디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H는 사무공간 변경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2022년도 보조금 교부신청 내용을 참고하여 실제 사업내용과는 다르게 2023년도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다고 진술

78) 대한축구협회 천안NFC건립추진단-2023-공문-0393(2023.12.19.) 2023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계획 제출의 건

79)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6326(2023.12.20.) 2023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계획 승인 및 교부 알림



주: 건축허가서 내용 중 미니스타디움 용도 발췌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2024년 6월) 축구협회는 교부받은 보조금 집행 후 보조사업 정산을 위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미니스타디움 3층에 축구협회 사무공간이 포함된 건축 허가 받은 도면이 아닌⁸⁰⁾, 사무공간 표기가 없는 허위 도면을 정산서류로 제출⁸¹⁾
- 그 결과, 축구협회는 미니스타디움 건립사업의 실제 추진계획과는 다르게 사업계획서를 작성, 거짓으로 신청하여 보조금 56억 원을 부적정하게 수령 하였고, 보조금 집행 완료 후 정산서류도 실제 공사내용과 다른 허위로 도면을 제출하는 등 '2023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
 - 축구협회가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 후 변경 내용을 숨기고 거짓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하고, 보조금 정산 시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른 도면을 제출하는 등 사실과 다른 정산서류를 제출한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판단

80) 축구협회는 건축허가 받은 내용에서 일부(도로선형 및 숙소동 변경)만을 변경하여 실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니스타디움은 건축허가 받은 내용에서 변동 없음

81) 대한축구협회 천안NFC건립추진단-2024-공문-0420(2024.6.20.) 2023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② 선금 지급 등 집행에 대한 부실 관리

-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내 시설인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2022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공사비 지원 내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표 19]와 같이 미니스타디움 공사의 관급자재⁸²⁾ 구매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여 선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 21억 원을 집행

[표 19] ‘2022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

계약내용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금 (천 원)	납품 기한	지급액 (천 원)	지급일	보증보험 기한
전광판 구매	■■■■■	2023.3.6.	500,000	‘25.6.30.	350,000	2023.3.10.	2025.6.30.
조명등 구매	■■■■■	2023.3.6.	815,200	‘24.8.31.	815,200 ^{주)}	2023.3.10.	2027.3.21.
지붕막구조 구매	■■■■■	2023.3.24.	2,176,900	‘25.5.31.	934,800	2023.3.31.	2025.5.31.
합계			3,492,100		2,100,000		

주: 축구협회는 조달청을 통해 구매계약한 조명등 대금 일체(815,200천 원)를 조달청에 지급하였고, 조달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567,880천 원)을 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준비 되었으나 납품되지 못해 잔금(247,320천 원) 미지급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축구협회는 미니스타디움 공사를 위한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실시 설계도 완료되지 않아 공사가 언제 착공될 지 모르는 시점에 건축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설치 및 작업이 가능한 관급자재(전광판, 조명등 및 지붕막 구조)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보조금을 관급자재의 선금으로 집행
- 하지만, 관급자재(전광판, 조명등 및 지붕막 구조) 구매계약의 선금 등을 지급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감사일(2024년 9월)까지도 전광판과 지붕막 구조는 골조공사가 완료(2024년 11월)된 이후 설치 및 작업이 가능해 어떠한 공사도 이뤄지지 않았고,⁸³⁾ 조명등은 제작을 완료하고도 설치할 수 없어 납품대기 상태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⁸⁴⁾되고 있어, 골조공사의 계획이 변경될 경우 제작해 놓은 조명등을 모두 사용하지 못할 우려도 있음

8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인 관급 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고 있음

83) 축구협회 T 및 H의 확인서 내용

84) 조명등 제작업체(■■■■■)로부터 확인한 조명등 보관 현황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축구협회는 보조금으로 계약 체결한 관급자재(전광판, 조명탑, 지붕막구조) 구매계약의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사 진행에 맞추어 관급자재의 공급시기를 검토하여 연도 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했어야 함
- 하지만, 축구협회는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미니스타디움 건립공사의 관급자재 구매계약의 선금을 보조금(21억 원)으로 지급하면서, 공급시기를 알 수 없어 필요하지도 않은 관급자재를 연도 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고 선금⁸⁵⁾을 지급하여, 적정한 공사일정⁸⁶⁾에 집행되었다면 국고에 환수되었을 보조금(21억 원)의 이자수익(약 1.8억 원, 연이율 5%)⁸⁷⁾이 국고에 환수되지 못하고 낭비
- 축구협회는 보조금을 선금으로 집행하면서 문체부 체육정책과(주관부서의 장)와 협의⁸⁸⁾한 후 계약을 추진하고 보조사업의 정산을 신청하였고, 문체부 체육정책과에서는 축구협회가 제출한 정산자료 및 실적을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점검 후 완료 처리⁸⁹⁾
-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 I는 ‘2022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교부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의 시공 및 구매계약 시 따라야 하는 선금지급 관련 규정을 위반⁹⁰⁾하여 공사계약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계약관련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H는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적절한 시기에 불필요한 선금이 지급⁹¹⁾되는 등 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국고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85) 전광판 및 지붕막구조는 계약금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였고, 조명등 구매는 조달청에 계약금액 전체(815,200천 원)를 지급하였으나 조달청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선금(567,880천 원)만 지급함

86) 축구협회 T 및 H는 3건의 관급자재 구매계약은 미니스타디움 골조공사 완료(2024년 11월) 이후 계약이 추진되어도 문제는 없다고 답변(확인서)

87)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시설자금 기준 대출평균금리(2023년 3월)는 5.07%로 보조금 21억 원에 대한 20개월(2023년 4월~2024년 11월)의 이자는 약 177백만 원임

88) 축구협회 H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 문체부 J에게 문의 후에 계약을 진행했다고 답변(문답서)

89)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4조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 점검의 의무가 있음

90) 축구협회 I는 3건의 관급자재 구매를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보조금이 아니었다면 관급자재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문답서)

91) 축구협회 H는 3건의 관급자재 구매를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은 담당자가 보고한 내용만으로 확인하였고, 보조금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관급자재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문답서)

- 또한,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관리감독 및 집행 점검의 의무가 있는 문체부 체육정책과는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처리함에 있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선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정산처리 했어야 하는데, 관련 사업을 담당했던 체육정책과 G와 J는 축구협회가 선금지급 내역만으로 선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사업 정산서류를 부실하게 확인하는 등 보조금 관리감독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여 '2022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보조금 21억 원에 대해 정산이 부적정하게 완료 처리되어 국고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음

4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 결과

-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배치의 효율성을 위해 미니스타디움 외부에 설계되었던 사무공간을 미니스타디움으로 조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으로 어느 곳에 사무공간을 배치하는지 여부는 검토가 진행 중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난 후 2023년 보조금을 신청·정산하는 시점까지 미니스타디움은 건축허가 받은 내용대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보조금 교부신청은 당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건축허가서)을 바탕으로 교부신청 함이 타당한데도 이와는 다른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거짓 신청에 해당
- 축구협회는 '2022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보조금을 선금으로 집행하면서 이미 사업계획이 연장되어 거듭 연장하지 않고 문체부가 승인한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문체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은 사업단계에 따른 공사비 목적으로 보조금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보조금을 집행하라는 내용과는 무관

5 조치할 사항

- 축구협회가 국고보조금을 교부신청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짓으로 신청하고, 보조금 집행관리를 소홀히 하여 국고가 낭비되는 등의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 축구협회가 국고보조금을 교부신청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짓으로 신청한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교부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 통보
- 축구협회 H가 국고보조금을 교부신청 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짓으로 신청하고,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선금으로 지급하여 국고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자체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른 징계 대상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정 제50조(징계 심의)에 따라 징계 조치
- 축구협회 I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선금으로 지급하여 국고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행위는 자체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른 징계 대상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정 제50조(징계 심의)에 따라 징계 조치
- 축구협회 '2022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처리함에 있어 보조금에 해당하는 선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정산처리 했어야 하는데, 이를 부실하게 확인하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당시 문체부 체육정책과 업무 담당 G와 J에 대해 주의 조치

대한축구협회장은

- ① 국고보조금을 교부신청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짓으로 신청하고, 보조금 집행관리를 소홀히 하여 국고가 낭비되는 등의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② 국고보조금을 교부신청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짓으로 신청하고, 보조금의 집행관리를 소홀히 하여 국고가 낭비

되는 결과를 초래한 H를 「인사규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징계처분(정직 이상)하시기 바랍니다. **(문책)**

③국고보조금 집행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선금 지급하여 국고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I를 「인사규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징계처분(감봉 이상)하시기 바랍니다. **(문책)**

☞ **운영지원과장**은 국고보조금을 집행·관리함에 있어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J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국립한글박물관장**은 국고보조금을 집행·관리함에 있어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G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 3-1.차입금 업무 처리 부적정, 3-2.보조금 업무 처리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조치 요구

☞ **체육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신청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짓으로 신청한 축구협회의 '2023년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보조사업(보조금 56억 원)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업무 개요

-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 추가 확보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하여 [표 20]과 같이 ‘축구종합센터 건립기금 펀딩 캠페인’(이하 “펀딩 캠페인”) 추진을 임원회의에 보고(2023. 2. 21.)하고, 내부결재를 시행(2023. 3. 6.)⁹²⁾

[표 20] 축구협회 펀딩 캠페인 시행 계획

구분	세부 내용
사업기간	○ 2023년 6월 ~ 2025년 4분기
목 표	○ 누적 총액 100억 원 모금(2023년 20억 원, 2024년 60억 원, 2025년 20억 원)
펀딩 카테고리	○ (모금) 대상군 별 차별화된 모금 프로그램 운영 ○ (이벤트) 이벤트 운영·모객을 통한 모금 및 수익금 확보 ○ (경매 & 판매) KFA 보유 유무형 자산 및 기증품 경매·판매를 통한 수익금 확보
운영방향	○ (기획) 펀딩 캠페인 당위성 및 명분 수립, 펀딩 카테고리 및 아이템 설정 ○ (홍보) 펀딩 캠페인 홍보 전략 수립 및 브랜딩, 펀딩 캠페인 홍보 ○ (운영) 펀딩 아이템 별 세부 전략수립(그룹별 전략(거액/소액), 채널별 전략(온라인/오프라인)), 펀딩 프로그램 운영(온/오프라인 병행)
운영방식	○ 펀딩 성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 전문 대행사 용역 발주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축구협회는 2023년 6월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등 기부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23년 3월 비리 축구인 100명 기습 사면 및 철회 등의 사유로 축구협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어 당초 계획과 달리 기부가 아닌 경매·판매 위주로 사업을 추진
- 이후 축구협회는 2023년 12월경 온라인 기부 플랫폼 구축을 재추진, 2024년 2월부터 시스템을 개시하여 온라인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거나⁹³⁾ 각종 오프라인 기부 행사도 추진하는 등 당초 계획하였던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구협회가 2024년 2월부터 2024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축구종합센터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모집한 기부금 내역은 [표 21]과 같음

92) 축구종합센터 건립기금 펀딩 캠페인 사업 시행 보고(문서번호: 322(천안NFC건립추진단)-20230036)

93) 온라인 기부 시스템을 통해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이 가능하고, 해당 시스템 웹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축구협회의 축구종합센터 기부금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도 기부를 할 수 있음

[표 21] 축구종합센터 건립기금 마련 기부금 모집 내역(2024년 2월~2024년 8월)

기부자 구분	모집금액
내부 (축구협회 임직원, 회원단체 등)	41,385,570원
외부 ^{주)} (축구팬 등 일반인)	7,150,000원
계	78,535,570

주: 성명 등으로 기부자의 소속을 알 수 없는 경우, 오프라인 기부 행사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는 모두 외부로 간주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②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⁹⁴⁾를 작성하여 모집 등록청⁹⁵⁾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 같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물품 등을 ‘기부금품’이라고 하고, 서신·광고·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기부금품의 모집’이라고 함

③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이번 감사 시 축구협회의 펀딩 캠페인 업무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축구협회는 100억 원을 모집목표액으로 하여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온·오프라인 기부금품 모집을 포함한 펀딩 캠페인을 추진하면서도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 작성·등록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 축구협회는 2024년 2월부터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운영하고, 각종 축구경기⁹⁶⁾ 등 진행 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기부 행사를 진행하는 등

94) 모집·사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모집 기간은 1년 이내)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한 하나 또는 복수의 전용계좌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소재지 등임(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 각호)

95) 모집금액인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한 출연인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외의 경우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모집 등록청이 됨

96) 2026 FIFA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전(2024. 3. 21.), 2024 랫츠플레이 레이디스 축구 페스티벌(2024. 3. 30.~3. 31.)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집 행위를 하면서도 업무 담당자들의 관련 법령 미인지 등을 사유로 기부금품법을 준수하지 않은채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음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업무 담당자들의 관련 법령 미인지 등을 사유로 기부금품법상 모집 등록 절차를 누락하였다고 하면서도 내부결재를 시행한 펀딩 캠페인 시행 계획에 포함된 목표금액 100억 원은 기관 내부적으로만 보고된 자체 목표치로서 외부에 공표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목표금액을 기부금품법에서 정하는 모집목표액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검토결과) 기부금품법에서는 기부금품 모집목표액의 외부 공표 여부에 따른 모집등록 예외 가능 규정이 없는 바 축구협회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⁹⁷⁾

5 조치할 사항

- 축구협회가 펀딩 캠페인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모집 등록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대한축구협회장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를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97) 기부금품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업무담당자에게 기부금품 모집목표액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경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의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기부금품 모집목표액의 외부 공표 여부와 상관없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음(2024. 11. 4.)

① 사건 개요

- 축구협회는 2023. 3. 28. 17:30~18:00,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회의실⁹⁸⁾에서 2023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표 22]와 같이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는 내용의 징계 사면 건의 안건을 의결⁹⁹⁾하고, 국가대표팀 경기¹⁰⁰⁾ 시작 약 1시간 전인 19시경 ‘대한축구협회, 축구인 100명 사면 단행’ 보도자료를 배포¹⁰¹⁾

[표 22] 징계 사면 건의 이사회 안건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 FIFA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 및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기념
 - 축구협회 창립 90주년
 - 축구계 대통합을 위한 사면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현장 의견 반영
 - 대한체육회 규정 변화¹⁰²⁾
 - ☞ 금품수수, 입학 비리, 폭력, 승부조작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 감경, 사면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
- 추진 경과
 - 2023. 2. 7. : 사면 검토 실무위원회 구성
 - 2023. 2. 9. : 프로축구연맹 미팅 등 의견 청취
 - 2023. 3. 13. : 사면 검토 실무위원회 회의
 - 2023. 3. 20. : 공정위원회 의견 청취
 - 2023. 3. 27. : 사면 심사위원회 대상자 확정
- 사면 범위 : 총 100명, 성폭력·성추행 등 성 관련 징계자, 자격정지 기간 2분의 1 미도과자 등은 제외
- 사면의 효과
 - 제명 및 무기한 자격정지 대상자→ 유기한 자격정지로 감경 처리
 - 유기한 자격정지 대상자→ 자격정지 기간 감경 처리
 - ☞ 이상 징계시스템상 종료 처리, 기존 징계명은 유지 및 징계확인서상 표출
- 관련 규정 :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사면) 사면권의 발의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사면의 종류, 대상 등은 사면법상의 징계 사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2023년 제2차 이사회 안건자료) 재구성

98) 통상 이사회는 축구협회 내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2023년 제2차 이사회의 경우에는 2023. 3. 28. 20시부터 열리는 국가대표팀 경기 참관을 위해 당일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회의실에서 17시 30분부터 이사회를 개최함

99) 재적이사 27명 중 25명이 참석하였는데, 징계 사면 의결안에 대하여 별도의 찬성/반대 표결 없이 이사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받은 후 다른 의견이 없다는 사유로 원안대로 의결함

100) 대한민국 vs 우루과이 국가대표팀과 친선경기

101)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날인 2023. 3. 28. 19시 16분경 ‘사면 단행’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당일 18시 54분경 축구협회가 발표한 우루과이전 선수 선발 명단 발표 직후이자 20시에 예정된 경기 시작 약 1시간 전에 승부조작 등 비리 축구인 100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여 ‘기습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음

102) 축구협회는 2023년 제2차 이사회 ‘징계 사면 건의’ 안건자료에는 사면 추진 배경의 하나로 ‘대한체육회 규정 변화’를 기재하였다가, 2023년 제3차 이사회 ‘징계 사면 건의 재심의’ 안건자료에서는 ‘대한체육회 규정 변화’를 사면 추진의 배경으로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 규정 변화가 승부조작 등 행위에 대해 징계 감경, 사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사면 추진 배경에서 삭제한 것으로 판단됨

- 사면 대상자들은 [표 23]과 같이 총 100명(97명, 3팀)으로, 승부조작·금품수수·폭력 등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직원 등이었고, 이 중에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표 23] 징계 사면 대상자 현황

구분	징계 종류	직책	성명
승부조작 (52명)	제명	선수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영구 자격정지	임직원	[REDACTED]
		지도자	[REDACTED]
		심판	[REDACTED]
금품수수, 금전비리 (20명)	제명	지도자	[REDACTED]
		심판	[REDACTED]
		임직원	[REDACTED]
	영구 자격정지	심판	[REDACTED]
		임직원	[REDACTED]
	자격정지	지도자	[REDACTED]
폭력 (14명)	제명	선수	[REDACTED]
		지도자	[REDACTED]
	자격정지	선수	[REDACTED]
	출전정지	선수	[REDACTED]
입시비리 (4명)	제명	지도자	[REDACTED]
		심판	[REDACTED]
부정선수 출전 등 기타 규정 위반 (10명)	자격정지	선수	[REDACTED]
		지도자	[REDACTED]
		임직원	[REDACTED]
	출전정지	팀	[REDACTED]
총 100명			

주1: 2009년 K3리그 승부조작 사건 관련자

주2: 이상 48명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관련자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축구협회는 승부조작¹⁰³⁾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비리 축구인 100명을 기습적으로 사면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징계 사면 발표 후 3일 만인 2023. 3. 31. 16:00~16:45, 축구협회 내 회의실에서 2023년 제3차 긴급 이사회를 열고,

10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스포츠비리”란 운영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 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및 제14조의4(출전 금지 등)에 따르면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 또한 같은 법 제48조(벌칙)에 따르면 제14조의3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표 24]와 같이 징계 사면 의결 건을 재심의하여 징계 사면 의결을 철회하였으며, A는 이사회 종료 후 이에 대한 사과와 입장문¹⁰⁴⁾을 발표

- 또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징계 사면 사태에 책임을 지고 2023. 4. 4. 축구협회 부회장과 이사진 전원이 사퇴하고,¹⁰⁵⁾ 2023. 5. 3. 새 이사진을 구성¹⁰⁶⁾

[표 24] 징계 사면 의결 재심의 안건 주요 내용

• 징계 사면 추진 경과 - 2023. 2. 7. : 사면 검토 실무위원회 구성 - 2023. 2. 9. : 프로축구연맹 미팅 등 의견 청취 - 2023. 3. 13. : 사면 검토 실무위원회 회의 - 2023. 3. 20. : 공정위원회 의견 청취 - 2023. 3. 27. : 사면 심사위원회 대상자 확정 - 2023. 3. 28. : 징계 사면 건의안 이사회 의결 • 사면 재논의 배경 - 대한체육회 규정과 축구협회 규정 사이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 및 사면에 대한 반대 의견 전달 - 대한체육회 규정에서 사면 관련 규정이 삭제된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 문체부의 반대 의견^{주)} -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 및 우려의 제기 - ‘사면’이라는 특성상 협회 외부와의 사전 교감 형성의 어려움
--

주: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의 지적이나 반대 의견을 문서화 된 형태로 전달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됨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2022. 12. 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징계의 감경)에 따르면 확정된 징계와 관련, 표창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경하거나 사면, 복권할 수 있으나,

104) 입장문 주요 내용

...(생략)...카타르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승부조작 가담자를 비롯한 징계대상자들이 지난날 저질렀던 과오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한국 축구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한국 축구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소임이라고 여겼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사려 깊지 못했음. 승부조작 사건으로 인해 축구인과 팬들이 받았던 그 엄청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음. 한층 엄격해진 도덕 기준과 함께, 공명정대한 그라운드를 바라는 팬들의 높아진 눈높이도 감안하지 못했음.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무겁게 받아들임...(중략)...축구팬, 국민 여러분에게 이번 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105) 축구협회 보도자료(2023. 4. 4.) 주요 내용

축구협회 부회장단과 이사진 전원이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 AE 축구협회 전무이사는 “협회 실무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전무로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했음...(중략)...이번 징계 사면 사태에 대해 부회장단과 이사진 모두 큰 책임을 느끼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재확인했으며 전원이 사퇴에 동의했다”고 밝힘. 축구협회는 이사진 구성원들의 일괄 사퇴가 결정됐지만, 행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예정

- 106) 총 25명의 새 집행부(부회장 7명, 분과위원장 7명, 이사 11명)가 구성되었고, 이중 7명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유임함

- 다만, 금품수수·횡령·배임, 입학비리, 폭력·성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 대한체육회는 2022. 12. 26.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2조를 [별표 3]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2022. 12. 26. 개정)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개정하면서 징계 사면 및 복권의 근거를 삭제하고,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으로 한정)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징계 대상, 기준,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당시 혐의가 징계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를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또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3조(규정 제·개정)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등은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하고, 대한체육회의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등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음
- 한편,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2023. 12. 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징계의 감경, 해제)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 집행 중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집행 중인 징계를 감경하거나 잔여 집행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명의 경우 징계효력발생일로부터 7년,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무기한 출전 정지의 경우에는 징계효력발생시행일로부터 5년, 유기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각각 경과해야 징계의 감경 또는 해제를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징계의 감경 또는 해제는 대상에 따라 해당 징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에 건의하고,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같은 규정 제24조(사면)에 따르면 사면권의 발의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사면의 종류, 대상 등은 사면법상의 징계 사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회원으로 가입된 회원종목단체로서, 2022. 12. 26. 개정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게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징계 사면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야 했고, 규정에 맞게 개

정하지 아니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사면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었음

- 또한 A은 사면권은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를 재고할 어떠한 사정변경 요인이 없는데도 징계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회장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자체 사면권의 행사가 상위 규정 등에 위배 되지는 않는지, 그 절차와 방법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했으며,
- 징계 사면 담당자인 K는 축구협회 사내 변호사인 만큼, 상위 규정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위 규정에 위배 되는 자체 사면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했음

③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A는 2022년 말~2023년 초경(일자 미상),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징계자들을 포함한 징계자들에 대해 징계 사면을 추진하기로 하고, 축구협회 전무이사 AE107) 등에게 징계 사면 진행을 지시¹⁰⁸⁾¹⁰⁹⁾
- 이에 대해 A는 2013년경부터 2011년 승부조작 징계자들에 대한 징계 감경 요청이 있어 왔는데,¹¹⁰⁾ 2011년 승부조작 연루자들 중에는 1회성이나 소극적인 참가자도 있어 이들 모두 일률적으로 평생 축구 활동을 일체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던 중,
- 2022년 12월경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이후 다시 사면에 대한 건의가 있다는 의견을 전해 듣고,¹¹¹⁾ 적극적 주동자를 제외한 이들에 대한 사면을 고려하였다고 진술

107) 2021. 2. 3. ~ 2023. 4. 7. 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재임하였고, 축구협회 기습 사면 및 철회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임함

108) (A 진술) 언제 사면 추진을 결심하게 되었고, 누구에게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사면 추진을 지시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음

109) 축구협회 징계 사면 업무 담당자인 K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사면을 최초로 검토한 시점은 명확하지 않고, 카타르 월드컵 이후인 것만 기억하며, AE 전무이사와 M 행정지원팀장이 “회장님의 뜻도 있고 축구인 건의도 있으니 진행하자.”라고 말했다고 진술함

110) (A 진술) 2013년 프로축구연맹에서 2011년 승부조작 징계자 20명 이상에 대해 징계 감경 결정 후 축구협회에 추인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축구협회는 이를 거절한 바 있음. 그즈음부터 프로축구연맹이나 선수 본인 또는 주변 관계자들의 징계 감경 요청은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음

111) (A 진술)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인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징계 감경을 건의하거나 요청한 기억은 없음

○ 그런데 A는 자신의 고유권한인 징계 사면 추진을 지시하면서도, 사면 대상이나 규모, 선정기준, 적극적 주동자 등의 제외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주거나 지시한 바 없으며,¹¹²⁾

- 구체적인 사면 기준 및 규모, 최종 사면 대상자 명단 등에 대해서는 사면심사위원회(2023. 3. 27.) 결정 후 제2차 이사회(2023. 3. 28.) 전에 그 결정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하는 등 사면 추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리·감독 행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 한편, 대한체육회는 2022. 12. 26. 제16차 이사회를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표 25]와 같이 공정위원회의 징계 구제의 종류 중 ‘사면과 복권’을 삭제¹¹³⁾하고 확정된 징계에 대한 구제 심의요건을 정비

[표 25]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2022. 12. 26.) 주요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구제 종류	감경, 사면, 복권 ^{주1)}	감경, 해지 ^{주2)} , 취소
구제 심의요건	①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3)} ②포상 공적(훈·포장, 장관 이상 표창, 체육회장 표창) <신설>	①법원의 무죄 판결,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 죄가안됨으로 한정)이 확정된 경우 ②삭제(1차 징계 심사 시 감경요소로 변경) ③징계 대상, 기준,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당시 혐의가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주1: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함(변경 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2조 제7항)

주2: 통상적으로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며, 해제는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

주3: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를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감경,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음(변경 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2조 제3항)

자료: 대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 이후 대한체육회는 2023. 1. 2, 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2022. 12. 26. 개정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게 축구협회의 공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안내¹¹⁴⁾하였으나, 축구협회는 당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¹¹⁵⁾

112) (A 진술) (문) 사면 대상자 선정 기준(성 비위자 제외 등) 및 규모(몇 명)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의견을 준 적이 있는지 (답) 그러한 지시를 한 기억이 없음

113) (삭제 사유) 구제권을 행사하는 체육회장의 법적 지위 등을 감안(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조문별 개정 사유)

114) (1차 공문 안내)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20(2023. 1. 2.)호,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2022. 12. 26.) 안내”

○ A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구성원(부회장)으로서, 2022. 12. 26. 대한체육회 제16차 이사회¹¹⁶⁾ 안건으로 상정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개정 취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른바 ‘4대 악¹¹⁷⁾ 사면 금지’ 관련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내용은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¹¹⁸⁾

- 따라서 A는 대한체육회의 부회장으로서 대한체육회의 이른바 ‘4대 악 사면 금지 관련 규정 폐지’의 내용이 사면권을 폐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4대 악 비위에 대해서도 사면이 허용되는 것인지 등 중요사항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확인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했고, 대한체육회 규정에서 사면권이 폐지되었다면 이에 따라 회장도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었음
- 더욱이 A은 감사 과정에서도 여전히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소홀이나 당시 관련 규정상 사면 추진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¹¹⁹⁾ 대한체육회나 다른 종목단체의 사례를 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¹²⁰⁾

1. 관련: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3조(규정 제·개정) ①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체육회의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이하 생략)
2.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제16차 이사회(2022. 12. 26.) 의결을 통해 불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귀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하 생략)

(2차 공문 안내)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592(2023. 3. 10.)호, “징계 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중 개정 재안내

1. ~ 2. (생략)
3. 아울러, 우리 실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3조에 의거하여, 수차례 우리 회 규정 개정을 안내하고, 귀 협회의 공정위원회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하지만 귀 협회의 공정위원회는 2020. 9. 22. 이후(2020년 9월 이후 2023년 현재까지 우리 회 관련 규정 5차례 개정) 해당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협회의 규정과 체육회의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체육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징계 심의·의결의 건이 확인되고 있으니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 개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115) 축구협회는 기습 사면 및 철회 사건 이후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2023. 7. 25.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게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회장의 사면권을 삭제함
- 116) A는 대한체육회 제16차 이사회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음. 통상 대한체육회에서는 이사회 안건자료를 A의 비서와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에 이메일로 송부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A는 축구협회 담당 팀장으로부터 이사회 안건 관련 내용을 보고 받는 것으로 확인됨
- 117) ①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②체육관련 입학 비리, ③폭력·성폭력, ④승부조작, 편파판정
- 118) (A 진술) 이른바 ‘4대악 사면 금지’ 관련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내용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들은 것으로 기억하나,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 대해서까지 별도로 인지하지 못하였음
- 119) (A 진술) (문) 관련 규정상 사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귀하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귀하가 사면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답) 규정상 완전히 불가능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려움. 다른 종목단체들은 우리 협회와 달리 기존의 징계 사면이나 감경 결정들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음

- 축구협회 행정지원팀 소속 사내 변호사인 K는 징계 사면 업무를 담당하면서,
-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게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2022. 12. 26. 개정된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 사면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2023년 당시까지는 축구협회 자체 규정을 우선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였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2조 제5항¹²¹⁾이 삭제되어 승부조작 징계자들에 대해 사면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로,¹²²⁾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사면을 진행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 그런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2022. 12. 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이 삭제된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 2022. 12. 26. 규정 개정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자가 포상 공적이 있는 경우, 제32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승부조작 등의 중대 비위가 아니면 공정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감경, 사면, 복권 등이 가능했으나,
 - 규정 개정 이후에는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개정 전 규정 제32조 제5항 각호에 따른 비위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확정된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 사면, 복권 등이 금지되기 때문임
- 그런데도 K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2조 제5항이 삭제된 사유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¹²³⁾ 동 조항 삭제의 의미가 승부조작 등 중대 비위 징계자도 사면이 가능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징계 사면 업무를 진행¹²⁴⁾

120) (A 진술) 대한체육회 규정 변경 이후 다른 종목단체들도 계속해서 사면이나 징계 감경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징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대한체육회 차원의 별도 공지도 없었으며, 대한체육회의 공정체육실 담당자 역시 협회 담당자의 문의 시에 사면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음

12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체육관련 입학 비리, 폭력·성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는 조항임

122) (K 진술) (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2조 제5항이 삭제되었음을 근거로 징계 사면을 진행한 것인지? (답) 승부조작 징계자에 대한 사면을 진행하는 것에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했을 뿐,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진행한 것임. 당시까지는 축구협회 규정을 우선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진행하지 않았음. 대한체육회 규정보다는 FIFA와 AFC 규정을 먼저 준수해야 하는 축구협회의 현실과 충돌하는 면이 있음

123) (K 진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2조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문의하지는 않았음

124) 2023. 3. 28. 축구협회 제2차 이사회 안건자료에 따르면 징계 사면 추진 배경의 하나로 대한체육회 규정 변화를

- 또한, 설사 관련 규정상 회장의 사면권 행사가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면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안건은 5일 전에 이사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 축구협회는 징계 사면 대상자 명단을 이사들에게 미리 공유하지도 않고 당일 에야 열람토록 하였으며, 징계 사면 의결안에 대하여 별도의 찬성/반대 표결 없이 이사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받은 후 다른 의견이 없다는 사유로 원안 대로 의결하는 등 이사회의 심의 기능을 형해화함¹²⁵⁾

4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 축구협회는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면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과함으로써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협회의 공정위원회 규정 역시 대한 체육회 규정에 맞추어서 작년에 이미 모두 개정을 완료하였음
- 향후에도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 시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FIFA나 AFC 규정 과도 조화를 이루면서 대한체육회 규정을 반영하여 협회 공정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5 조치할 사항

- 축구협회가 상위 규정에서 삭제된 사면 권한을 자체 규정에서 삭제하지 않고, 행사해서는 안 되는 회장의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 단체 운영과 관련한 직무태만 행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서,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25조(징계 기준) 및 「인사 규정」 제50조(징계 심의), 제51조(징계의 대상) 등에 따라 관련자 징계 조치

들고 있으며, 당시 이사회에서 K는 징계 사면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선 FIFA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 및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기념하며, 특히 올해는 협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축구계의 대 통합을 위한 사면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자 사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에서 기존에 금품수수, 입학비리, 폭력, 승부조작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하거나 사면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이 이번에 삭제되었다는 점도 사면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 되었습니다”라고 함

125) (■■■■ 부회장) 사면이라는 단어는 사실 몇 주 전부터 들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자리 수 이내의 정말 역울한 선수, 심판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음. 그런데 당일에 100명의 리스트를 보고 사실 많이 당황했던 것은 사실임. (■■■■ 이사) 사면권 발의는 회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는 것은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날은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사항도 듣지 못했음... 앞으로 어떤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저희가 인지한 다음에 저희 생각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함(2023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 **대한축구협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등 단체 운영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관련자를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 제25조 및 「인사규정」 제50조, 제51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문책)**

[관련자]	대한축구협회 회장	A*	자격정지 이상
	대한축구협회 행정지원팀 매니저	K	정직 이상

* 1.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4.축구인 사면 업무처리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조치 요구

[별표 3]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2022. 12. 26.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개정 사유
제32조(징계의 감경 등) 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u>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표 4에 따라 감경하거나 사면, 복권할 수 있다. 단, 징계를 확정할 당시 이미 제4항의 사유를 적용한 경우에는 다시 감경하거나 사면, 복권할 수 없다.</u> 1~2. “삭제”(2022.1.24.) <u><신설></u> ② “생략”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실효된 것으로 <u>하며,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징계를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감경,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다.</u> ④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⑥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가 감경, <u>사면, 해제, 복권</u>할 수 없다. ⑦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u>확정된 징계의 구제 등</u>) ①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u>징계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징계를 받은 자가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별표 4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u> 1~2. “현행과 같음” 3. <u>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u> 4. <u>징계 대상, 기준,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당시 혐의가 징계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실효된 것으로 <u>한다.</u> ④ <u>삭제</u> ⑤ <u>삭제</u> ⑥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가 감경<u>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u>할 수 없다. ⑦ <u>삭제</u>	■ 조문 성격을 포괄하도록 제목 수정 ■ 구제제도 개편 - “사면, 복권” → “해지, 취소”(구제권 행사하는 체육회장 법적 지위 등 감안) - 종전 제3항을 옮겨 정비, 법원의 무죄판결에 준하는 수사기관 결정 추가 ■ 법원 무죄 판결에 관한 사항 제1항제3호로 옮겨 정비 ■ 확정된 징계 구제 취지 등을 감안하여 구제요건에서 삭제, 제31조제1항의 1차 징계 심사 시 감경요소로 반영 ■ 제1항 구제제도 개정에 따른 종전 구제 예외 규정 삭제 ■ 제1항 구제제도 개정안에 따른 정비 ■ 제1항 구제제도 개정안에 따른 정비

자료: 대한체육회 제16차 이사회(2022. 12. 26.) 안건자료 재구성

① 업무 개요

- 축구협회는 「정관」에 따라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감사 등의 선임임원¹²⁶⁾과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¹²⁷⁾ 및 분과위원¹²⁸⁾ 등의 위촉임원을 두고¹²⁹⁾, 「정관」 및 자체 「임원 보수규정」¹³⁰⁾에 따라 비상근 임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

②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¹³¹⁾ 제24조의2에 따르면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고, 축구협회 「정관」 제75조에 따르면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실비) 또는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비상근 임원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¹³²⁾, 자체 「임원 보수규정」¹³³⁾에는 비상근 임원 중 별도 보직을 부여받아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축구협회는 비상근 임원의 무보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비상근 임원에게는 업무 수행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거나, 비상근 임원과 자문계약을

126)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고, 전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함

127) 축구협회는 「정관」에 따라 협회 업무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이사회 의사결정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 2021년 1월~2024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연도별로 3명의 자문위원을 두고 있음(1명당 월 고정 자문료 2백만 원, 2021년 1월~2024년 8월까지 자문료 총 25.8백만원 지급)

128) 분과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함

129) 정관 제24조에 따라 회장은 임원 중에서 상근 임원을 임명할 수 있고, 2024년 8월 감사일 현재 축구협회의 상근임원은 부회장 1인, 기술발전위원장·기술총괄이사·전임강사를 겸임하고 있는 1인으로 총 2인임

130) 2014. 4. 2. 축구협회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

131) 대한체육회 「정관」 제13조의2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원종목단체가 해당 규정이 정한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한체육회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대의원 자격 정지 등의 권리 제한 또는 지원금 중단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음

132)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64개의 정관을 확인한 결과, 축구협회를 제외한 63개 단체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과 동일하게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64개 단체 중 축구협회만 유일하게 추가적으로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한 비상근 임원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음

133) 축구협회 「임원 보수규정」에는 보수의 종류를 급여, 자문수수료, 활동비 및 회의참가비로 구분하고 있음

체결하는 경우에도 자문실적 등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등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고정 보수 등을 지급하여서는 안 됨

③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축구협회는 자문계약 대상자 선정¹³⁴⁾ 및 자문료 책정¹³⁵⁾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채 2021년 1월~2024년 8월까지 선임·위촉한 부회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등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¹³⁶⁾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표 26]과 같이 매월 최소 1백만 원(연간 12백만 원)~최대 27백만 여원(연간 3억 여원)의 고정 자문료를 약정하여 총 28억여 원을 지급하는 등 비상근 임원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급여성 고정 보수를 방만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표 26] 비상근 임원에게 월 고정 자문료 등을 지급한 내역(2021년 1월~2024년 8월)

직위	성명	월 자문료	2021년	2022년	2023년 ^{주1)}	2024년 8월	계
부회장	■	(2021) 2.5백만 원 (2022) 2.5백만 원 (2023) 3백만 원	24.8백만 원	30백만 원	9.2백만 원		64백만 원
	■	(2021) 6백만 원 (2022) 6백만 원	66백만 원	72백만 원	6백만 원		144백만 원
	■	(2021) 6백만 원 (2022) 6백만 원	66백만 원	72백만 원	6백만 원		144백만 원
	■	(2021) 2.5백만 원 (2022) 2.5백만 원 (2023) 3백만 원	27.5백만 원	30백만 원	9.2백만 원		66.7백만 원
	■	(2021) 6백만 원 (2022) 6백만 원 (2023) 8백만 원 (2024) 8백만 원	73백만 원	72백만 원	87.4백만 원	64백만 원	296.4백만 원
	■	(2023) 5백만 원			11백만 원		11백만 원
	■	(2023) 5백만 원			11백만 원		11백만 원
	■	(2023) 8백만 원 (2024) 8백만 원			63.5백만 원	64백만 원	127.5백만 원

134) 축구협회는 비상근 임원의 경력과 축구협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자문계약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나,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특히 분과부위원장의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소관 부서의 요청 및 행정지원팀 검토 절차를 거쳐 자문계약을 체결하는데, 분과위원회별로 자문계약을 체결한 부위원장이 없거나 최대 4명에 이르는 등 분과위원별로 자문계약 대상자 인원의 격차가 큼

135) 축구협회는 비상근 임원의 역할과 업무 범위, 전임자 처우, 「임원 보수규정」 상의 자문료 한도 등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책정한다고 하나, 자문료 책정과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은 없음

136) 2021년 1월~2024년 8월까지 부회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으로 선임·위촉한 비상근 임원은 44명이나 그 중 34명과 자문계약을 체결함(6명은 본직 등을 고려하여, 부회장 및 분과위원장을 겸임한 2명은 부회장 직위에 대한 자문계약을 체결한바 분과위원장 자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분과위원장 및 지도자강사 또는 전임강사·기술총괄 이사를 겸임한 2명은 분과위원장 자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각각 지도자강사 및 전임강사·기술총괄이사 직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함)

직위	성명	월 자문료	2021년	2022년	2023년 ^{주1)}	2024년 8월	계
	■	(2023) 8백만 원			17.9백만 원		17.9백만 원
	■	(2023) 6백만 원 (2024) 6백만 원			47.6백만 원	48백만 원	95.6백만 원
	■	(2023) 6백만 원 (2024) 6백만 원			47.6백만 원	48백만 원	95.6백만 원
■ ■	■ ^{주2)}	(2021) 5백만 원 주거비원비 0.5백만 원 (2022) 5백만 원 주거비원비 0.5백만 원	61백만 원	72백만 원	6백만 원		139백만 원
	■	(2023) 8백만 원 (2024) 8백만 원			81.4백만 원	16백만 원	97.4백만 원
	■	(2024) 8백만 원				48백만 원	48백만 원
■ ■	■	(2023) ■			■	■	■
	■	(2024) ■					
	■ ^{주3)}	(2024) ■				■	■
■ ■	■	(2021) 4.5백만 원 (2022) 5.5백만 원	49.5백만 원	66백만 원	5.5백만 원		121백만 원
	■	(2023) 3→7백만 원 ^{주4)} (2024) 7백만 원			57.4백만 원	56백만 원	113.4백만 원
	■	(2023) 7백만 원			15.6백만 원		15.6백만 원
■ ■	■	(2021) 2.5백만 원 (2022) 2.5백만 원 (2023) 3백만 원	30.5백만 원	30백만 원	9.2백만 원		69.7백만 원
	■	(2023) 3백만 원 (2024) 3백만 원			23.8백만 원	24백만 원	47.8백만 원
■ ■ ■	■	(2021) 2.5백만 원 (2022) 2.5백만 원	27.5백만 원	30백만 원	2.5백만 원		60백만 원
	■	(2023) 3백만 원			6.7백만 원		6.7백만 원
	■	(2023) 6백만 원 (2024) 6백만 원			47.6백만 원	48백만 원	95.6백만 원
■ ■	■	(2021) 2.5백만 원 (2022) 2.5백만 원 (2023) 3백만 원	32백만 원	30백만 원	9.2백만 원		71.2백만 원
	■	(2023) 3백만 원 (2024) 3백만 원			23.8백만 원	24백만 원	47.8백만 원
■ ■ ■	■	(2021) 3백만 원	30.2백만 원				30.2백만 원
	■	(2021) 1백만 원 (2022) 1.2백만 원	10.6백만 원	14.4백만 원			25백만 원
	■	(2021) 2.8백만 원 (2022) 2.8백만 원 (2023) 2.8백만 원		32.8백만 원	33.6백만 원	22.4백만 원	88.8백만 원
■ ■ ■	■	(2021) 3백만 원 (2022) 3백만 원 (2023) 3백만 원	30.3백만 원	36백만 원	6백만 원		72.3백만 원
	■	(2023) 3백만 원			17.4백만 원		17.4백만 원
	■	(2023) 2.8백만 원 (2024) 2.9백만 원			33.6백만 원	23.2백만 원	56.8백만 원

직위	성명	월 자문료	2021년	2022년	2023년 ^{주1)}	2024년 8월	계
	■	(2023) 3백만 원 (2024) 3백만 원			17.1백만 원	24백만 원	41.1백만 원
	■	(2023) 3백만 원 (2024) 3백만 원			15백만 원	24백만 원	39백만 원
■ ■	■	(2021) 1.5백만 원 (2022) 1.5백만 원 (2023) 1.5백만 원	18백만 원	18백만 원	18백만 원		54백만 원
합 계			547백만 원	605백만 원	1,041백만 원	653백만 원	2,846백만 원

주1: 2023년 3월 비위행위자 기습 사면과 관련하여 임원 11명 사퇴(4월) 및 신규 임원 8명 자문계약 체결(5월)

주2: 축구협회에 따르면 ■의 자택은 지방이나 ■으로서 ■ 참관 및 축구협회 상시 출근 등을 위해 「임원 보수규정」에 따른 한도 내에서 주거지원비를 지급함

주3: 당초 ■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계약기간 2023. 2. 1.~2025. 1. 22., 월 자문료 8백만 원) 2024. 2. 20.자로 ■ 자문계약을 체결함(계약기간 2024. 2. 20.~2025. 정기총회일, 자문료 월 15백만 원)

주4: 당초 ■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계약기간 2023. 2. 1.~2023. 12. 31., 월 자문료 3백만 원) 2023. 6. 28.자로 ■ 자문계약을 체결함(계약기간 2023. 6. 28.~2025. 1. 22., 월 자문료 7백만 원)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더욱이 축구협회의 2021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비상근 임원 자문계약 업무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 자문계약서에는 아래 사례와 같이 비상근 임원의 해당 직위 또는 비상근 임원 선임 시 담당하게 된 분야¹³⁷⁾에 대한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을 뿐 비상근 임원의 구체적인 자문역할과 과업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비상근 임원의 자문계약서 사례】

- (부회장) 협회가 위임한 비상근 부회장의 자문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 (부회장) 학교축구 및 엘리트 축구 등의 자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심판위원장) ... 심판 운영 등의 자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대회위원장) ... 대회 운영 등의 자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자문활동 증빙자료와 관련하여 2021년 1월~2024년 8월까지의 기간 중 총 8건의 '연간 업무활동 기술서'¹³⁸⁾만 확인되었는데¹³⁹⁾, 그조차도 아래 사례와 같이

137) 축구협회는 비상근 부회장 선임 시 전문분야를 정하여 선임하고 있으며,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소속 위원회가 담당 분야임

138) 담당 분야, 주요 활동, 외부 대회 및 행사 지원 내역 등 비상근 임원이 연간 수행한 자문 내역을 작성한 자료

139) 2021년 1월~2023년까지(2024년은 활동 중) 총 59건의 연간 활동기술서(개인별, 연도별)가 존재하여야 하나, 이번 감사 기간 중 축구협회는 2021년 8건의 업무활동 기술서만 제출함

활동 내용은 '공정위원회 운영' 등 비상근 임원의 해당 직위에 따른 본연의 임무에 해당하거나, '관계기관에 전방위적 활동'과 같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1년간 활동 실적이 미미하였음

【비상근 임원의 '연간 업무활동 기술서' 사례(2021년)】

성명 (분야)	직위	월 자문료/ 연간 지급액	1년간 업무활동
■■■■■	■■■■■	월 2.5백만 원/ 연 30.5백만 원 ^{주1)}	· 주요활동 1. 공정위원회 운영 - 공정위원회 5회 주재, 적절한 징계 절차 진행 · 주요활동 2. 포상 대상자 심의 - 협회 연말 포상대상자 선정 심의 · 주요활동 3. 협회 관련 법률 자문 - 정관 개정 등 협회 업무 관련 법률 자문
■■■■■ ■■■■■ ■■■■■	■■■■■	월 2.5백만 원/ 연 25백만 원 ^{주2)}	· 주요활동 1. 천안 NFC 건립 관련 - 문체부 차관 등 관계자에게 협회 안을 수용하도록 설득 - 행안부의 지방재정사업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국고 지원을 위해 문체부, 기재부, 예결위 등에 전방위적 활동 · 주요활동 2. 대정부 지원 활동 - 국가 대표팀 평가전 참가 외국 선수단 격리 협조 요청
■■■■■ ■■■■■ ■■■■■ ■■■■■	■■■■■	월 6백만 원/ 연 66백만 원 ^{주3)}	· 주요활동 1. 우수선수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PEP: Player Education Program) 제작 자문 - 대한민국 엘리트 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인의 항목화 작업 - 협회 차원에서 각 연령별 맞춤 교육 콘텐츠 제공(만 12세~만 18세) - 기술발전위원회 초안 수립 → K리그 유스팀공유 → 골든에이지소집 선수에게 적용 → 일선 현장 보급 · 주요활동 2. 디지털 전환을 통한 데이터 활용 및 축구 부가가치 확대 자문 - KFA 국가대표팀 경기 영상 및 데이터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 국가대표팀 IT 인프라 준비 및 훈련, 컨디션, 부상 관리 솔루션 추진 - 디지털 전환을 통한 축구 팬 경험의 다양화 & 극대화 · 주요활동 3. 여자축구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 여자축구 관련 협회와 여자축구 연맹의 거버넌스 관계 재정립 - 여자 축구 발전의 기본 방향 전환 → 생활 축구 문화 확대(여자대학 동아리 축구 대회 추진)

주1: 계약기간: 2021. 1. 1.~2022. 12. 31.

주2: 계약기간: 2021. 3. 3.~2022. 12. 31.

주3: 계약기간: 2021. 2. 1.~2022. 12. 31.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축구협회는 「임원 보수규정」과 다르게 [표 27]과 같이 자문료 한도(부회장·분과위원장의 경우 연간 1억 원)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¹⁴⁰⁾ 한도를 초과하여 자문료를 지급하였고¹⁴¹⁾

¹⁴⁰⁾ 비상근 임원 자문계약 체결은 MO이 담당하고, 본부장과 부회장 및 회장에게 대면 보고를 진행하며 문서등록대상상의 내부결재는 미 실시(일부 자문계약 변경 체결에 대한 내부결재 문서만 확인됨)

[표 27] 「임원 보수규정」 상 자문료 한도를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내역(2021년 1월~2024년 8월)

연도	성명	직위	계약기간 (연 또는 월 자문료)	자문료 지급액	비고
2023	■	■	2023. 1. 18.~2024. 12. 31. (■)	2023년 ■ ^{주1)} 2024년 ■ ^{주2)}	2024년 2월 사임
2024	■	■	2024. 2. 20.~2025년 정기총회일 (■)	2024년(2~6월) ■ ^{주3)}	2024년 6월 사임

주1: 2023년 3~12월 자문료로, ■는 ■으로 선임되기 이전 축구협회 ■로 활동했으며 2023년 1~2월은 ■ 보수(■원) 지급

주2: 2024년 2월 사임함에 따라 2024년 1~2월 자문료 ■ 지급

주3: 축구협회는 ■과 2023년 2월부터 ■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료 월 8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4. 2. 20. ■으로 선임함에 따라 월 자문료를 15백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2024년 2월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자문계약 기간이 2022. 12. 31.자로 종료되었음에도 비상근 임원의 임기가 다음 해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까지라는 이유로 자문계약서와 다르게 [표 28]과 같이 추가 1월 분의 자문료 총 42백만 원을 지급¹⁴²⁾하였으며¹⁴³⁾,

[표 28] 비상근 임원의 자문계약 기간 종료 후 자문료를 지급한 내역(2021년 1월~2024년 8월)

연번	성명	직위	계약기간	월 자문료 등	2023년 1월 자문료 등 지급액
1	■	■	2021. 2. 1.~2022. 12. 31.	6백만 원	6백만 원
2	■	■	2021. 3. 3.~2022. 12. 31.	2.5백만 원	2.5백만 원
3	■	■	2021. 2. 1.~2022. 12. 31.	6백만 원	6백만 원
4	■	■	2021. 1. 1.~2022. 12. 31.	6백만 원	6백만 원
5	■	■	2021. 2. 1.~2022. 12. 31.	2.5백만 원	2.5백만 원
6	■	■	2021. 2. 1.~2022. 12. 31.	5.5백만 원	5.5백만 원
7	■	■	2021. 1. 1.~2022. 12. 31.	2.5백만 원	2.5백만 원
8	■	■	2021. 2. 1.~2022. 12. 31.	2.5백만 원	2.5백만 원
9	■	■	2021. 2. 1.~2022. 12. 31.	2.5백만 원	2.5백만 원
10	■	■	2021. 2. 1.~2022. 12. 31.	자문료 5.5백만 원 주거지원비 0.5백만 원	6백만 원
계					42백만 원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141) 축구협회에 따르면 ■의 경우 당초 축구협회 ■로 계약했으나 협회의 필요에 의해 ■으로 선임하였기에 ■ 보수에 준하는 자문료를 책정하였고, ■의 경우 ■의 역할과 책임, 전임자의 자문료 등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책정하였음

142) 2023년 1월 보직 임원 등의 자문수수료 및 활동비(통신비) 지급[문서번호 291(행정지원팀)-20230265(2023. 1. 21.)], 기안(N)-결재(M)-결재(L)-결재(D)-결재(■), 해당 내부결재 문서에는 “임원 보수규정 제7조 제2항(임원이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월의 전액 지급)”을 근거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은 상근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임

143) 2023년부터 자문계약 기간 만료일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로 정하고 있음

- 비상근 임원의 징계 사유 발생으로 '직무정지 처분'() 하였음에도¹⁴⁴⁾ 자문계약서¹⁴⁵⁾ 및 주거지원비 부속합의서¹⁴⁶⁾와 다르게 [표 29]와 같이 직무정지 처분 이후에도 자문료 및 주거지원비 총 7.8백만 원을 지급¹⁴⁷⁾하는 등 자문료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표 29] 직무정지 처분 이후 자문료를 지급한 내역(2021년 1월~2024년 8월)

대상자	계약기간	직무정지 처분일자	자문료 및 주거지원비	부적정 자문료 (기간)
	2022. 1. 1.~2022. 12. 31.		월 자문료 5.5백만 원 월 주거지원비 0.5백만 원	총 7.8백만 원 (~2022. 12. 31.)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 축구협회는 비상근 임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 및 자문실적 관리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면서도
 - ▲비상근 임원에게 별도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정관」의 규정은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친 것이고,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체육단체 특별감사'¹⁴⁸⁾ 시 임원활동비 지급근거 및 지급액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라는 지적¹⁴⁹⁾에 따라 「임원 보수규정」을

144)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이후 〃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을 의결함()

145) 자문계약서 제5조 [자격의 중지] “협회”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자문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된 기간 중에는 모든 보수 및 소요비용의 지급이 정지된다.

1. “협회”의 정관·규정,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때
2. 사전연락 없이 “임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3. 불미스러운 처신으로 임원으로서의 명예와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4.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 관련 법령에 의거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146) 임원업무 자문 계약에 대한 추가 계약 건 부속합의서

3. “임원”의 과업이행이 불가하거나, 상호 합의에 의해 직책이 변경 될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다.

147) 2022년 11월 보직 임원 등의 자문수수료 및 활동비(통신비) 지급[문서번호 291(행정지원팀)-20225003(2022. 11. 23.)], 기안(N)-결재(M)-결재(L)-결재(D)-결재(), M은 해당 내부결재 문서 결재 의견에 “ 〃은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사임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정위 결과 나올 때까지는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여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로 기재함

148) 체육단체의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관행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감사[감사기간: 2013. 8. 26.~2013. 12. 24.(결과 통보 2014. 2. 19.)], 감사대상: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지부, 중앙가맹경기단체 및 시·도 가맹경기단체 등 2,099개 체육단체]

149) 2013년 감사 당시(2014년 결과 통보) 축구협회 「정관」에 비상근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서는 ‘임원의 보수, 퇴직금,

제정하여 해당 규정을 근거로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임원 보수규정」 상 한도를 초과한 자문계약과 관련하여 [REDACTED]의 경우 당초 [REDACTED]로서 [REDACTED]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과 [REDACTED]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원 보수규정」 상의 자문료 한도를 적용하지 않았고, [REDACTED]의 경우 전임 [REDACTED] (150), [REDACTED]의 자문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원 보수규정」 상의 자문료 한도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자문계약 종료 후 자문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자문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을 2022. 12. 31.로 표기하였을 뿐 비상근 임원의 임기는 2023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까지로 2023년 1월분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고, 2023년 3월부터는 자문계약 기간을 2025년 대의원총회 개최일까지로 하였으며 향후에도 자문계약 기간을 대의원총회 개최일과 동일하게 설정할 계획이고, ▲[REDACTED]의 경우 자문계약서에 따르면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문활동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린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공정위원회의 처분 이후 자문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의견 제시

- 하지만 ▲「정관」에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비상근 임원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자문계약에 따라 비상근 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더라도 자문 실적에 근거한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정관」 상 예외 조항을 근거로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고정 보수 성격의 자문료를 지급한다면 상위 규정인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정관」 상의 비상근 임원 무보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특별감사' 지적의 취지는 당시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던¹⁵¹⁾ 비상근 임원 활동비에 대한 지급 근거 및 금액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축구협회는 「임원 보수규정」을 제정하면서 상근 임원과 비상근 임원을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 요구내용은 '대한체육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에게 임원활동비 지급근거 및 지급액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임원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음

150) 상근 [REDACTED]으로 월 자문료 [REDACTED]을 지급하는 자문계약(계약기간 2021. 2. 1.~2022. 12. 31.)을 체결하였고, 2022. 2. 10. 사임함

151) 당시 「정관」(2013. 5. 2.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제74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 퇴직금,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구분하고 상근 임원에게는 급여를, 비상근 임원에게는 자문료와 활동비 및 회의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¹⁵²⁾ 이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가 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구분되는 비용으로서 자문료는 급여성 고정 보수로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점, ▲「임원 보수규정」에는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연간 한도액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자문료는 비상근 임원의 직위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자문계약에 따른 비용으로서 비상근 임원의 임기가 아닌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점, ▲축구협회는 ■■■■■에 대하여 ‘직무정지 처분’을 함으로써 자문활동 정지를 결정하였으므로 자문계약서 및 주거지원비 부속합의서의 내용대로 자문료 등 모든 보수 및 소요비용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5 조치할 사항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정관」에 따른 비상근 임원 무보수 원칙을 준수하여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임원 보수 규정」 상 자문료 한도를 준수하며 자문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비상근 임원 보수 관련 업무 철저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정관」 상 비상근 임원의 무보수 원칙을 위반하여 비상근 임원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하고, 「임원 보수규정」과 다르게 비상근 임원과 연간 자문료 한도를 초과하는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자문계약서 등과 다르게 자문계약 종료 이후 및 직무정지 처분 이후 비상근 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과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고, 비상근 임원 보수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5명¹⁵³⁾에 대해 징계 요구
- 자문계약 기간 종료 및 직무정지 처분 이후 비상근 임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자문료 총 49.8백만 원을 환수하는 방안 마련

152) 「임원 보수규정」 제2장 상근 임원의 보수 - 제7조(급여의 지급), 제3장 비상근 임원의 보수 - 제9조(자문료), 제10조(활동비), 제11조(회의참가비)

153) 2021년 1월~2023년 4월까지 축구협회 상근임원인 전무이사로 재직한 ■■■■■은 2023. 4. 7. 퇴직, 2021년 1월~2022년 5월까지 비상근 임원 보수지급 업무를 담당한 행정지원팀 매니저 ■■■■■는 2022. 5. 31. 퇴직

대한축구협회장은

①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정관」에 따른 비상근 임원 무보수 원칙을 준수하여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임원 보수규정」 상 자문료 한도를 준수하며 자문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비상근 임원의 보수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축구협회 「정관」을 위반하여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하고, 「임원 보수규정」과 다르게 비상근 임원과 연간 자문료 한도를 초과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과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고 비상근 임원 보수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B에게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징계처분(자격정지 이상)하시기 바랍니다. **(문책)**

* 1.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5.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조치 요구

③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축구협회 「정관」을 위반하여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하고, 「임원 보수규정」과 다르게 비상근 임원과 연간 자문료 한도를 초과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자문계약서 등과 다르게 자문계약 종료 이후 및 직무정지 처분 이후 비상근 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과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고 비상근 임원 보수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게 「인사규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문책)**

[관련자]	대한축구협회	D*	정직 이상
	대한축구협회	L	경고 이상
	대한축구협회	M	감봉 이상

* 1.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2.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5.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건과 병합하여 조치 요구

④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축구협회 「정관」을 위반하여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하고, 자문계약서 등과 다르게

자문계약 기간 종료 이후 또는 직무정지 처분 이후 자문료와 주거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과 「정관」을 위반하고 비상근 임원 보수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N을 「인사규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문책)**

⑤ 자문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직무정지 처분 이후 비상근 임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자문료 등 총 49.8백만 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6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부적정

1 업무 개요

- 아시아축구연맹¹⁵⁴(이하 “AFC”)은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축구 정상권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도자 교육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춰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개선·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자격증 인준 위임 제도’(이하 “AFC 코칭컨벤션”)를 2018년부터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AFC는 일원화된 자격증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입과 조건 ▲강습회 방법론 ▲출석 ▲평가 체계 ▲수료 등은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 과정 기획 및 운영 ▲강사 선임 ▲평가 항목별 합격 기준 등은 회원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축구협회는 AFC에서 마련한 ‘AFC 코칭컨벤션’ 가입 절차¹⁵⁵를 통과하여 2020. 4. 21. 최고 등급인 P급 멤버십¹⁵⁶을 취득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강습회 운영 및 자격증 발급의 권리를 갖게 되었고, 이를 발급받은 지도자는 아시아 모든 회원국에서 자격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됨
- 축구협회는 수준 높은 국내 축구 지도자 양성을 위해 [표 30]의 자격증 등급 구분에 따른 강습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AFC P·A·B급은 AFC에서 위임받은 ‘AFC 코칭컨벤션’ 제도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등급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운영하고 있음

[표 30] 자격증 등급별 지도 가능 팀

자격증 등급	감독	코치
AFC P	국가대표팀 및 K리그1,2 국가대표팀 남자 U-20/성인, 여자 성인	
AFC A	대학, 성인 전문축구팀 국가대표팀 남자 U-18, 여자 U-20	K리그1,2 국가대표팀 남자 전체, 여자 전체
AFC B	중고등부	대학, 성인 전문축구팀
AFC C	초등부	중고등부
KFA D	동호인	동호인, 초등부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154) 국제축구연맹(FIFA)의 6개 대륙별 연맹 중 하나이며 주요 국가대항전인 AFC아시안컵 및 FIFA월드컵 아시아 예선, 프로축구 대항전인 AFC챌린지 리그 엘리트 등을 주관하고 있음. 현재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인 4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본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음

155) AFC 회원국이 각자 희망하는 급수의 지도자 강습회 관련 세부계획안을 제출하면 AFC 지도자교육패널이 심사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이후 AFC 지도자교육패널이 AFC 기술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해 최종 승인이 되면 ‘AFC 코칭컨벤션’ 멤버십 가입이 완료됨

156) P급 멤버십을 획득하면 P급, A급, B급 지도자 자격증 강습회를 진행할 권리를 갖게 되며, 아시아 회원국 중 ‘AFC 코칭컨벤션’ P급 멤버십을 획득한 국가는 총 5개국(대한민국, 호주, 중국, 일본, 카타르)임

- 축구협회는 「지도자 교육규정」을 마련하여 자격증 등급별 강습 신청 요건 및 합격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4개의 자격증(AFC P, AFC A, AFC B, AFC C)에 대해서는 수강생 선정을 위한 신청요건, 선정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한 별도 세칙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음
- **(P급 입과 기준)** 수강생선발은 자체 세칙에 따라 지도경력 30%, 정성평가 40%, 보수교육 20%, 가산항목 10%의 평가 항목을 합산하여 고점자 순으로 결정함
- **(P급 발급 기준)** 자격증 합격자 결정은 자체 규정에 따라 실기 70%, 이론 60%, 논문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하고, 이론시험 불합격자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만 실기시험 불합격자는 즉시 불합격 처리함. 또한 AFC 규정에 따라 평가에 실패한 수강생은 평가를 반복할 수 있으나, 축구협회와 AFC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②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AFC Coaching Convention Regulations」¹⁵⁷⁾(이하 “AFC 코칭규정”)
- **(최소 기준 준수 의무)** 제7조¹⁵⁸⁾에 따르면 축구협회의 임무 사항으로 7.1. 모든 최소 기준¹⁵⁹⁾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말고 AFC 코칭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강습회 출석 준수 사항)** 동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수강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주관하는 코칭 과정을 100% 참석해야 하고, 결석의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수강생은 총결석 시간이 전체 과정 기간의 10%를 초과

157) AFC는 강습회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 사항 등을 정의한 규정을 만들어 ‘AFC 코칭컨벤션’을 체결한 회원국에게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섹션1. 기본 요소(목표, 적용범위, 회원등급), 섹션2. AFC와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섹션3. 코스기준(조직, 출석, 평가, 수료, 강사, 입학기준), 섹션4. 졸업장 및 자격증 보유자를 위한 추가교육, 섹션5. 지도자 교육 강사를 위한 추가 교육, 섹션6. 자격증 발급, 섹션7. 법적 문제 및 평가결과 등

158) 제7조: 대회회원의 의무

7. 각 대회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7.1. 다음을 포함하되 ‘모든 최소 기준(All Minimum Criteria)’에 국한하지 않고 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159) ‘모든 최소 기준(All Minimum Criteria, 9페이지 용어정의): 본 규정의 섹션 3, 4, 5에 명시된 대로 각 졸업장 과정 및 추가 교육 과정에 필요한 최소 내용 및 조건

섹션 3. 코스기준 : 제9조 권한, 제10조 방법론, 제11조 조직, **제12조 출석**, **제13조 평가**, 제14조 과정수료,

제15조 코치교육튜터, 제17조 빈도, 제17조 모든 디플로마 과정 프로그램의 입학 기준 등

섹션 4. 졸업장 및 자격증 보유자를 위한 추가 교육, 섹션 5. 코치 교육 교사를 위한 추가 교육

하지 않는 한 누락 된 강습(모듈, 세션)을 보충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 놓친 모든 강습은 과정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보충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결석의 경우(질병, 부상 등), 축구협회는 AFC에 특별 조치/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수강생이 졸업장을 받기 전에 모든 과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

- (재평가 준수 사항) 동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13.2. 평가에 실패한 후보자는 대회 회원에게 편리하고 본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반복할 수 있음. 동일한 등급 코스에 참가하려면 회원 협회와 AFC 모두의 승인이 필요함

- (P급 입학 기준 사항) 동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P급 수강생 지원자는 “AFC A급 라이선스 보유자로 최소 1년의 코칭 경험”을 갖춘 자로 하고 있음

○ 「지도자 교육규정」 제21조에 따르면 P급 강습회 수강생 자격증 합격자 결정 기준으로 실기 70%, 이론 60%, 논문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수강생은 불합격 처리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AFC P급 지도자 강습회 수강생 선정기준」세칙(이하 “P급 수강생 선정 세칙”) 제3조에 따르면 ‘지도경력’ 배점 항목 기준은 가. A급 취득 이후 KFA U-18 이상의 전문등록팀 지도경력만을 배점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③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2022년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P급 지도자 자격증 발급

- 축구협회는 2022년 P급 지도자 강습회를 2022. 3. 14. ~ 11. 2. 동안 추진 하고 입과 한 수강생 총 24명을 모두 ‘합격’으로 처리하여 2022. 12. 12. P급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함

- 2022년 P급 지도자 강습회에서 실기시험 불합격 기준 점수인 70점 미만인 수강생은 6명()¹⁶⁰⁾이며, 이들은 모두 실기시험에서 67점을 받아 「지도자 교육규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합격 처리하여 최종 P급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함

160)

-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본 결과, 당시 축구인재육성팀에서 P급 강습회 업무를 담당한 [REDACTED]와 O는 전임강사 3명에게 강습 및 평가 일체를 위임함에 따라, 전임강사는 결과표에 실기점수(1건), 이론점수(2건), 축구게임 법칙(1건) 등 총 4건의 평가점수와 종합결과란에 합격여부¹⁶¹⁾를 작성하면서 24명 모두 '합격'으로 처리 후 축구협회에 전달함
- [REDACTED]과 O는 「지도자 교육규정」에 따라 실기점수 70점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고 있었고, 전임강사 3명에게 이러한 사항을 공유하지도 않았으며, 전임강사가 넘겨 준 최종 결과표의 검토 책임이 축구협회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고 P급 자격증을 발급함

○ 2023년 AFC 규정 및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P급 수강생 재강습 기회 부여

- 2023년 P급 지도자 강습회에서 수강생 2명([REDACTED])이 모듈3(스페인 현지 강습 12일 / 2023. 9. 8. ~ 9. 19.)에 불참¹⁶²⁾하여 총 31.6%의 결석률이 인정됨에도, 최종 '재강습'¹⁶³⁾으로 처리하고 2024년 재강습 기회를 부여할 예정
- 「AFC 코칭규정」에 따라 정당한 결석 근거가 있는 경우 총결석 시간이 전체 과정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누락 된 강습을 보충하도록 허용할 수 있고, 누락 된 강습은 과정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하나, 이들은 강습회 완료(2023. 12. 20.)로부터 6개월(2024. 6. 20.) 이내에 재강습도 하지 않았음
- 또한 「AFC 코칭규정」에 따라 질병, 부상 등의 예외적인 결석사유 발생 시 축구협회가 AFC에 특별 조치신청 후 결과에 따라 재강습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나, 축구협회는 [REDACTED]의 모듈3 불참 사유인 [REDACTED]가 AFC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결석 사유인지 명확하지 않음에도 자체 판단하였고, AFC에 특별 조치는 신청하지 않았음
- 또한 [REDACTED]의 경우 강습회 교육 중 실시한 실기시험에서 60점을 받아 「지도자

161) 합격, 불합격, 재강습, 재시험 등 기입

162) [REDACTED]

163) 2023년 '최종 결과표' 작성 시 출석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재강습 대상"으로 처리하였어야 하나, 실제로는 "재시험 대상"으로 표기함. 실기시험에 탈락하는 등 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축구협회와 AFC의 승인을 거쳐 구제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때 "재시험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교육규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축구협회는 당시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강습’ 대상으로만 분류함

-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본 결과, 당시 축구인재육성팀에서 P급 강습회 업무를 담당한 P와 O는 ‘2022년 P급 강습회’와 마찬가지로 전임강사 3명에게 강습 및 평가 일체를 위임하였고, 전임강사는 결과표에 총 4건의 평가점수와 종합결과란을 작성하였는데 이 중 ■■■■■, ■■■■■ 2명에 대해 ‘모듈3 불참’의 사유로 ‘재강습’ 대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격 처리 후 축구협회에 전달함
- P 및 O는 「AFC 코칭규정」에 따라 ‘결석의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총결석 시간의 10% 내에서 누락 된 강습을 보충하도록 허용’한다는 조항과 「지도자 교육규정」에 따라 실기점수 70점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고 있었고, 전임강사에게 이러한 사항을 공유하지도 않았으며, 전임강사가 넘겨 준 최종 결과표의 검토 책임이 축구협회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를 수용하고 재강습 대상으로 처리함

○ 2024년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P급 강습회 합격자 부적정 선정

- 축구협회는 2024년 P급 강습회 운영을 위해 2024. 5. 17. ~ 7. 9. 기간 동안 수강생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최종 수강생 18명을 확정하고 2024. 7. 16. 선발 결과를 개별 통지함
- 축구인재육성팀 Q는 강습회 최종합격자 선정을 위한 ‘지도경력(30점)’ 점수 산정 과정에서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에 따라 ▲A급 취득 이후 축구협회 18세 이상의 전문 등록팀 지도경력만 배점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18세 미만의 전문 등록팀도 평가에 적용하였으며 ▲연간 단위 외 개월 단위(1~11개월)의 지도경력에 대한 점수 산정 시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정하게 백분율로 점수 산정을 했어야 하나, 무작위 (총 241건: 올림 83건, 내림 78건, 적정처리 80건)로 올림과 내림 처리하여 지도 경력 점수 산정의 공정성을 훼손함
- 이를 바로잡아 재검증한 결과 [표 31]과 같이 P급 프로분야 8명의 합격자 중 ■■■■■이 탈락하고 탈락자 중 ■■■■■가 합격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P급

성인분야 5명의 합격자 중 ■■■■■, ■■■■■이 탈락하고, 탈락자 중 ■■■■■, ■■■■■이 합격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총 24명 중 3명의 합격자가 변경됨

[표 31] 2024년 P급 수강생 선정 합격자 변경 사항

기본 정보			(당초)축구협회 평가자료						(변경)재검증		
쿼터구분	이름	직책	최종 지도 경력	정성 평가	보수 교육	우수성적 지도실적	총점	당초 순위	지도경력 가감점수	최종 점수	재검증 순위
프로쿼터 (8명의 합격자 중 1명 변경)	■■■■■	코치	23.4	38.9	20.0	1.0	83.3	1	1.5	84.8	1
	■■■■■	코치	17.1	38.8	16.0	10.0	81.9	2	-3.225	78.7	6
	■■■■■	코치	23.4	37.6	10.0	10.0	81.0	3	-1.725	79.3	5
	■■■■■	코치	27.0	40.0	12.0	1.0	80.0	4	1.875	81.9	2
	■■■■■	코치	18.0	37.0	14.0	10.0	79.0	5	1.875	80.9	3
	■■■■■	코치	30.0	38.3	10.0	0.0	78.3	6	-1.8	76.5	8
	■■■■■	코치	25.2	37.0	10.0	6.0	78.2	7		78.2	7
	■■■■■	코치	13.5	37.6	16.0	10.0	77.1	8	-3.375	73.7	10(탈락)
	합격선 1~8위										
	■■■■■	코치	26.1	32.9	18.0	0.0	77.0	9	2.475	79.5	4(합격)
성인쿼터 (5명의 합격자 중 2명 변경)	■■■■■	감독	29.7	38.9	20.0	10.0	98.6	1	-2.325	96.3	1
	■■■■■	감독	28.8	35.9	18.0	0.0	82.7	2	-10.95	71.7	7(탈락)
	■■■■■	GK코치	30.0	32.2	8.0	10.0	80.2	3	-12.3	67.9	12(탈락)
	■■■■■	코치	29.7	40.0	10.0	0.0	79.7	4	-1.5	78.2	3
	■■■■■	감독	30.0	34.7	4.0	10.0	78.7	5		78.7	2
	합격선 1~5위										
	■■■■■	감독	30.0	37.1	10.0	0.0	77.1	6		77.1	5(합격)
	■■■■■	감독	25.2	31.8	16.0	3.0	76.0	7	1.35	77.4	4(합격)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상위법 및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 세칙 개정

- 축구협회는 2022. 7. 6.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표 32]와 같이 개정하면서 수강 신청 기본요건 중 ‘지도자 경력 조건’ 및 ‘결격사유 결정 방식’을 상위법 및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변경 개정함
- 수강 신청 시 ‘지도자 경력 조건’과 관련하여, ‘AFC A급 취득 후 지도경력 최소 3년 이상자’를 완화하여 ‘AFC A급 취득 후 3년 경과자’로 개정함에 따라 필수로 준수해야 하는 상위 규정인 「AFC 코칭규정」의 ‘AFC A급 취득 후 지도경력 최소 1년 이상자’만 강습회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신청 자격조건을 위반하여 자체 세칙을 개정함
- 수강 신청 시 ‘결격사유 결정 방식’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¹⁶⁴에 따라 축구 지도자 또한 피성년후견인,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은 지도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격 조건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자를 P급 수강생 선정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법률에서 정한 바를 자체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여 자체 세칙을 개정함

[표 32] 「P급 수강생 선정 세칙(2022. 7. 6. 개정)」 부적정 개정 내역

구분	「P급 수강생 선정 세칙」 변경 내용
1. AFC코칭규정 위반 (최소 지도경력)	○ 「P급 수강생 선정 세칙」 (2021. 10. 25. 개정) 제1조 (수강신청 기본요건) 1. AFC A급 취득월로부터 KFA U18이상의 전문등록팀에서 지도경력 최소 3년 이상자 ↓ ○ 「P급 수강생 선정 세칙」 (2022. 7. 6. 개정) 제1조 (수강신청 기본요건) 1. AFC A급 지도자 자격 취득월로부터 36개월 이상 경과한 자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지도자 결격조건)	○ 「P급 수강생 선정 세칙」 (2021. 10. 25. 개정) 제1조 (수강신청 기본요건)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자 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중인 자 바. 음주, (성)폭력으로 인해 대한체육회 및 대한축구협회 징계 사실이 있는자 ↓ ○ 「P급 수강생 선정 세칙」 (2022. 7. 6. 개정) 제1조 (수강신청 기본요건)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P급수강생선정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 이하 상동 --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164)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이러한 부적정한 세칙 개정이 일어난 과정을 살펴본 결과, 2020년 4월 축구협회가 AFC로부터 P급 강습회 멤버십 취득 후 처음으로 축구협회 자체적으로 P급 강습회를 운영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2021년 7월 개정된 「AFC 코칭규정」에 대해 이번 감사 전까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정이 아닌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지침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었음
- 이전 P급 수강생 선정 조건은 지도자 경력이 많은 지도자에게 유리하게(지도 경력관련 배점 60%) 되어 있어 젊은 지도자의 P급 자격증 취득의 어려움이 있었고, 2022년 7월 세칙 개정 당시 이를 개선하고자 ‘P급 수강생 선정위원회’에서 지도경력에 대한 평가지표를 하향 조정¹⁶⁵⁾하면서 ▲지도경력 배점조정(50%→30%) ▲정성평가 내실화(지원서→면접·필기, 10%→40%) 등의 수강생 선정 조건을 변경했는데,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면서 ‘AFC A급 취득 후 3년 경과자’로 세칙을 부적정하게 개정하게 됨
- 또한 ‘결격사유 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당시 세칙 개정을 담당하고 결재¹⁶⁶⁾했던 팀장 O, ■■■■■, D는 바뀐 사실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음
- 관련하여 최근 3년 P급 강습회에 입과 한 수강생(2022년: 24명, 2023년: 25명, 2024년: 18명) 67명 중 ‘지도자 경력 1년 이하자’¹⁶⁷⁾ 및 ‘결격사유 해당자’¹⁶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4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 2022년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P급 지도자 자격증 발급

- (O, P) P급 강습회를 축구협회 자체적으로 처음 운영하게 된 2021년부터 현재까지 「AFC 코칭규정」을 회원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165) 2022. 7. 6. 전후 P급 수강생 선정 기준 변경 내용

○(당초) 지원서(10%), 지도경력(50%), 지도실적(10%), 보수교육(20%), A급성적우수자 등 가산항목(10%)
○(변경) 지도경력(30%), 정성평가(40%), 보수교육(20%), A급성적우수자 등 가산항목(10%)

166) 문서번호 289(축구인재육성팀)-20220993호(2022. 7. 15., 2023년 P급 수강생선정 세칙 개정(안) 결재

* 결재선: 기안 ■■■■■(퇴직)-O-■■■■■-D-■■■■■(퇴직)

167) 수강생 선정 평가 시 ‘지도경력 항목’의 평가를 위해 제출한 67명의 지도경력을 확인한 결과, 1년 이하 지도자 경력 보유자는 없었음

168) 축구협회는 통합경기정보시스템(JoinKFA)을 통해 지도자의 징계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67명의 징계 정보를 확인한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은 수강생은 없었음

지도자 자격증 체계를 유지하는 지침으로 인지 했고, 교육 과정 및 평가 조건 등을 축구협회가 재량껏 만들 수 있도록 한 사항을 확대 해석했으며, 출석·평가·입학 기준·재교육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번 감사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 (O) 「지도자 교육규정」의 합격자 결정 관련 사항을 몰랐고, 「AFC 코칭규정」은 참고용 지침으로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함. 당시 본인과 업무 담당자인 []을 포함한 축구인재육성팀에서는 P급 강습회의 경우 '수강생 선정'은 축구인들의 관심이 많고 경쟁률이 높아 신경을 많이 썼던 반면, '강습회 운영'은 전임 강사에게 일임하면서도 '평가 체계' 및 '이수 조건'에 대해 별도로 안내한 적이 없고, 전임강사가 제출한 최종 합격 여부만 관심 있게 보는 등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음. 결과적으로 실기 점수 70점 미만인 6명을 부적정하게 합격 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함
- (축구협회) 「지도자 교육규정」을 면밀히 인지 하지 않고 업무 처리를 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으나, 이는 담당 직원들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강사진의 평가 결과를 존중하여 발생한 상황임.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및 전임강사가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강습회를 운영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예정임

○ 2023년 AFC 규정 및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P급 수강생 재강습 기회 부여

- (O) 2022년과 마찬가지로 「지도자 교육규정」의 합격자 결정 관련 기준을 몰랐고, 「AFC 코칭규정」은 참고용 지침으로 인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함. '강습회 운영' 전반을 전임강사에게 일임하면서도 '평가 체계' 및 '이수 조건'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고, 전임강사가 제출한 최종 결과표를 재검증 하지도 않는 등 행정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그 결과 []과 []이 부적정하게 재강습 및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인정함
- (축구협회) 실기 점수에서 60점을 받은 []의 경우 「지도자 교육규정」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불합격으로 결과를 재통지할 예정이고, 31.6%의 결석률을 나타내고 있는 []의 경우 「AFC 코칭규정」에 따라 AFC에 특별 조치를 신청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강습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2024년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P급 강습회 합격자 부적정 선정

- (Q) 2024. 4. 15. 축구인재육성팀에 인사 발령을 받아 P급 강습회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가 미숙한 상태였고, 2022년 7월 개정된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의 지도경력 점수 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불명확해 실무자가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2024. 5. 17. ~ 7. 9. 동안 엑셀에 지도경력(30점) 부분을 일일이 수기로 점수를 계산하고 기입하는 과정에서 ▲18세 이상 팀 외의 지도경력 산입, ▲개월 단위 지도경력에 대해 기준 없이 올림과 내림 처리하는 등의 부적정한 처리를 했다고 인정함
- (축구협회) 강습회 합격자 부적정 선정과 관련하여,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의 계산오류에서 발생한 것이며,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2024년 9월 P급 강습회 모듈1 시작 전 변경된 수강생에게 결과를 재통지하고 강습회를 추진하는 등 즉각 시정조치 하였음. 향후 ▲점수 산정 가능하게 세칙 개정 ▲자동화된 정보시스템 구축 검토 ▲입과 및 최종합격자 결정 시 교차검증 체계 마련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검토결과) 수강생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¹⁶⁹⁾ 중 정량평가(60점)와 관련해서는 축구협회에서 직접 구축·운영하고 있는 통합경기정보시스템(JoinKFA)¹⁷⁰⁾과 지도자 교육시스템(KFA Academy)¹⁷¹⁾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산출이 가능함에도 신청자가 제출한 자격증 정보, 지도자 활동 이력, 보수교육 시간 등을 눈으로 확인하여 작업하는 등 실무자 실수가 잦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시스템은 ▲팀 등록기간 별 리그 등급 정보 관리 미흡 ▲지도자 자격, 보수교육 등의 데이터가 2개 시스템에 이원화되어 있어 진본 확인의 어려움 상존 ▲강습회 신청자들만 모아서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 자동 산출 기능 부재 등의 문제가 있어 데이터의 정비와 시스템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69) 정량평가(총 60점, 지도경력(30점)+보수교육(20점)+가산항목(10점)), 정성평가(총 40점, 리더십 및 전술(40점))

170) ○ 목적 : 선수관리, 팀관리, 지도자관리, 임원관리, 대회, 심판, 감독관, 징계, 예정산, 증명서, 랭킹, 교육 및 국가대표 기록 등 경기 전반에 걸친 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 모든 업무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메뉴 : 회원가입 / 리그/대회 / 등록-선수, 지도자, 임원 / 팀관리 / 증명서 / 심판 / 팀창단 / 준회원 / 동호인 랭킹 / 골든에이지 / 국가대표 / 교육 및 서약서 / 여학생축구교실 등

171) ○ 목적 : 지도자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해 지도자자격을 획득하고, 획득한 라이선스에 대한 조회 및 확인

○ 메뉴 : 아카데미소개 / 지도자교육안내 / 강습회신청 / 보수교육신청 / 커뮤니티 / 심판교육 / 사전온라인 교육 신청 / 자격증 재발급 / 사전온라인교육 신청 / 자격증 재발급 / 영문 자격확인서 발급

○ 상위법 및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 세칙 개정

- (O) 「AFC 코칭규정」 제20조 “A급 라이선스 보유자로서 최소 1년의 코칭 경험을 필수로 갖춘자”를 위반하여 자체 세칙을 개정(입과 조건: 지도경력 3년 →취득 후 36개월 경과)한 것과 관련하여, 2022년 P급 수강생 선정위원회에서 젊고 유능한 지도자가 P급 도전에 좀 더 수월¹⁷²⁾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논의가 되어 개정된 것이고,
- (O)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위반하면서 자체 세칙을 개정(결격 사유: 해당자는 입과 신청불가→P급 수강생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이러한 사항을 점검하지 못했으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정리해서 P급 수강생 선정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함
- (축구협회) 「국민체육진흥법」 및 「AFC 코칭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들은 내부 규정에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세칙을 규정으로 강화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검토결과) 축구협회는 2021년 최초 P급 강습회를 자체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AFC 코칭규정」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하여 규정 및 강습회에 적용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고, 또한 「지도자 교육규정」과 「AFC 코칭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에 따라 업무 담당자들의 규정 위반과 업무 태만의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음

축구협회는 규정의 제·개정은 「정관」 제43조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의결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칙 개정은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부회장 전결로 비교적 손쉽게 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격증 제도” 운영 시 공정성 시비에 상시 휘말릴 수 있어 세칙을 규정으로 강화하여 관련 제도 개선 시 공정한 체계 확보 필요

172) ▲경력이 짧더라도 젊고 유능한 지도자가 P급 강습회에 입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A매치 50경기 이상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에게도 P급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반영된 것임

5 조치할 사항

○ 2022년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P급 지도자 자격증 발급 등

- 「AFC 코칭규정」 및 「지도자 교육규정」을 위반하여 ▲2022년 6명에게 부적정하게 자격증 발급 ▲2023년 2명에게 부적정하게 재강습 기회 부여 ▲2022년 부적정하게 자체 세칙을 개정한 것은 「인사규정」 제51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관련자에게 “문책(정직 이상)” 필요

○ 2023년 AFC 규정 및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P급 수강생 재강습 기회 부여

- 「AFC 코칭규정」 및 「지도자 교육규정」을 위반하여 P급 수강생에게 재강습 기회를 부여한 것은 「인사규정」 제51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관련자에게 “문책(경고 이상)” 필요
- 「AFC 코칭규정」 및 「지도자 교육규정」을 위반하여 ■■■■■과 ■■■■■에게 재강습 기회를 부여한 것과 관련하여 ■■■■■은 내부 규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하고 ■■■■■은 AFC에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 후 답변을 받아 “시정” 조치 필요

○ 2024년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P급 강습회 합격자 부적정 선정

-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위반하여 P급 강습회 수강생 합격자와 불합격자 3명이 바뀐 결과를 초래한 것은 「인사규정」 제51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관련자에게 “문책(경고 이상)” 필요
-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위반하여 수강생 선정 채점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불합격하였어야 할 ■■■■■·■■■■·■■■■은 불합격 처리하고, 합격하였어야 할 ■■■■■·■■■■·■■■■은 합격 처리하는 것으로 “시정” 조치 필요
- 수강생 선정 및 자격증 발급 전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자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 정비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교차검증 체계를 마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제도 개선 “통보” 필요

○ 상위법 및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 세칙 개정

- 공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는 자격증 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및 「AFC 코칭규정」의 필수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도자 교육규정」 및 각급 수강생 선정 세칙 등에 필수로 포함하고,

모든 세칙을 규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과 세칙 개정
“개선” 조치 필요

대한축구협회는

① 「AFC 코칭규정」 제12조(출석) 및 「지도자 교육규정」 제21조(자격 등급별 합격자 결정 등), 「P급 수강생 선정 세칙」 제3조(배점 적용 세부사항)를 위반하여, ▲2022년 6명에게 부적정하게 자격증 발급(O) ▲2022년 부적정하게 자체 세칙 개정(O) ▲2023년 2명에게 부적정하게 재강습 기회 부여(O, P) ▲2024년 점수산정 오류로 3명의 수강생 합격자 부적정 선정(Q) 등 P급 지도자 강습회를 불공정하게 운영한 관련자에게 「인사 규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문책)**

[관련자]	대한축구협회	O	정직 이상
	대한축구협회	P	경고 이상
	대한축구협회	Q	경고 이상

② 2023년 「AFC 코칭규정」 제12조(출석) 및 「지도자 교육규정」 제21조(자격 등급별 합격자 결정 등)를 위반하여 재시험 기회를 받은 ■■■■■을 불합격 처리하고, ■■■■■은 AFC에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 후 답변을 받아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③ 2024년 「P급 수강생 선정 세칙」 제3조(배점 적용 세부사항)를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선정된 ■■■■■, ■■■■■, ■■■■■을 불합격 처리하고 ■■■■■, ■■■■■을 합격 처리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시정완료¹⁷³⁾))**

④ 강습회 관련 평가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데이터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차검증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⑤ 「국민체육진흥법」 및 「AFC 코칭규정」의 필수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조항을 「지도자 교육규정」 및 각급 수강생 선정 세칙에 필수로 포함하고, 모든 세칙을 규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과 세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상 개선)**

173) 합격자 변경의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24년 9월 P급 모듈1의 시행에 앞서 변경된 합격자를 바로잡아 입과 시키는 등 “시정완료”

1 업무 개요

-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이하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른 공익법인¹⁷⁴)으로, 2021년도에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와 재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축구계 사회공헌사업을 재단으로 일원화함¹⁷⁵)
 - 재단은 국내·외 우수 선수 대상 장학사업, 유소년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 등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단의 수입·지출 내역은 [표 33]과 같음
- 한편, 축구협회는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¹⁷⁶)을 재단 이사회에 추천¹⁷⁷)하고, 사회공헌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마케팅팀)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단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¹⁷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⁷⁹), 축구협회 소속 회계팀¹⁸⁰)으로 하여금 재단의 기부금품 수입, 사업비·경상비 지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이사회 운영과 주요 사업계획의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음¹⁸¹)

[표 33] (재)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수입·지출내역(2021년~2023년)

(단위 : 백만 원)

구분	수입액			지출액		
	합계	기부금품	기부금품외 ^{주)}	합계	목적사업 지출액	일반관리비 지출액
2021년	1,326	800	526	1,138	978	160
2022년	1,418	381	1,037	1,825	1,519	306
2023년	1,614	305	1,309	1,736	1,606	130

주: 기본재산(7,142백만 원) 이자소득, 보조금, 기금 등

자료: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174) 구 지정기부금단체

175) 2021년 축구협회 조직개편으로 사회공헌팀을 폐지하고 마케팅팀 내 재단 사무국 업무를 분장하였음

176) 이사 5인이상 15인 이하, 감사 2인

177) 재단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취임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음

178)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비정규직 직원(1~2명)으로 구성

179) 축구협회는 재단 사무국장의 급여를 지급하고, 소속 부서장(마케팅팀장 등)으로 하여금 재단 사무국장의 복무, 인사평가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단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있음

180) 축구협회 회계팀 업무분장에 따르면 회계팀은 재단 회계처리 및 자금관리, 결산, 공익법인공시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재단 「위임전결세칙」에 따라 재단은 축구협회 회계팀의 협조를 거쳐 예산집행 기안문을 상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단이 축구협회 회계팀에 지급요청을 하면 축구협회 회계팀 직원의 지급결의로 최종 자금이 집행됨

181) R(2023년 1월~현재), S(2021년 1월~2022년 12월)의 문답조서에 따르면 사무국장의 급여, 복무, 인사평가 등을 축구협회에서 관리하고, 재단의 수입과 지출을 축구협회 회계팀에서 통제하고 있으며, 재단의 주요사업계획 등에 대해 소속 부서장, 축구협회 회장 등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등 축구협회에서 재단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

②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재단 「정관」 제22조에 따르면 재단의 예산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제33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제20조에 따르면 공익 법인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제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는 목적사업비 계정과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재단은 운영비, 업무활동비, 기타 지급 수수료 등 재단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성실히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축구협회는 재단이 편성된 예산을 다르게 집행하거나 근거 없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③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재단은 축구협회와의 사회공헌사업 일원화 이전인 2021년까지는 재단의 일반관리비 지출이 경미하여 관행적으로 일반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¹⁸²⁾으로 목적사업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였을 뿐¹⁸³⁾ 「정관」과 다르게 사무국 운영비, 이사장의 업무활동비, 기타 지급 수수료 등 일반관리비에 대한 예산안은 편성하지 않고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총 596백만 원¹⁸⁴⁾을 집행함
- 이와 관련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단의 일반관리비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재단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정관, 제 규정 등 지급 근거 없이 비상근 이사장에게 월 200만 원 한도¹⁸⁵⁾의 업무활동비(법인카드)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4백만 원¹⁸⁶⁾을 비상근 이사장의 업무활동비로 지급하였음

182) R(2023년 1월~현재), S(2021년 1월~2022.12.)의 문답조서에 따르면 2021년 사회공헌사업 일원화 이전의 경우에는 비상근 이사장, 사무국장의 업무활동비 등 일반관리비 지출이 경미하였고, 목적사업에 대한 예산계획만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등 관행적으로 일반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사회공헌사업 일원화 이후 일반관리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음에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이라고 진술

183) 최근 3개년(2021년부터 2023년) 이사회 심의·의결 내용을 확인하였음

184) 2021년 160백만 원, 2022년: 306백만 원, 2023년: 130백만 원 등 총 596백만 원

185) R 문답조서에 따르면 비상근 이사장의 업무활동비 한도액에 대한 기준은 관련 규정이 없고, 사무국장이 구두로 이사장에게 안내하였다고 진술

186) 2021년: 14.4백만 원, 2022년: 21.2백만 원, 2023년: 8.94백만 원 등 총 44백만 원

- 더구나 비상근 이사장에게 업무용 차량(전용 차량)¹⁸⁷⁾(임차비용: 월 100여만 원)과 유류비·통행료 등을 재단의 예산으로 제공하면서도 차량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어떠한 목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였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훼손하였음
- 또한 재단은 축구협회 「복무규정」에 따른 경조비(모친상) 1백만 원을 축구협회로부터 지급받은 축구협회 소속 직원 S에게 2021. 5. 31. 경조비(모친상) 명목으로 1백만 원¹⁸⁸⁾을 지급¹⁸⁹⁾하였고, S에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 근거 없이 총 184회(총 1,993천 원) 출퇴근 용도로 택시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는데도 축구협회는 재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정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재단 운영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었음

4 관계기관 등 의견

- S는 관련 법·규정에 대해 미숙하여 정관과 다르게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하였음을 인정하였고, R은 정관과 다르게 일반관리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이사회 심의·의결 등을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과거 축구협회 소속 회계팀이 설정해 준 예산편성 방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공익법인으로서 내부통제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축구협회는 앞으로 재단이 편성된 예산을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집행하여 근거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조치할 사항

-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이 「정관」과 다르게 일반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사회 심의·의결 및 지급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인사 규정」 제50조(징계 심의), 제51조(징계의 대상) 등에 따라 관련자 징계 조치

187) S의 문답조서에 따르면 재단 [] 이사장(2021년 4월~2023년 5월)의 요구로 2021. 4. 27. 대행업체인 (주) []을 통해 신타페 차량을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장기렌트 계약 체결하였다고 진술

188)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단의 경조비 집행액은 평균 20~30만 원이나 재단의 지급 기안문(“재단 사무국장 경조처리의 건”)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의 경조비 기준을 준용하여 1백만 원을 집행한다고 되어있음

189) S의 전결로 지급 기안문을 작성하였고, 축구협회 회계팀이 최종 지급

 대한축구협회회장은

① 앞으로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이 「정관」과 다르게 일반 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사회 심의·의결 및 지급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에 대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정관」과 다르게 일반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사회 심의·의결 및 지급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관련자를 「인사규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문책)

[관련자]	대한축구협회	R	경고 이상
	대한축구협회	S	경고 이상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 축구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회원 정보, 선수 정보, 지도자 정보, 심판 정보, 감독관 정보, 심판평가관 정보, 징계 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표 34]와 같이 개인정보(민감정보¹⁹⁰) 포함) 등을 처리¹⁹¹) 하고 있음

[표 34] 대한축구협회 개인정보 보유현황(2024년 7월 말 기준)

연번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수집 항목	보유건수 (단위: 건)	수탁업체
1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2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3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4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5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6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¹⁹²⁾ (축구협회)는 대표자 또는 임원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90)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함. 축구협회가 보유한 중인 징계정보도 민감정보에 해당함

191)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192)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개인정보취급자¹⁹³⁾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¹⁹⁴⁾을 1년 이상(최장 2년¹⁹⁵⁾)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축구협회는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정보(징계정보 등)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REDACTED]¹⁹⁶⁾의 개인정보처리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5만 명 미만의 경우 1년) 하도록 되어 있는 등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안전 조치가 필요함

○ 따라서 축구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회장(대표자) 또는 임원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침해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취급자별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¹⁹⁷⁾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REDACTED]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월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함

③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그런데 축구협회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르게 회장(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닌 [REDACTED]
[REDACTED]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관리·감독 수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업체(이하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¹⁹⁸⁾

193)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19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함

195) 1. 1.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 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196) [REDACTED]

197)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용자 계정을 기반으로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것

198) 개인정보보호법 제 26조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함

하지 않고 있었고, 개인정보취급자인 직원과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교육¹⁹⁹⁾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

- 그리고 [REDACTED]²⁰⁰⁾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의 식별정보,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처리내역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일부만 보관하고 있었고²⁰¹⁾, 접속기록을 월 1회이상 점검하지 않고 있었음
- 그 결과, 축구협회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하고 있었고,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4 관계기관 의견

- 축구협회는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요건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새로 지정하고, 일부 미비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를 보완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조치할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변경하고,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법령·지침과 다르게 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필요

 **대한축구협회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지침과 다르게 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99)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00) [REDACTED]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보관하고 있음

20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일시, 접속지 주소(IP) 등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처리내역 등은 보관하지 않고 있음

1 업무 개요

- 축구협회는 자체 「복무규정」에 직원의 근무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및 출장 등의 복무처리 절차, 임직원 여비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1시간 조기퇴근하는 ‘워라벨데이’²⁰²⁾를 운영하고 있음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복무규정」 제6조 따르면 축구협회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되어 있고²⁰³⁾,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축구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사 평가 또는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 낭비 방지 방안(2014. 10. 30.)’ 제도개선 권고(이하 ‘권익위 권고’)에 따르면 [표 35]와 같이 공직유관단체 별 여비 과대 지급 등을 배제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규정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음

[표 35]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주요 내용

□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조하여 기관별 여비규정 정비

- 중앙부처 산하 공직유관단체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4]를 임직원의 직급(위)별로 적용

공무원 구분 (해당공무원)	1호 나목 (차관)	1호 다목 (고위공무원 가급)	1호 라목 (고위공무원 나급)	2호 가목 (3~5급)	2호 나목 (6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구분	기관장	감사	이사	1~2급	3급 이하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자료 재구성

- 따라서 축구협회는 직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복무관리를

202) 일과 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내부공지를 통해 2018년 3월부터 시행

203) 축구협회 직원 근로계약서에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철저히 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거나 국가공무원보다 과도한 수준의 여비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했음

③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근무시간 미준수)

- 2021년~2024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축구협회 직원의 복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축구협회는 노사합의 등 별도의 근거 없이 내부 공지를 통해 '워라벨데이'를 운영하면서 1시간 조기퇴근에 따른 연차 차감 또는 다른 요일 추가 근무(1시간) 등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축구협회 직원은 「복무규정」과 다르게 1주 39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음²⁰⁴⁾

○ (출장 복무처리 미흡)

- 축구협회는 2021년부터 2024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울 지역 내 출장에 대해서는 '외근'²⁰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출장일시·출장지 및 출장목적 등을 기재하여 사전에 승인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고, 국내(서울을 제외한 지역) 및 국외 출장에 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근태관리시스템 상 출장 등록·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운영하였으며,²⁰⁶⁾ 2024년부터는 근태관리시스템에 출장 등록·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의 경우 [표 36]과 같이 출장 관련 복무처리를 하지 않거나 사후(최대 출장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등록·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됨

[표 36] 2024년 축구협회 직원 국내·외 출장에 대한 복무처리 내역(2024년 1월~7월)

구분	국내출장	국외출장
출장 건수 ^{주)}	720건	53건
복무 처리	207건	23건
복무 미처리	513건 (사후처리 36건)	30건 (사후처리 1건)

주: 여비가 지급된 출장을 기준으로 함

자료: 대한축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204) 워라벨데이 시행 및 참여에 따른 임금 변동사항 없음

205) '외근'의 사전적 정의는 '직장 밖에 나가서 근무함'으로, 축구협회 「복무규정」에 규정된 복무의 종류는 아니나 축구협회는 서울 지역 내 출장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내출장 중 서울 지역 내 출장은 '외근'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206) 여비 정산을 위해서는 사전(예비),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음

○ (본부장 여비지급 기준 개정 필요)

- 축구협회는 권익위 권고와 다르게 1급 이하 직원으로서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 지급 구분표” 상 제2호(철도·선박: 일반실(2등급), 항공권: 이코노미 등급)에 해당하는 본부장²⁰⁷⁾에 대하여 국내출장 시 교통비의 경우 특실 철도운임과 1등급 선박운임을, 숙박비의 경우 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국외출장 시 비즈니스급 항공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등 축구협회 「복무규정」에 본부장의 국내·외 출장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보다 과다하게 정하고 있음²⁰⁸⁾

4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 축구협회는 ▲향후 모든 출장에 대해 근태관리시스템에서 출장에 대한 사전 승인 및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권익위 권고 기준에 따라 본부장급 직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위라벨데이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시행된 위라벨데이는 노동관행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위라벨데이 제도 시행을 이유로 직원들의 연차를 1시간씩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에 불이익한 변경으로 법률상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협회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위라벨데이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여 범정부 차원의 조기퇴근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위라벨데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취지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배치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1주 근무시간(40시간)은 「복무규정」 및 근로계약서²⁰⁹⁾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이고 임금과도 관련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노사합의 등이 없는 한 직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조기퇴근을 시행하더라도 탄력근무제 활용 또는 연차 차감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207) 축구협회 「직제규정」 제10조 및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르면 본부장은 사무직 1급, 2급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직 직원 중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208) 이와 관련,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본부장의 국외출장시 항공운임내역을 점검한 결과, '24년 ■■■■■ 본부장 (유럽, 12,034천 원), ■■■■■ 본부장(오사카, 546천 원) '23년(■■■■■ 본부장, 아일랜드 등 5,576천 원), ■■■■■ 본부장(중국 선양, 918천 원) 등 총 4회 비즈니스급 항공운임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함

209) 축구협회 표준 근로계약서 제3조 (근로일 및 근로일별 휴게시간)
1.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등 범정부 차원의 조기퇴근제 시행이 근거 없이 임금의 변동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워라벨 제도에 관한 축구협회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음

5 조치할 사항

- 직원이 국내 및 해외 출장을 하는 경우 사전에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복무관리 철저
- 직원이 워라벨데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차에서 1시간을 차감²¹⁰⁾하는 등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본부장의 여비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

대한축구협회장은

- ① 직원이 국내 및 해외 출장을 하는 경우 사전에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② 직원이 워라벨데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차에서 1시간을 차감하는 등 「복무규정」에 따른 1주 근무시간(40시간)을 준수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본부장의 여비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210) 축구협회는 현재 연차 사용의 최소 단위를 반차(4시간)로 운영하고 있으나, 근태관리시스템 상 시간 단위의 연차 사용이 가능한 환경임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 번호	1	소관기관	□□	조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제 목 :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업무 부적정 1. 내 용 가. 업무 개요 □□은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 스포츠산업과)로부터 지원 받는 주최단체지원금(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재교부받고 있음. □□은 「정관」 제2조에 따라 ■■■■■의 수준향상, 저변확대, 국제교류 등을 통해 ■■■■■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 관계 법령(판단기준)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은 국고보조금인 주최단체지원금(체육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 국민체육기금 운영관리지침 제4조에 근거한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한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은 2023년 ■■■■■를 목적으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주최단체지원금 2,187백만 원을 교부받았음. □□은 이중 156백만 원을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집행하였음 해당 사업은 ■■■■■ 대표 선수 다수가 ■■■■■ 참가 팀 소속으로 해당 팀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경기분석(TSG) 및 현장 관전을 통해 국내					

리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에 한해 단년도로 추진되었음. FIFA
 [redacted]관전을 위해 [redacted] 및 [redacted] 감독 등 총 19명이 2023. 7. 23.
 (일)~8. 1.(화) 기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하였음

□□은 참관에 소요되는 비용 전반에 대해 “세중여행”으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아 총 150,519,850원을 해당 여행사에게 총액으로 지급함. □□은 세중여행이 보내온 인보이스에 항공, 호텔, 차량, 현지 직원 인건비, 식사, 입장권 등에 대해, “심비오 동물원 입장권” 2,310AUD(한화 2,079,000원) 및 “시닉월드(블루마운틴) 입장료” 945AUD(한화 850,500원)는 관광지 방문을 위한 비용인데도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였음. 그 결과, 총 2,929,500원이 목적외로 집행되었음

2. 조치할 사항 스포츠산업과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이 ██████████과 관련하여 목적 외로 집행한 2,929,500원에 대해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현지조치)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Ⅲ

처분요구 목록 * 총 26건, 23명 [실인원 19명]

연번	처분건명	조치사항	건수 (인원)
1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문책(4명) * A, B, C, D 통보(1건) *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재이행 등 절차적 하자 치유 방안 강구	2건 (4명)
2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1건) *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한 지도자에 대해 이사회 선임 절차 이행 주의(기관 1건)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철저 통보(1건) * 자격증 미보유 지도자에 대한 자격기준 준수 방안 마련 제도상 개선(1건) *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기술발전위원회 운영 등 관련 별도 규정 및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 마련	4건
3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문책(4명) * D, E, H, I 주의(기관 2건, 개인 2명) * 축구협회, 보조금 업무 처리 철저 * 축구협회, 기부금품 모집 업무 처리 철저 * J, F 경고(개인 1명) * G 통보(1건) * 거짓 신청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 방안 마련	6건 (7명)
4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문책(2명) * A, K	1건 (2명)
5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문책(5명) * B, D, M, L, N 주의(기관 1건) * 축구협회, 비상근 임원 무보수 원칙 준수 등 관련 업무 철저 통보(1건) * 부적정하게 지급한 자문료 등 총 49.8백만원 환수 방안 마련	3건 (5명)
6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부적정	문책(3명) * O, P, Q 시정(1건) * 2023년 부적정하게 P급 지도자 재강습 기회를 받은 자(2명)에 대해 불합격 처리 등 시정 조치 통보(2건) * 2024년 P급 지도자 강습회 합격자 선정 오류 시정(시정완료) * 강습회 관련 데이터와 시스템 개선 및 단계별 교차검증 체계방안 마련 제도상 개선(1건) * 지도자 교육규정 등 관련 규정 및 세칙 정비	5건 (3명)
7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 나눔재단 운영 관리 부적정	문책(2명) * R, S 주의(기관 1건) * 축구협회, 재단에 대한 관리 업무 철저	2건 (2명)
8	개인정보보호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기관 1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철저	1건
9	직원 복무관리 및 여비지급 기준 부적정	주의(기관 1건) * 직원 복무관리 철저 통보(1건) * 복무규정에 따른 1주 근무시간(40시간)을 준수하는 방안 및 본부장 여비지급 기준 정비 방안 마련	2건

주: A, B, D는 관련 처분건을 병합하여 조치 요구

IV

개별처분요구사항(문책 요구) 목록

연번	관련자	처분건명	처분요구 종류
1	A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중징계(자격정지 이상)
2	B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중징계(자격정지 이상)
3	C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중징계(자격정지 이상)
4	D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차입금)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중징계(정직 이상)
5	E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차입금)	중징계(정직 이상)
6	H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보조금)	중징계(정직 이상)
7	M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경징계(감봉 이상)
8	L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경징계(경고 이상)
9	O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부적정	중징계(정직 이상)
10	K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중징계(정직 이상)
11	I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보조금)	경징계(감봉 이상)
12	P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부적정	경징계(경고 이상)
13	Q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부적정	경징계(경고 이상)
14	N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부적정	경징계(경고 이상)
15	R	(재)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부적정	경징계(경고 이상)
16	S	(재)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부적정	경징계(경고 이상)

※ 개별처분요구 사항 명세 : 별첨